



2026. 7.

국회에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임제웅 예산분석관
김유진 예산분석관

지원 | 김리라 행정실무원
권예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교육위원회

[교육부]

I. 결산 개요 / 5

- 1. 현 황 5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

II. 주요 사업 분석 / 16

<일반회계>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 16
- 2. 고등학교 무상교육: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공식 준수 필요 26
- 3.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사립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필요 34
-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의 문제점 43
 - 4-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과대 계상 46
 - 4-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월결손금 발생 문제 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어린이집 확충: 실집행률 제고 필요 55



CONTENTS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지자체별 실수요 검토 필요 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 RISE 사업: 글로벌대학 사업과 분리 필요 70
8.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다자녀 기준 확대 필요 76
9. 국립대학 시설확충: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학별 안배 필요 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사용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공단부담금 폐지
검토 필요 87

[국가교육위원회]

- I. 결산 개요 103
1. 현 황 103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111
1. 현 황	111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9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0
II. 주요 사업 분석	122
〈일반회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예산 과소 편성	122
〈일반회계〉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127
3.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실제 공정에 맞춘 보조금 적기 분할 교부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135
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분석	142
4-1. 예술활동증명 사업: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143
4-2.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의 단계적 확충 필요	149



CONTENTS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및 자율계정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4
- 6.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160
- 7.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71

〈기금 공통〉

- 8.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분석 177
 - 8-1.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79
 - 8-2. 영화발전기금: 자체 자원 확보 노력 필요 등 184
 - 8-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강화 노력 필요 189
 - 8-4.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 참여율 개선을 위한 기금 여유재원의 체육진흥 사업 활용 필요 193

〈문화예술진흥기금〉

- 9.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197
- 1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옹자) 사업: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 예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3

〈관광개발진흥기금〉

- 11.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지역별 사용자 확대 및 지역 업체 참여 독려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208

〈국민체육진흥기금〉

- 1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17
- 13.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대규모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23

[국가유산청]

- I. 결산 개요 231
 - 1. 현 황 231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8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9
- II. 주요 사업 분석 240

〈일반회계〉

- 1. 수중유산 보존처리 사업: 용도에 맞는 일반용역비 집행 필요 240
- 2.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2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50
- 4.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56

교육위원회





교육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조 7,856억 2,500만 원이며, 19조 7,759억 4,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19조 7,403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355억 4,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1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1,737	371,737	371,737	210,024	174,627	35,365	31	83.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32	5,032	5,032	1,074	962	112	0	89.6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3,102,013	3,257,757	3,257,757	0	0	10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16,663,592	16,306,843	16,306,843	16,307,086	16,307,015	70	0	100.0
합계	20,142,374	19,785,625	19,785,625	19,775,941	19,740,362	35,547	31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7조 1,350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99.8%인 116조 8,45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08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89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9,322,129	97,078,363	97,800,572	97,666,292	18,675	115,605	99.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25,595	325,595	325,595	314,147	0	11,448	96.5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3,230,865	3,230,865	0	0	10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16,127,278	15,770,529	15,778,027	15,633,923	62,165	81,939	99.1
합계	118,877,015	116,276,500	117,135,058	116,845,227	80,840	208,992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4조 2,783억 1,200만 원이며, 12조 5,114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12조 4,355억 5,600만 원을 수납하고 732억 6,5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6억 2,0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3,713,273	11,872,864	11,838,360	31,940	2,564	99.7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565,039	638,578	597,196	41,325	56	93.5
합계	14,278,312	14,278,312	14,278,312	12,511,442	12,435,556	73,265	2,620	99.4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4조 2,783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87.1%인 12조 4,355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602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3,713,273	11,838,360	0	118,437	86.3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565,039	597,196	0	41,853	105.7
합계	14,278,312	14,278,312	14,278,312	12,435,556	0	160,290	87.1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368억 9,400만 원(△12.9%)이 감소한 6조 9,75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057억 2,000만 원(6.2%)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61,173	492,265	492,265	407,269	△84,996	△153,904
기금	6,008,696	7,520,218	7,520,218	6,568,320	△951,898	559,624
합계	6,569,869	8,012,483	8,012,483	6,975,589	△1,036,894	405,72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294억 1,600만 원(0.4%) 이 증가한 103조 2,76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조 4,202억 900만 원(11.2%)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6,389,770	98,089,605	95,845,839	96,394,543	548,704	10,004,773
기금	6,492,254	6,778,798	7,001,008	6,881,719	△119,289	389,465
합계	92,856,054	105,609,823	102,846,847	103,276,263	429,416	10,420,20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67조 1,362억 8,600만 원, 부채는 2조 4,028억 5,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4조 7,334억 3,500만 원이다.

자산은 투자증권 29조 3,063억 3,600만 원, 대여금 3조 6,257억 3,400만 원, 일반유형자산 32조 4,066억 1,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조 5,162억 1,000만 원(7.2%)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투자증권이 전년 대비 3조 8,711억 6,3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금 1조 1,235억 8,000만 원, 기타차입부채 1조 2,524억 7,400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424억 3,000만 원(16.6%)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증가에 따라 차입금이 657억 6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 BTL임대료미지급금 증가 등에 따라 기타차입부채가 2,718억 4,8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7,136,286	62,620,076	4,516,210	7.2
Ⅰ. 금융자산	33,943,392	30,062,254	3,881,138	12.9
Ⅱ. 유·무형자산	32,492,459	31,883,668	608,791	1.9
Ⅲ. 기타자산	700,435	674,154	26,280	3.9
부 채	2,402,850	2,060,420	342,430	16.6
Ⅰ. 차입부채	2,376,054	2,038,500	337,554	16.6
Ⅱ. 총당부채	2,977	3,102	△125	△4.0
Ⅲ. 기타부채	23,819	18,818	5,001	26.6
순 자 산	64,733,435	60,559,656	4,173,779	6.9
Ⅰ. 기본순자산	19,566,441	19,566,441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2,810,175	21,795,278	1,014,897	4.7
Ⅲ. 순자산 조정	22,356,820	19,197,937	3,158,883	16.5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6조 9,360억 1,800만 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2조 8,159억 7,100만 원, 관리운영비 1,778억 6,800만 원, 비배분비용 1,145억 7,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962억 1,200만 원, 비배분수익 2조 327억 5,800만 원, 비교환수익 등 3조 7,434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0조 328억 4,400만 원(11.1%) 증가한 100조 6,794억 4,000만 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10조 3,358억 5,5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2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70조 2,812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전기 대비 38억 1,900만 원 감소하였고, 비배분비용은 주로 BTL 임차료 이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전기 대비 167억 1,800만 원 감소하였다. 비배분수익은 주로 출자금 배당수익, 지분증권배당수익, 투자증권처분이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전기 대비 2,824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기타재원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전기 대비 1,045억 4,000만 원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2,419,759	92,083,904	10,335,855	11.2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2,815,971	92,342,673	10,473,298	11.3
나. 프로그램 수익	396,212	258,769	137,443	53.1
II. 관리운영비	177,868	181,688	△3,820	△2.1
III. 비배분비용	114,571	131,289	△16,718	12.7
IV. 비배분수익	2,032,758	1,750,284	282,474	16.1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00,679,440	90,646,596	10,032,844	11.1
VI. 비교환수익 등	3,743,422	3,638,882	104,540	2.9
VII. 재정운영결과(V-VI)	96,936,018	87,007,714	9,928,304	11.4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0조 5,596억 5,600만 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4조 7,334억 3,500만 원으로 기초 대비 4조 1,737억 7,900만 원(6.9%) 증가하였는데, 회계연도 중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96조 9,360억 1,800만 원이고, 순자산 가산항목 중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97조 9,509억 1,500만 원, 조정항목은 3조 1,588억 8,300만 원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17조 5,446억 6,600만 원에서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9조 5,937억 5,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조 677억 9,700만 원 등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60,559,656	58,277,912	2,281,744	3.9
II. 재정운영결과	96,936,018	87,007,714	9,928,304	11.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7,950,915	87,836,471	10,114,444	11.2
IV. 조정항목	3,158,883	1,452,987	1,705,896	117.4
V. 기말순자산(I-II+III+IV)	64,733,435	60,559,656	4,173,779	6.9

자료: 교육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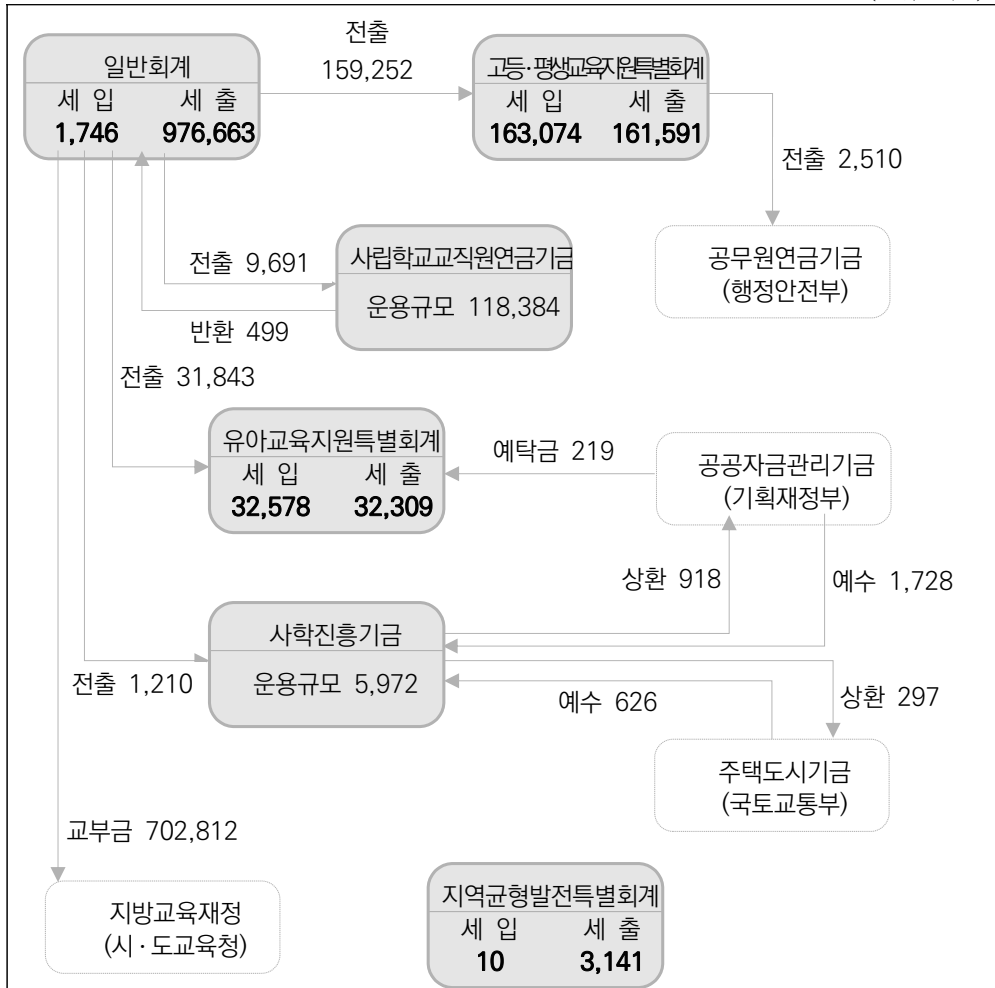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1,843억 원이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5조 9,252억 원이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 1,210억 원이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691억 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728억 원을 예수하고, 918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626억 원을 예수하고, 297억 원을 상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이 83억 3,200만 원 감액(6,357억 7,400만 원→6,274억 4,200만 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 인상하여 1,131억 원이 증액(3조 2,400억 원→3조 3,531억 원)되었다.²⁾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 12.

2) 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 7.

교육부는 ①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 및 늘봄학교 확산을 통한 **출발선 평등**, ②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 학생맞춤통합 지원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및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 조성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④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및 대학이 성장동력이 되는 지역의 변화 등 **지역 격차 해소**, ⑤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 육성, 학자금 및 주거 지원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청년 성장 지원**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등 영유아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질행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유치원마다 원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모든 시도의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학부모가 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한편,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줄인 사례가 발생하였다.

넷째, RISE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반면, 글로벌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다. 따라서 글로벌대학 사업을 교육부가 RISE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개편한 것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다섯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을 수치차 보전방식으로 편성하면서 예상한 자체수입액은 실제 수입 결산액에 비해 낙관적인 수치로서 자체수입 예산이 과대 계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

가.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 혁신 4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0조 2,812억 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0	67,732,259	67,732,259	0	0	69,004,889	73,582,087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726,916	0	726,916	726,916	0	0	630,914	676,42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242,306	0	242,306	242,306	0	0	210,304	225,47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033,814	0	1,033,814	1,033,814	0	0	1,261,828	1,352,84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39	545,908	0	545,908	545,908	0	0	560,813	601,263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임재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500(프로그램)

보통교부금은 해당 연도 내국세²⁾ 총액 20.79%의 96.2%³⁾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는 해당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된다.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8%를 재원으로 한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1.8%(즉, 3%의 60%)를 재원으로 한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9%(즉, 3%의 30%)를 재원으로 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3%(즉, 3%의 10%)를 재원으로 한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8%를 재원으로 한다.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되며, 종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던 재원 중 일부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활용되는 구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구분		내국세	교육세
보통교부금		20.79% × 96.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특별 교부금	국가시책	20.79% × 3% × 60%	-
	지역현안	20.79% × 3% × 30%	
	재난안전관리	20.79% × 3% × 10%	
	디지털교육혁신	20.79% ×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에 연동되어 예산 교부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⁴⁾

2)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3)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함에 따라 조정된 비율이다(97% → 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참조

2025년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내국세 세입 감액 경정에 연동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였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세수 결손으로 세입을 재추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불용한 바 있다. 한편,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결산 현황: 2016~2025]

(단위: 억 원)

구분	본예산(A)	추경 증감(B)	불용(C)	결산 (D=A+B+C)	세계잉여금 정산(E)	당해연도 교부 (F=D+E)
2016	412,284	19,331	0	431,615	0	431,615
2017	429,317	17,868	0	447,185	18,724	465,910
2018	495,407	0	0	495,407	29,121	524,528
2019	552,488	0	0	552,488	52,817	605,305
2020	553,722	△18,611	0	535,111	319	535,431
2021	532,300	63,658	0	595,958	7,413	603,371
2022	650,595	109,854	0	760,450	52,526	812,976
2023	757,607	-	△103,970	653,637	0	653,637
2024	688,732	-	△42,524	646,208	364	646,572
2025	722,794	△19,982	0	702,812	0	702,81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유보통합,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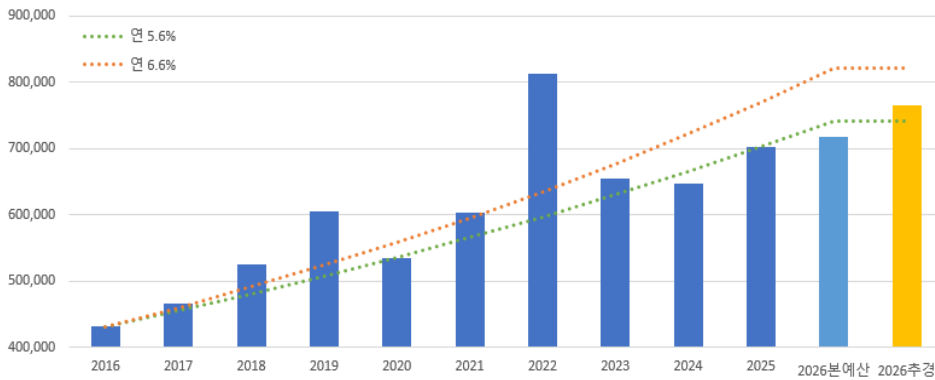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데,⁵⁾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에 연동하여 규모가 정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교육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세입의 65%를 차지한다.⁶⁾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5.6% 증가하였다.⁷⁾ 특히 2026년 반도체 부문의 호황 등에 따라 세수 확대가 예상되는바 향후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6]

(단위: 억 원)



주: 1. 점선은 2016~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5.6%) 또는 증감률 평균(6.6%)을 적용한 추세선
 2. 2016~2024년은 결산액과 세계잉여금 정산액의 합, 2025년은 결산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⁸⁾의 감소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1인 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중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공립 유치원과 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소속 교원 수를 측정 단위로 하고, 유아교육비 측정항목을 포함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학급경비 측정항목 중 학급 수 측정 단위나 학생경비 측정항목 중 학생 수 측정 단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구성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6) 다만, 정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만으로 구성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이 포함된다.

7) 이는 기하평균 값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감률의 산술평균은 6.6%이다.

8) 참고로 학령인구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6~21세 인구이다.

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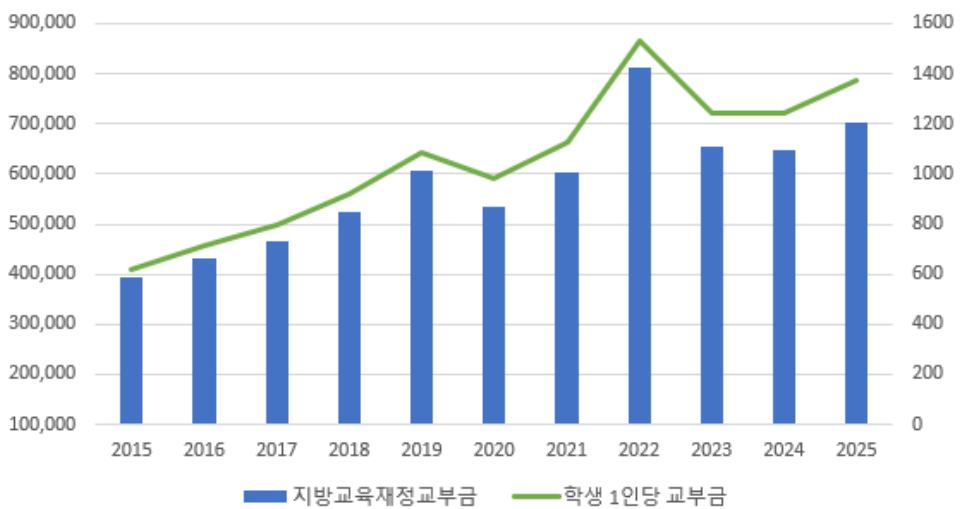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만 명, 만 원/명)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B)		1인당 교부금(A/B)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6	431,615	9.5	602	△3.4	716	15.5
2017	465,910	7.9	583	△3.2	799	11.6
2018	524,528	12.6	570	△2.2	920	15.1
2019	605,305	15.4	556	△2.5	1,088	18.3
2020	535,431	△11.5	544	△2.2	985	△9.5
2021	603,371	12.7	535	△1.7	1,128	14.5
2022	812,976	34.7	532	△0.6	1,528	35.5
2023	653,637	△19.6	526	△1.1	1,241	△18.8
2024	646,572	△1.1	520	△1.1	1,243	0.2
2025	702,812	8.7	513	△1.3	1,371	10.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억 원, 만 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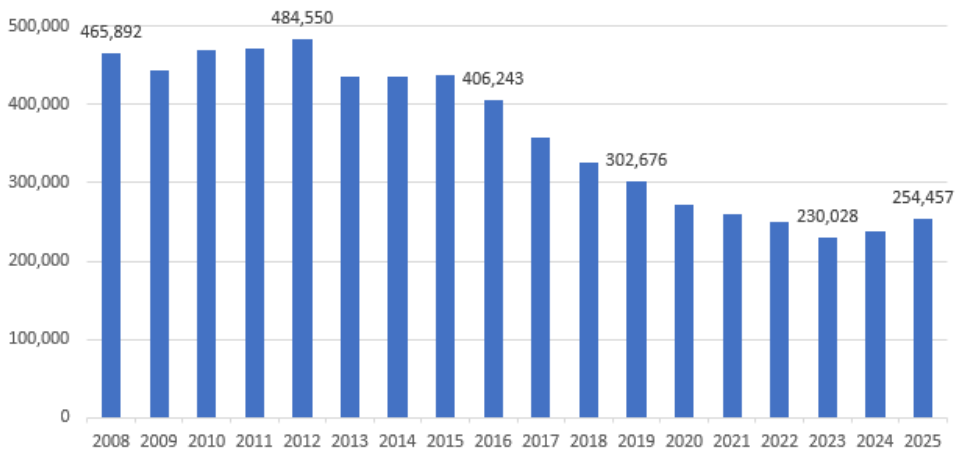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만 6,140명(6.8%) 증가하여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반등 추세이나, 10년 전인 2015년⁹⁾ 43만 8,420명 대비 42% 감소한 수준으로 당분간 유치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¹⁰⁾

[출생아 수 추이: 2008~2025]

(단위: 명)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런데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중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및 교원 수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밖에 학교 수,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023년, 교원 수는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생 수가 2026년에 소폭 반등하기 전까지 지난 10년간 매해 감소하였던 상황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5%(연평균 1.6%)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5%(연평균 0.2%), 교원 수는 5%(연평균 0.5%) 증가하였다.

9) 2026학년도 유·초·중·고등학생(2008~2022년)의 증위 출생연도이다.

10) 예를 들어 2027학년도에는 2008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므로 23만 명 이상이 감소한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추이: 2016~2026]

(단위: 명, 개, %)

연도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2016	6,026,499	16,144	240,348	391,798
2017	5,834,287	16,213	238,879	389,506
2018	5,698,732	16,357	238,958	396,114
2019	5,561,934	16,380	239,712	399,032
2020	5,437,109	16,478	241,035	402,396
2021	5,350,399	16,611	241,824	405,720
2022	5,322,321	16,636	243,215	405,095
2023	5,267,312	16,749	247,109	408,500
2024	5,203,340	16,694	246,350	415,002
2025	5,125,457	16,551	245,682	412,818
2026	5,128,812	16,551	246,410	411,779
연평균 증감률	△1.6	0.2	0.2	0.5

주: 교원 수는 공립, 사립, 정원외 기간제 합계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1인당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학교, 학급당 연평균 5.3% 증가하였고, 교원 1인당 연평균 5.0% 증가하여 학생 1인당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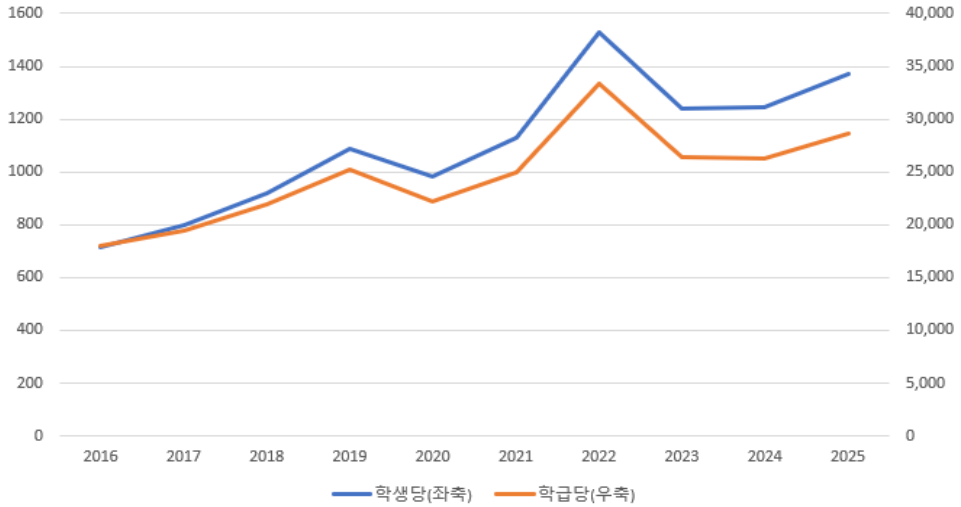
(단위: 만 원/명, 만 원/개, %)

구분	학생당	학교당	학급당	교원당
2016	716	267,353	17,958	11,016
2017	799	287,368	19,504	11,962
2018	920	320,675	21,951	13,242
2019	1,088	369,539	25,251	15,169
2020	985	324,937	22,214	13,306
2021	1,128	363,236	24,951	14,872
2022	1,527	488,685	33,426	20,069
2023	1,241	390,254	26,451	16,001
2024	1,243	387,308	26,246	15,580
2025	1,371	424,634	28,607	17,025
연평균 증감률	7.5	5.3	5.3	5.0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생당, 학급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만 원/명, 만 원/개)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경우 낮은 구조이다.

[학교 단계별 교육 재정의 국제 비교(2022)]

(단위: \$/학생)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순위	국가	교육재정	순위	국가	교육재정	순위	국가	교육재정
1	룩셈부르크	22,678	1	룩셈부르크	54,384	1	룩셈부르크	29,531
2	대한민국	21,476
3	스위스	21,091	34	대한민국	6,617	9	대한민국	16,363
...
36	멕시코	2,790	37	멕시코	4,430	37	멕시코	3,053
	OECD 평균	12,438		OECD 평균	15,102		OECD 평균	12,780

주: 1.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2. 국가장학금은 민간이전재원으로서 제외(최종재원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2025. 12.
(Government Expenditure 항목)

한편, 시·도교육청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증액 추경이 있었던 2021년, 2022년에는 조성액이 크게 늘어 2022년 말 잔액이 11조 5,845억원에 달하였으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불용되었던 2023년, 2024년과 감액 추경이 있었던 2025년에는 지속적으로 기금 잔액이 감소하여 2025년 말 잔액은 3조 7,493억원이다.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19	6	6	11,828	0	11,828
2020	17	13	11,228	0	23,056
2021	17	14	13,838	6,774	30,121
2022	17	17	90,443	4,719	115,845
2023	17	17	6,724	26,575	95,994
2024	17	17	2,796	37,168	61,622
2025	17	17	3,186	27,315	37,493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에 21조 3,811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 말 기준으로 7조 7,311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¹¹⁾

11)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용처가 한정된 기금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두 기금 잔액의 합계는 2022년 말 20조 3,918억원에서 2025년 말 6조 8,2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21	14	13	18,721	207	18,514
2022	17	16	71,895	2,335	88,074
2023	17	17	4,625	11,447	81,252
2024	17	17	3,728	31,786	53,195
2025	17	17	1,379	23,819	30,755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17	9	3,566	359	3,207
2018	10	1,462	331	4,338
2019	20	13,643	823	17,157
2020	31	12,604	813	28,948
2021	44	32,729	7,636	54,041
2022	55	167,770	7,860	213,811
2023	54	12,300	39,135	186,976
2024	54	7,940	71,112	123,804
2025	57	7,129	53,622	77,311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교육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한편,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나 특수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원 체계 개편에 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 현황

고등학교 무상교육¹⁾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증액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729억 4,900만 원 중 4,72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만 6,000원을 불용하였다.²⁾

[2025회계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5,267	5,267	0	0	467,682	472,949	472,948	0	0.3	578,528	578,528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고등학교³⁾ 무상교육은 2019. 12. 3.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019학년도 2학

임제용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 1) 코드: 일반회계 1602-300
- 2)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023회계연도 정산분 52억 6,700만 원과 실제 2023회계연도 정산액 52억 6,666만 4,000원의 차액인 33만 6,000원이 불용되었다.

(단위: 천 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본예산	예비비	합계		
5,267,000	467,681,580	472,948,580	472,948,244	336

자료: 교육부

- 3)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엄밀하게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정의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수업료, 입학금(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사립 고등기술학교나 각종학교는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에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개정 법률은 2020년부터 적용되어 2020학년도에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되었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1학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과정]

대상	2019학년도 ¹⁾	2020학년도 ²⁾	2021학년도~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

주: 1)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조기 실시

2) 2020학년도에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1학년까지 조기 실시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함께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증액 교부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는 국가가 증액 교부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2020~2024)]

	시도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소관)	
	국가(증액 교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47.5%	47.5%	5%

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2024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였다. 이에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⁵⁾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부결되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전제로 2023회계연도 정산액 52억 6,700만 원만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회 수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목적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예산총칙을 수정의결하였다.

[2025년도 예산총칙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정부 제출안	국회 수정안
<p>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p>	<p>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p>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후 2025년 8월에 증액교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고등학교 무

5)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상교육 재정 중 국가가 증액교부금으로 분담하는 비율을 기존의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⁶⁾⁷⁾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예비비를 배정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하반기분의 47.5%를 증액교부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 개정 연혁]

일시	내용
2019. 12. 3.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가 증액교부(47.5%) 한시 규정(~2024. 12. 31.)
2024. 12. 31.	증액교부 한시 규정 일몰 연장(~2027. 12. 31.)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25. 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2025. 4.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국회 재의결 부결
2025. 8.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증액교부 규정(47.5% 이내) 일몰 연장(~2027. 12. 31.)
현재	감축 후 일몰 검토(「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지출혁신 추진계획)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분석의견

2025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일몰됨을 전제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중 국가나 시도 부담분에 대응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에는 과년도 정산액만 반영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계상하여 법령의 산정 공식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7) 「법률 제2102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보통교부금은 해당 연도 내국세⁸⁾ 총액 20.79%의 96.2%⁹⁾와 교육세 일부¹⁰⁾를 재원으로 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5조제1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지 않고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가 교부된다(같은 법 제83조제1항).¹¹⁾

[보통교부금 산정 구조]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2025. 3.)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준재정수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고교무상교육 지원, 자체노력수요, 감사결과 반영, 정정교부 및 조정교부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재정수입은 같은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고교무상교육 지자체전입금, 자체수입, 자체노력 수입으로 구성된다(같은 영 제5조, 제5조의2 등).

보통교부금 산정 구조를 역산하면 기준재정수요는 보통교부금(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1.57% 제외)에 기준재정수입 예산을 합산한 액수로 정해진다.

8)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9)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함에 따라 조정된 비율이다(97% → 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참조

10)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었다.

11)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특례가 적용되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기준재정수요 산정 구조(2025)]

기준재정수요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 20.79%의 96.2% + 교육세 일부)	-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보통교부금 총액 1.57%)	+	기준재정수입
교직원 인건비						지방세전입금
학교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자체노력수요						고교무상교육 지자체전입금
감사결과 반영						자체수입
정정교부						자체노력수입
조정교부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2025. 3.)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기준재정수요에 고교무상교육 지원 측정항목이 있고, 기준재정수입에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고교무상교육 지자체전입금 측정항목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는 기준재정수요 중 고교무상교육 지원 측정항목에 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로 구성되는 전체 비용에서 교육청 부담분 비율(즉,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5%, 2025년 예산 정부안 기준 100%)을 공제하도록 산정 공식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고교무상교육 지원 측정항목 산정 공식]

측정항목	산정공식	단위비용
가. 입학금·수업료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수업료
나. 학교운영지원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주: 측정 단위는 학생 수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중 고교무상교육 지원 측정항목은 고교무상교육 수요액 중 교육청 부담분 비율을 공제한 것이므로, 기준재정수입 중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측정항목과 시도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지자체전입금’ 측정항목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2024년도나 2026년도와 달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2024~2026)]

(단위: 억 원)

구분		2024	2025	2026
기준재정수요	고교무상교육 지원비	10,303	2,079	6,637
기준재정수입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9,346	53	5,721
	고교무상교육전입금	957	0	915
	소계	10,303	53	6,637

자료: 교육부, 「2024~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24년도와 2026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소요 비용 중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2024년도는 47.5%, 2026년도는 65%¹²⁾)을 제외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준재정수입 측정항목 중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국가 부담)과 고교무상교육전입금(시도 부담)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 정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일몰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는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100%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고교무상교육 지원비는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옳다.

12)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5% 부담

그런데 교육부는 2025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고교무상교육 지원비에 2023회계연도 정산분 53억 원 외에도 2025년 교과용 도서 구입비 2,027억 원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당해연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운영비의 학생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다고 보인다.¹³⁾

13)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5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비의 학생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가가 정액(617천 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경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2024. 11. 13.) 시에는 고교무상교육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으로, 학생경비 단가 및 고교무상교육 항목에 대한 산정공식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25년 2월 말까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를 해야 하는 상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고교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타 학교급의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보통교부금에 반영된 반면, 고교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누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고교무상교육 항목으로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교 교과용 도서 구입비 반영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회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사립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필요

가. 현황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¹⁾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발전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일반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5억 2,100만 원 중 96.3%인 2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 원을 이월하고, 7,8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사업	2,427	2,427	94	0	2,521	2,428	15	78	2,264	2,26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같은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3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다.

이 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3개 대학에 19억 5,600만 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이 중 18억 6,000만 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95.1%이다.²⁾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유럽언어공통기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531-302

준(CEFR)³⁾ A1(입문)~B2(중상급) 수준으로 25개 언어별 표준교육과정 기본교재와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그리고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 문항 개발과 연계하여 20개 언어의 표준화 평가인 특수외국어능력평가를 한국외대 FLEX 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부처		사업 시행 주체(피보조 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실 집행률
본예산	추경								
1,956	1,956	1,956	1,956	93	2,049	1,860	72	24	95.1

주: 사업 기간은 2025. 3. 31.~2026. 2. 28.

자료: 교육부

이 사업에는 민간경상보조금 외에도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특수외국어 번역지원,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 종합포털⁴⁾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분석의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기존에 특수외국어를 교육하고 있던 사립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수준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기간(2025. 3. 1.~2026. 2. 28.) 기준이다. 연말 기준으로는 71.1%가 실집행되었다.

3)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4) <https://cfl.niied.go.kr/>

특수외국어는 근거 법률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정의된다(같은 법 제2조제1호).⁵⁾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외국어는 국립대학(국립대 법인 포함)에 어문 계열 학과가 개설된 7개 외국어, 즉, 영어, 중국어(중국어), 일어(일본어), 독어(독일어), 불어(프랑스어), 서어(스페인어), 노어(러시아어)를 제외한 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⁶⁾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는 특수외국어로 53개 언어가 규정되어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2025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 중 37개 언어에 대하여 국내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 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외국어 학과 개설 현황]

구분	학교명 (전공언어 수)	학과(부) 및 전공언어
대학	한국외대 (33)	아랍어과(아랍어), 튀르키예어·아제르바이잔어과(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페르시아어·이란학과(이란어), 아프리카학부(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압하라어), 중앙아시아학과(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과(우크라이나어), 몽골어과(몽골어), 인도어과(힌디어), 베트남어과(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학과(태국어, 라오스어), 폴란드어과(폴란드어), 루마니아어과(루마니아어), 헝가리어과(헝가리어), 체코·슬로바키아어과(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네덜란드어과(네덜란드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스·불가리아어과(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과(이탈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과(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부산외대 (13)	아랍어, 튀르키예어, 힌디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 브라질어

5) 이 정의는 특수외국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수외국어'라는 정의 대상의 어감을 고려할 때 비로소 주요 외국어가 제외된다고 읽히는 문제가 있다.

6) 가령 서울대학교에는 일어일본학과를 제외한 6개 언어 어문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부산대학교에는 서어서문학과를 제외한 6개 언어 어문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는 언어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일어와 몇몇 특수외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구분	학교명 (전공언어 수)	학과(부) 및 전공언어
	서울대 (9)	아시아언어문명학부(아랍어, 튀르키예어, 이란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단국대(5)	아시아중동학부(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유럽중남미학부(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명지대(1)	아랍지역학부(아랍어)
	영산대(1)	글로벌학부(베트남어)
	조선대(1)	아시아언어문화학부(아랍어)
	사이버 한국외대(2)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대학원	한국외대 (31)	중동언어문화학과(아랍어, 튀르키예어, 이란어),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아프리카어문학과(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암하라어), 인도-아세언어문번역학과(힌디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고전어문·문화학과(그리스어), 동유럽어문학과(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이어이문학과(이탈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포어포문학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부산외대(1)	한-베트남어번역학과(베트남어)
	서울대 (9)	아시아언어문명학부(아랍어, 튀르키예어, 이란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단국대(4)	몽골학과(몽골어), 중동·아프리카학과(아랍어), 유럽어문학과(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명지대(1)	아랍지역학과(아랍어)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5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2025. 2.)을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매년 특수외국어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특수외국어 중 일부를 중점 지원 언어로 정하고 있다. 중점 지원 언어는 2025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25개이다.⁷⁾

7) 최초 15개 중점 지원 언어는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특수외국어 중점 지원 언어 현황]

구분	2018~2021	2022~2023	2024~2026
중점 지원 언어	15개	20개	25개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연도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중점 지원 언어는 이미 사립대학에 학과가 개설된 언어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3개 사립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점 지원 언어 관련 학과 개설 현황(2025년 기준)]

전문교육기관	중점 지원 언어	
		언어 수
한국외국어대	라오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튀르키예(터키)어, 힌디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21개
부산외국어대	라오스어, 미얀마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튀르키예(터키)어, 힌디어, 베트남어, 아랍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10개
단국대	몽골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베트남어, 아랍어	4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사립대학에 학과가 개설된 언어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업으로 신규 언어의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중점 지원 언어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6. 4.)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총 2,869,641명)의 국적 중 네팔 98,512명(6위), 필리핀 75,680명(7위), 스리랑카 39,819명(16위), 방글라데시 39,274명(17위), 키르기스스탄 13,502명(24위)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국들의 공용어인 네팔어, 타갈로그어, 싱할라어(신할리즈어), 타밀어, 벵골어, 키르기스어는 사립대학에 학과가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의 중점 지원 언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⁸⁾

[체류 외국인 국적 현황(2026. 4.)]

(단위: 명)

순위	국적	인원	순위	국적	인원
1	중국	992,943	13	몽골	58,760
	(한국계)	(643,845)	14	(타이완)	44,344
2	베트남	372,988	15	카자흐스탄	43,413
3	미국	191,613	16	스리랑카	39,819
4	태국	161,298	17	방글라데시	39,274
5	우즈베키스탄	106,066	18	캐나다	33,829
6	네팔	98,512	19	라오스	23,179
7	필리핀	75,680	20	파키스탄	20,499
8	인도네시아	72,473	21	인도	19,722
9	캄보디아	72,175	22	호주	16,673
10	러시아(연방)	68,257	23	프랑스	15,504
11	미얀마	62,660	24	키르기스	13,502
12	일본	59,447	기타		167,011

주: 2026. 4. 30. 기준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 4.

한편, 교육부가 수행한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특수외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국립특수외국어교육원 또는 국립외국어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만 국립 외국어대학교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⁹⁾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설령 국립특수외국어교육원이나 국립외국어대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사립대학에서 이미 육성하고 있는 특수외국어 인력을 채용하여 해당 외국어 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립대학에서 현재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외국어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⁰⁾

8) 네팔어, 타갈로그어, 싱할라어(신할리즈어), 벵골어, 키르기스어는 특수외국어에 포함되나 타밀어는 현행 법령에 따른 특수외국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9) 동 계획에 따르면 미국(국방외국어대), 중국(북경외국어대), 일본(동경외국어대, 오사카외국어대), 러시아(뜨기모대), 프랑스(이날코대) 등 주요국은 국립 외국어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10) 이 사업예산으로 수행한 특수외국어 번역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2025년에 법무부 소관 인신매매

둘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근거 법령과 시행계획 상 중점 지원 언어의 구분이 상이하고, 근거 법령의 언어 분류가 부정확하므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중점 지원 언어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와 비교하면 언어 분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즉,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나 포르투갈-브라질어의 경우 시행계획에서는 하나의 언어로 취급하지만, 시행령에는 별개 언어로 구별되어 있다. 만약 시행령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와 유럽식 포르투갈어를 구별하는 취지라면, (유럽식) 포르투갈어는 유럽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¹⁾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20. 9.)에서는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어,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를 각각 사실상 같은 언어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연구는 이들 언어 쌍이 사실상 같은 언어라고 보면서도, 언어별 정량,¹²⁾ 정성 평가 지표는 시행령의 분류를 좇아 각 언어 쌍을 별개의 언어로 구별하여 산출하고 있다. 법령상 언어 분류가 부적절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피해자 식별 지표의 번역 요청 언어 중 따갈로그어, 방글라데시어(벵골어), 네팔어가 있는데, 현재 중점 지원 언어에서 빠져 있다. 이 3개 언어는 현재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1) 그 밖에도 시행령 별표에서 '지역'이 법적 실익이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어만 유라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벨라루스어와 조지아어는 유럽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또, 스리랑카의 언어인 '신할리즈어'는 외교부의 경우 '싱할라어'로 지칭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 정량평가 지표는 발전잠재력(GDP, 인구, 국민소득, 정치적 안정성, 거버넌스(제도), FDI 규모, 수출 규모, 수입 규모),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FTA 체결 여부, 직접투자 규모, 수출 규모, 수입 규모, 교민 현황, 한국 고위인사 방문, 상대국 고위인사 방문, 한국 VIP 방문, 상대국 VIP 방문, ODA 규모, 중점 ODA 대상국 여부, 외교부 공관 또는 무역관, 학문적 수요(해당 언어 관련 국내 논문 수, 해당 언어 대학생 수), 타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의 대체성 정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평가 결과]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총점		
언어	점수	순위	언어	점수	순위	언어	점수	순위
아랍어	2,350.2	1	베트남어	2,000	1	베트남어	4,115.3	1
베트남어	2,115.3	2	인도네시아어	1,800	2	아랍어	4,050.2	2
포르투갈어	1,686.2	3	아랍어	1,700	3	인도네시아어	3,444.2	3
인도네시아어	1,644.2	4	말레이시아어	1,700	3	포르투갈어	3,186.2	4
말레이시아어	1,243.8	9	포르투갈어	1,500	5	말레이시아어	2,943.8	5
브라질어	1,083.3	13	브라질어	1,500	5	브라질어	2,633.3	7

주: 1. 정량분석 지표는 발전잠재력,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학문적 수요, 타 언어의 대체성
 2. 정성분석은 공공부문(외교부, 국립외교원, 코이카), 민간부문(코트라, KIEP) 수요조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20. 9.)

나아가 사실상 같은 언어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나 포르투갈-브라질어 외에도 터키어-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다리어(아프가니스탄) 등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인접어에 대해서도 중요도 평가, 지원방식 등 측면에서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인다.¹³⁾¹⁴⁾

요컨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근거 법령과 시행계획 상 중점 지원 언어의 구분이 상이하고, 근거 법령의 언어 분류가 부정확하므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3)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1.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20. 9.) 등 참조

14) 이에 대하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나 포르투갈-브라질어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별개의 언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 및 학과 등 실제 교육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통합 언어로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시행령이 제정된 2016년 당시 일정한 학문적, 정책적 맥락 속에서 유라시아 권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의 지역별 언어 분류 및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인접어 등의 언어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의 언어 분류 비교]

시행령 별표		시행계획	시행령 별표		시행계획
지역	언어	(2024~2026)	지역	언어	(2024~2026)
중동-아프리카	아랍어	아랍어	유라시아	카자흐어	카자흐어
	터키어	튀르키예어(터키어)		우즈베크어	우즈베크어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어		키르기스어	-
	이란어	이란어		우크라이나어	우크라이나어
	파슈토어	-		투르크멘어	-
	다리어	-		타지키스탄어	-
	히브리어	-		몽골어	몽골어
	하우사어	-		폴란드어	폴란드어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		루마니아어	-
	줄루어	-		헝가리어	헝가리어
	르완다어	-	체코어	체코어	
	암하라어	-	슬로바키아어	-	
	인도-아세안	힌디어	힌디어	유럽	세르비아어
우르두어		-	크로아티아어		크로아티아어
산스크리트어		-	라트비아어		-
네팔어		-	벨라루스어		-
벵골어		-	조지아어		-
신할리즈어		-	그리스어		그리스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
말레이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네덜란드어		네덜란드어
태국어		태국어	노르웨이어		-
미얀마어		미얀마어	덴마크어		-
크메르어		크메르어	스웨덴어		스웨덴어
라오스어		라오스어	핀란드어		-
타갈로그어		-	중남미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자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¹⁾은 「평생교육법」 제19조2)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2억 9,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5,298	5,298	0	0	5,298	5,298	0	0	7,055	7,05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³⁾이다.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을 차감한 액수만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편성되었다.⁴⁾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만큼 국가가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다. 자체수입은 학점은행제 수수료, 독학학위제 수험료, 이월결산잉여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운영, 독학학위제 운영 등 고유사업과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⁵⁾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등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한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135-300

2)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4

4) 출연금(수지차 보전방식) = 인건비 + 경상비 + (고유)사업비 - 자체수입

5) Korean Massive Online Open Cours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각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 이월액 등을 제한 결산잉여금(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결산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데,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되는 결산잉여금은 결산절차를 완료하여 확정된 액수로, 미리 잉여금을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⁶⁾

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 편성 시 결산잉여금 규모를 예측하여 자체수입에 반영하였다.⁷⁾ 즉,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 2024년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⁸⁾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2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35억 9,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한 자체수입을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액의 합계에서 차감한 금액만큼 출연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후 2025년에 확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5억 6,200만 원이다. 이어서 2025년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13억 6,700만 원으로 예상하여 진흥원 출연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은 △22억 2,600만 원이다. 즉, 순세계잉여금이 음수이므로 2026년도 세입에 이입될 결산잉여금은 없고, 이월손실금이 발생하였다.

6)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211. 2025년도 지침도 같다.

7) 참고로 국가 예산, 결산절차의 시간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 3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2월 말일)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3. 31.)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4. 10.)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5. 20.)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5. 31.)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안 편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국회 제출(~9. 3.: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결산 심의·의결(「국회법」상 정기회 개회 전까지이나 관행상 정기회 중~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관행상 12월 중)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8조) 매년 1. 1.~12. 31.인데(「국가재정법」 제2조), 진흥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 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세입 중 전기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전기 이월금)	예산	2,595	2,690	2,969	3,596	3,596	1,367
	결산	3,855	3,791	3,303	2,002	562	-
결산잉여금		3,791	3,303	2,002	562	△2,226	-

주: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4-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과대 계상

가. 현 황

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고유사업비(학점은행제운영, 독학학위제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에 편성하였다.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산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다. 2025회계연도에는 편성된 출연 예산 52억 9,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진흥원 세입에는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액 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 편성 근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금액	
		예산 편성	집행(결산)
인건비		6,978	6,978
경상비		3,645	3,552
사업비	소계	11,927	10,904
	학점은행제운영	6,529	6,041
	독학학위제 운영	3,394	3,066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544	470
	평생교육양성연수	129	106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260	234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1,071	987
자체수입	소계	17,252	13,910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12,693	12,568
	독학학위제 수험료 수입	577	496
	이월결산잉여금	3,596	562
	기타 수입	386	284
결산잉여금		-	△2,226

주: 출연사업 예산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 자체수입

자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회계에서 이 사업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기관출연-고유사업을 제외한 출연금사업, 보조금사업, 기타수탁사업은 불용액을 반납

한다. 따라서 진흥원 결산잉여금은 기관출연-고유사업에서 세입액과 세출액(이월액 포함)의 차액과 같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세입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세입 (A)	세출 (B)	이월 (C)	반납 (예정)(D)	사업비 미수납액(E)	전기이월 예산집행 잔액(F)	총 순세계 잉여금(G)
계	52,935	50,762	4,399	1	1	0	△2,226
기관출연 /고유사업	19,208	21,040	394	0	0	0	△2,226
출연금사업	29,518	26,758	2,760	0	0	0	0
보조금사업	558	558	0	0	0	0	0
기타수탁사업	3,651	2,406	1,245	1	1	0	0

주: 총순세계잉여금(G)=세입(A)-세출(B)-이월(C)-반납(예정)(D)+사업비미수납액(E)+전기이월예산집행잔액(F)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를 인건비, 경상비 및 고유사업비와 자체수입액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보면, 결산잉여금(또는 이월손실금)을 반영해야 합계가 맞다.9)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산출]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	결산
인건비/경상비/고유사업비	22,550 (A)	21,434 (B)
자체수입	17,252 (C)	13,910 (D)
수지차 보전 출연금	5,298 (E=A-C)	5,298 (F=E)
결산잉여금	-	△2,226 (G=D+F-B)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즉, 아래 표에서 수지차 보전 출연금(F=E) = 인건비 등 결산(B) - 자체수입 결산(D) + 결산잉여금(G)

나. 분석의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편성하면서 예상한 자체수입액은 실제 수입 결산액에 비해 낙관적인 수치로서 자체수입 예산이 과대 계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서 자체수입은 172억 5,2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하면, 2024년도는 자체수입을 172억 5,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결산상 실제 자체수입액은 153억 800만 원이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액수로 자체수입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수입액이 더욱 감소하면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¹⁰⁾ 이는 대부분(90.8%) 이월결산잉여금(5억 6,200만 원)이 예산 편성 시 예상하였던 규모(35억 9,600만 원)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예산 편성 추계가 정확하였다면 실제 결산과 차이가 없어 결산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4,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내역 중 자체수입 예산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A)	결산(B)	오차(B-A)	오차율[(B-A)/A]	
자체수입	2021	12,824	16,051	3,227	25.2
	2022	13,888	17,027	3,139	22.6
	2023	16,004	16,015	11	0.1
	2024	17,252	15,308	△1,944	△11.3
	2025	17,252	13,910	△3,342	△19.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수지차 보전 출연금에 반영되는 자체수입 중 이월결산잉여금을 전년도와 같은 액수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참고로 2026년도 예산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을 144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자체수입을 과대 계상하면 국가의 출연금이 과소 계상되어 기관 운영과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년도에 자체수입을 과대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로 다시 계상하여 오차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을 정밀하게 추정하여 과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출연금에서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 전환을 검토하거나 사업비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025회계연도 결산]

(단위: 백만 원)

교육부(세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세입)		
세출 사업(내역사업)	비목	결산	세입 항목	결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출연 금	5,298	기관운영 출연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평생학습진흥 지원		625	사업 출연금	평생학습진흥지원	625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3,001		평생교육바우처지원	3,001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7,04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7,04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12,818		한국형온라인공개 강좌(K-MOOC)운영	12,8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4,150		성인의디지털역량 강화지원	4,150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306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06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1,574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및운영	1,574

자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외에도 평생학습진흥 지원,¹¹⁾ 평생교육바우처 지원,¹²⁾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¹³⁾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¹⁴⁾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¹⁵⁾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¹⁶⁾ 사업이 있다. 세출 과목은 모두 사업출연금(350-02)이다.

그런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의 경우 교육부 세출 과목은 사업출연금이나, 이와 달리 진흥원의 세입 항목은 기관운영출연금이다. 진흥원은 이 사업에 따른 기관운영출연금과 위탁 및 독점수입(학점은행제수수료, 독학학위제수험료), 기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경상운영비, 고유사업비(학점은행제운영, 독학학위제운영 등)를 충당하고 있다.

[출연금(350목) 세출 과목 비교]

세목	내역
기관운영출연금 (350-01)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 (350-02)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출연금(350-02) 정비기준에 따르면, “사업출연금(350-02)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해야 한다.¹⁷⁾ 따라서 이 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을 전환하거나, 사업출연금(350-02)의 비목에 맞게 사업비 위주로 예산 산출내역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11) 코드: 일반회계 4131-300

12) 코드: 일반회계 4131-304

13) 코드: 일반회계 4134-302

14)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134-303

15) 코드: 일반회계 4143-300

16) 코드: 일반회계 4131-500

17) 같은 지침, p.262. 2026년도 지침도 같다(p.266).

4-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월결손금 발생 문제

가.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¹⁸⁾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출연기관으로, 현재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수익은 861억 6,900만 원, 총비용은 905억 3,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3억 6,500만 원이고, 자산 148억 8,600만 원, 부채 182억 2,300만 원, 자본(순자산) △33억 3,700만 원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무결산]

(단위: 백만 원)

재무상태		손익계산	
자산	14,886	총수익	86,169
부채	18,223	총비용	90,534
자본	△3,337	당기순손실	△4,365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나. 분석의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예상보다 적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고유사업비의 재원이 부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었던 전년도와 달리 지출 규모를 크게 감축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지출을 감축하였더라도 순자산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출연금¹⁹⁾과 위탁 및 독점수입(학점은행제 수수료, 독학학위제 수험료), 기타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전년도 결산잉여금)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 사업 중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고유사업비(학점은행제 운영, 독학학위제 운영 등)를 충당한다. 진흥원은 이상의 세입, 세출 사업을 기관출연·고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18)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19)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4135-300)의 출연금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 예산 결산]

(단위: 백만 원)

세입			세출		
항목	예산	결산	사업	예산	결산
기관운영출연금	5,298	5,298	인건비	10,225	9,612
위탁 및 독점수입	13,270	13,064	경상운영비	3,645	3,552
기타 자체수입	386	284	고유사업비	8,680	8,270
전년도 이월금	3,596	562			
계	22,550	19,208	계	22,550	21,434

주: 1. 세출 결산은 이월액 포함
 2. 세입 항목 중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하였던 규모²⁰⁾에 비해 작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출연-고유사업의 세입은 수입 결산액이 예산 대비 14.8% 감소(△33억 4,200만 원)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세출 지출 및 이월 결산액을 예산액보다 4.9% 감축(△11억 1,600만 원)하는 데 그쳤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비교]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A)	결산(B)	B-A	(B-A)/A
세입	22,550	19,208	△3,342	△14.8
세출		21,434	△1,116	△4.9

주: 세출 결산에는 이월 포함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입 수입이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액수보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던 2024회계연도 결산²¹⁾과 비교해보면 2025회계연도에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지출의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 35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된 액수와 같다.

21) 전년도이월금(20억 200만 원)이 예상(35억 9,600만 원)보다 적었다(△15억 9,400만 원).

[2024,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예산 결산 비교]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4				2025			
	예산(A)	결산(B)	B-A	(B-A)/A	예산(A)	결산(B)	B-A	(B-A)/A
세입	22,365	20,421	△1,944	△8.7	22,550	19,208	△3,342	△14.8

주: 예산은 추정예산 포함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수입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8.7% 작았는데, 이에 따라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는 △15.3%, 경상운영비는 △14.0% 지출을 감축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의 지출 감축 수준은 인건비의 경우 △6.0%, 경상운영비는 △2.6%에 그쳤다.

[2024, 2025회계연도 인건비, 경상운영비, 고유사업비 예산액 대비 결산액 감축 규모 비교]

(단위: 백만 원, %)

세출 사업	2024				2025			
	예산(A)	결산(B)	B-A	(B-A)/A	예산(A)	결산(B)	B-A	(B-A)/A
인건비	10,250	8,679	△1,571	△15.3	10,225	9,612	△613	△6.0
경상운영비	3,238	2,784	△454	△14.0	3,645	3,552	△93	△2.6
고유사업비	8,877	8,396	△481	△5.4	8,680	8,270	△410	△4.7
계	22,365	19,859	△2,506	△11.2	22,550	21,434	△1,116	△4.9

주: 예산은 추정예산 포함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결과 2025회계연도에는 결산잉여금이 없이 이월결손금이 22억 2,600만 원 발생하였다.²²⁾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감소는 대부분(90.8%) 전년도이월금(2024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감소(△30억 3,400만 원)로 인한 것으로, 이는 2024회계연도와 비슷한 상황이다.²³⁾

22) 진흥원은 차입으로 결손금을 충당하였다.

23) 2024회계연도에는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감소액 19억 4,400만 원 중 전년도이월금(20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감소액(15억 9,4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2.0%였다. 전년도이월금의 규모는 진흥원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인 3. 31.('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인다.

[2025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고유사업 세입]

(단위: 백만 원, %)

세입 항목	예산(A)	결산(B)	B-A	(B-A)/A	전체 세입 감소 중 비중
기관운영출연금	5,298	5,298	0	0	0
위탁 및 독점수입	13,270	13,064	△206	△1.6	6.2
기타 자체수입	386	284	△102	△26.4	3.0
전년도 이월금	3,596	562	△3,034	△84.4	90.8
계	22,550	19,208	△3,342	△14.8	100.0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액 대비 결산 세입 수입의 감소폭(△33억 4,200만 원, △14.8%)보다 작은 규모로 세출 사업 지출을 감축(△11억 1,600만 원, △4.9%)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산(148억 8,600만 원)보다 부채(182억 2,300만 원)가 커 순자산 결손금(△33억 3,700만 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진흥원 출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상한 전년도 이월금의 액수가 실제보다 컸던 데서 비롯한 것이다. 2025회계연도에 2024회계연도만큼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출을 감축하였더라도 순자산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어린이집 확충¹⁾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2)에 따라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66억 8,400만 원 중 69.6%인 18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1억 1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어린이집 확충	26,684	26,684	0	26,684	18,583	0	8,101	22,462	22,462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1634-300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은 50%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가 17개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교부액 185억 8,300만 원 중 111억 9,5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42.0%이다.

[2025회계연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자치단체 교부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부처		사업 시행 주체(17개 시도)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 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26,684	26,684	18,583	18,583	11,703	29,812	19,957	18,583	11,195	7,677	2,178	42.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등 영유아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인바, 어린이집의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FR)³⁾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5년 0.8명(잠정)으로 반등하는 추세이다.⁴⁾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이래로 계속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대체 수준(2.1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는 1971년에 1,024,77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5년에는 고점 대비 24.8% 수준인 254,457명(잠정)에 그치고 있다.

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이다.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4) 특정 기간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앙(年央)인구(연초 인가와 연말 인구의 산술평균)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2025년 5.0명(잠정)이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1970~2025)]

(단위: 명, 천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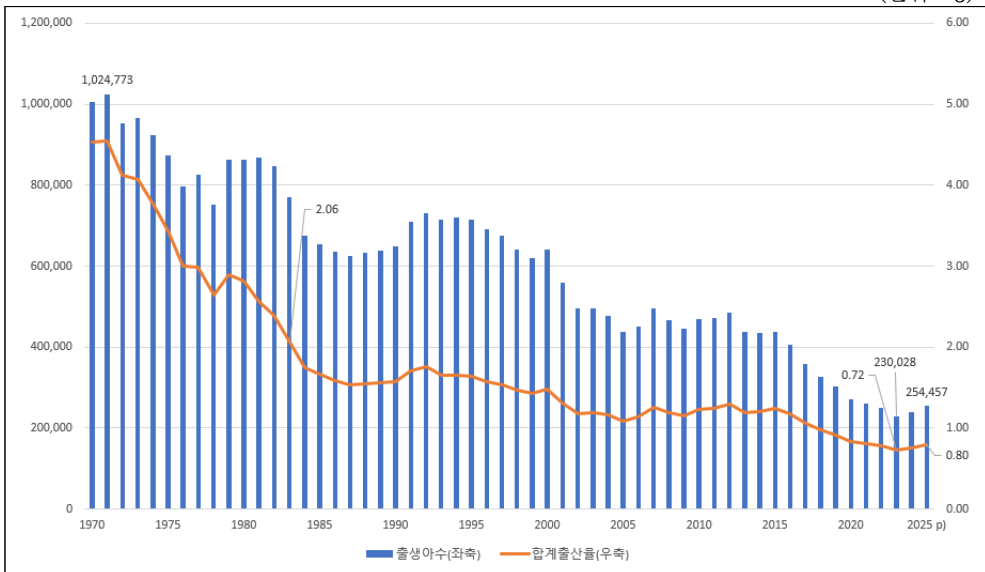
연도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1970	1,006,645	31.2	4.53
1971	(최고) 1,024,773	31.2	4.54
1980	862,835	22.6	2.82
1983	769,155	19.3	(대체수준 미만) 2.06
1990	649,738	15.2	1.57
2000	640,089	13.5	1.48
2010	470,171	9.4	1.23
2023	(최저) 230,028	(최저) 4.5	(최저) 0.72
2024	238,317	4.7	0.75
2025 ^{p)}	254,457	5.0	0.80

주: 2025년은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970~2025) 그래프]

(단위: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을 바탕으로 재작성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수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 전국 43,770개소에 달했으나 12년 뒤인 2025

년에는 40.5% 감소한 26,064개소가 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이나 그 외에 가정,⁵⁾ 민간⁶⁾어린이집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199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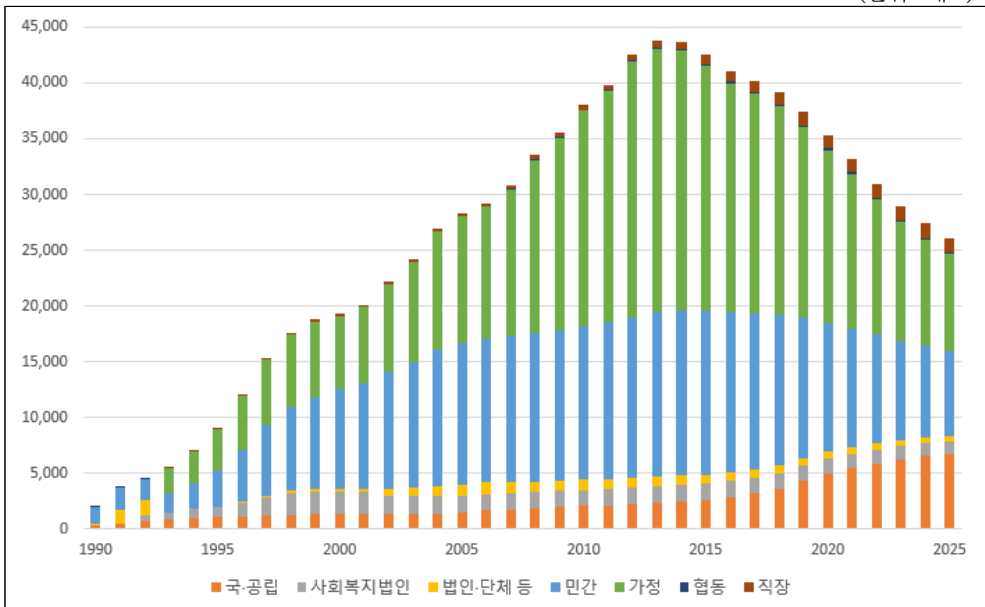
(단위: 개소)

연도	전체	국공립	가정	민간	기타
1990	1,919	360	-	1,500	59
2000	19,276	1,295	6,473	8,970	2,538
2010	38,021	2,034	19,367	13,789	2,831
2013 (최대)	43,770	2,332	23,632	14,751	3,055
2020	35,352	4,958	15,529	11,510	3,355
2025	26,064	6,745	8,664	7,653	3,002

기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협동어린이집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운영현황(1990~2025) 그래프]

(단위: 개소)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을 바탕으로 재작성

5)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어린이집 외에 그 밖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보육 강화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현재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⁷⁾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국정과제]

정부	국정과제
이명박 정부	4-2-3 수요자 중심 보육·유아교육정책 개편, “취약 지역 국공립 시설 균형 배치”
박근혜 정부	63-1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단위과제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
문재인 정부	48-3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윤석열 정부	46-2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보육이용률 확대)
이재명 정부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세부 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료: 교육부

이 사업은 신축 외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신축은 3개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는 2개년에 걸쳐 예산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258개소를 확충(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224개소가 증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는 추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지원 실적 및 국공립어린이집 증감]

(단위: 개소)

구분	2022	2023	2024	2025
확충 예산 지원 실적	493	414	368	258
전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증감	364	386	334	22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을 바탕으로 재작성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10.1%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나, 2025년에는 33.7%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비중(1990~2025)]

(단위: %)

연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1990	52.1	-	3.1	41.7	-	3.1	-
2000	14.5	23.0	2.3	49.1	9.9	-	1.1
2010	10.8	8.9	4.0	52.5	22.0	0.1	1.7
2012	10.1	7.6	3.5	51.7	25.0	0.2	2.0
2020	20.4	6.3	2.7	46.5	18.5	0.3	5.3
2025	33.7	5.1	2.1	38.0	14.0	0.3	6.9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런데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며, 2022회계연도부터 보면 실집행률이 40% 안팎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6% 감액하였으나 실집행률은 42.0%에 불과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회계연도	본예산	추경(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2022	60,903	49,678	49,520	19,131	99.7	38.5
2023	49,170	32,427	32,178	11,517	99.2	35.5
2024	41,654	41,654	25,498	14,838	61.2	35.6
2025	26,684	26,684	18,583	11,195	69.6	42.0

자료: 교육부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저출생 기조로 보육 수요가 감소함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가 과다 추계되었고, 개소당 지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축 사업⁸⁾이나 장기임차 사업⁹⁾의 물량이 부족하여 개소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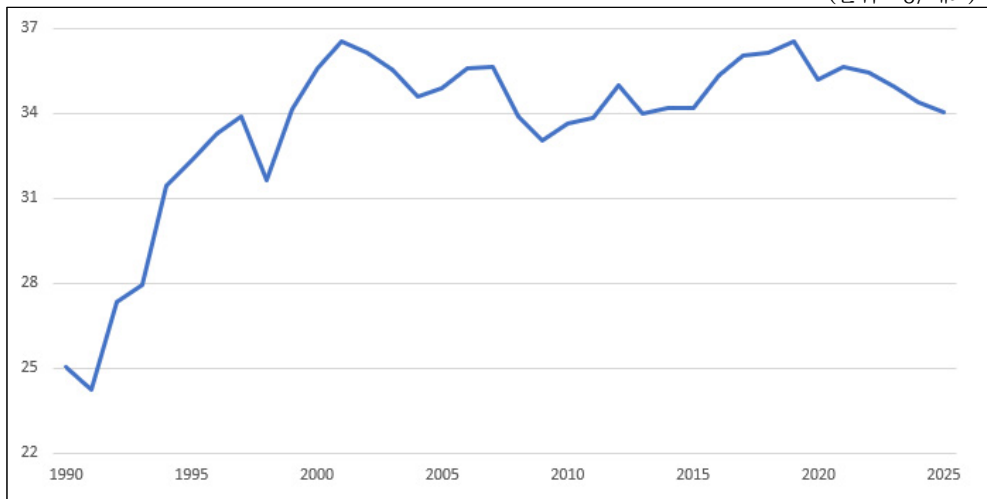
8)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 일반 1,676천 원/㎡, 장애아전문 1,800천 원/㎡

로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¹⁰⁾에 편중됨에 따라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며,¹¹⁾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분할 교부 방식을 도입하면서 집행 규모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전국 단위로 보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당 보육 아동 수는 2000년대 이후 33~37명 수준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다소 감소 추세이다.

[어린이집당 보육 아동 수]

(단위: 명/개소)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신도시 등 영유아 수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¹²⁾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 가정어린이집 평균 150,000천 원, 민간어린이집 평균 200,000천 원

10)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 평균 100,000천 원

11) 참고로 신축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장기임차 방식은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2) 「“출산 동시에 대기 넣어도 100번대” …출산을 느는데 어린이집 태부족», 서울경제, 2026. 4. 17. 보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지자체별 실수요 검토 필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¹⁾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보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288억 5,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0	0	0	0	128,852	128,852	128,852	0	0	470,335	470,33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이 사업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교육부)’ 중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의 한 내용이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교육부) 주요 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자료: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은 2025년에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26년은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31-30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계획]

연령	2025년	2026년	2027년
3세			○
4세		○	○
5세	○	○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²⁾하였다. 2025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수정의결하면서 예산 총칙에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2,680억 9,000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5년도 예산총칙 중 5세 무상교육 추진 근거]

정부 제출안	국회 수정안
<p>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p>	<p>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 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p>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제33회 국무회의(2025. 7. 29.)에서 목적예비비 배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5. 7.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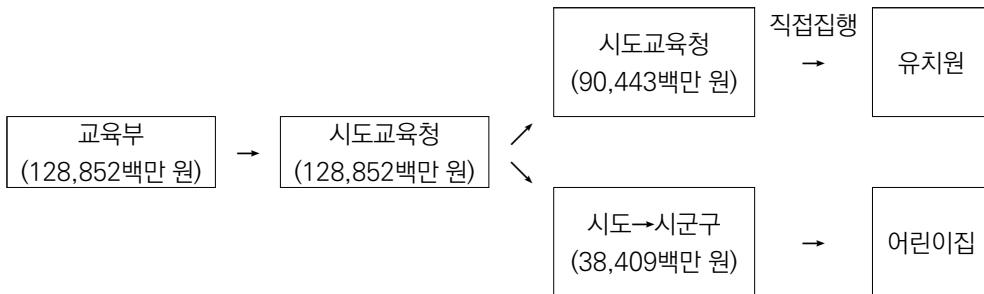
예비비로 하반기 6개월분 1,288억 5,2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시도교육청에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이 시도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구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비목은 자치단체교부금(330-02)이다.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자치단체 교부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부처		사업 시행 주체(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실 집행률
본예산	추경								
0	0	128,852	128,852	0	128,852	128,852	0	0	100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예산집행 절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심의, 의결³⁾을 거쳐 향후 5년간(2026~2030) 사업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0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적정성평가를 실시(2025. 9.~12.)하였다.

3) 제37회 국무회의(2025. 8. 18.)

이 사업으로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씩 지원하도록 단가를 산정하였다.4) 교육부는 이 단가에 각 시도별 대상 유아 수를 곱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다.5)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

(단위: 만 원/월)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항목	방과후과정비	유아교육비	기타필요경비
단가	2	11	7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시도별 교부액]

(단위: 천 원, 명)

시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서울	646,920	5,391	10,876,140	16,479	5,836,320	13,896	17,359,380
부산	299,640	2,497	6,246,900	9,465	1,510,740	3,597	8,057,280
대구	255,000	2,125	5,894,460	8,931	928,200	2,210	7,077,660
인천	402,120	3,351	6,539,280	9,908	2,173,500	5,175	9,114,90
광주	180,000	1,500	3,574,560	5,416	836,640	1,992	4,591,200
대전	130,800	1,090	3,531,660	5,351	699,300	1,665	4,361,760
울산	160,200	1,335	2,299,440	3,484	741,720	1,766	3,201,360
세종	277,920	2,316	3,960	6	567,840	1,352	849,720
경기	2,176,200	18,135	22,222,200	33,670	13,046,460	31,063	37,444,460
강원	279,960	2,333	1,732,500	2,625	1,275,540	3,037	3,288,000
충북	358,680	2,989	1,503,480	2,278	1,588,020	3,781	3,450,180
충남	363,000	3,025	3,124,440	4,734	2,270,520	5,406	5,757,960
전북	252,240	2,102	2,444,640	3,704	1,298,220	3,091	3,995,100
전남	370,320	3,086	1,686,300	2,555	1,698,900	4,045	3,755,520
경북	378,960	3,158	4,494,600	6,810	1,363,740	3,247	6,237,300
경남	468,360	3,903	6,433,680	9,748	1,985,340	4,727	8,887,380
제주	275,160	2,293	559,680	848	588,000	1,400	1,422,840
전국	7,275,280	60,629	83,167,720	126,012	38,409,000	91,450	128,852,000

주: 2025년 4월 말 기준 기관별 인원 × 기관별 지원 단가 × 6개월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참고로 2026년도 예산도 같은 단가로 편성되었다.

5)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도 또한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방식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별로 모든 유아에게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분석의견

사립유치원마다 원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모든 시도의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교부하였는바, 그 결과 여전히 학부모가 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한편,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줄인 사례가 발생하였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2025년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이 사업 시행 전 정부, 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수준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하였다.

[2025회계연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예비비 배정액 산출 근거(사립유치원)]
(단위: 명, 만 원, 개월, 백만 원)

구분	지원 항목	인원	단가	기간	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26,012	11	6	83,168

자료: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⁶⁾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다(「유아교육법」 제24조). 즉, 표준유아교육비는 전국이 같은 액수이다. 유치원 원비는 유치원 원장이 정하고 교육감이 승인한다. 다만,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같은 법 제25조).⁷⁾ 따라서 유치원 원비는 시도별로 다르다.

유치원 알리미의 2025년 1차(4월) 공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교육비⁸⁾(유아교육비)는 서울, 경기만 11만 원이 넘고, 타 시도는 대체로 1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은 교육비가 0원에 가까운 수준이다.⁹⁾ 이 사업 이후인 2025년 2차(10월), 2026년 1차(4월) 공시를 보면 서

6)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유아교육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7) 아울러 원비를 동결하거나 원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월 최대 51만 원 지원한다.

8) 각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경비의 월 평균값으로 각 연령별 유아 1인당 소요되는 학부모 고지 금액을 의미한다.

울, 경기도는 교육비가 평균적으로 9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균 11~12만 원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은 교육비가 8만 원가량 경감되었으나, 시도별로 볼 때 평균적으로는 교육비가 2만 원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더라도 교육비 경감액은 평균 3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¹⁰⁾

[사립유치원 5세 교육과정 교육비 시도별 공시 분석]

(단위: 원)

시도	2025년 1차(4월)(A)	2025년 2차(10월)(B)	2026년 1차(4월)(C)	교육비 경감	
				D=B-A	E=C-A
서울	200,559	111,619	113,197	△88,940	△87,362
인천	6,000	5,486	3,997	△514	△2,003
경기	204,161	133,668	98,774	△70,493	△105,387
강원	87,573	67,986	31,896	△19,587	△55,677
대전	44,602	42,769	6,653	△1,833	△37,949
충남	0	98	308	98	308
충북	31,828	14,766	4,056	△17,062	△27,772
대구	70,177	33,812	10,511	△36,365	△59,666
경북	32,981	4,479	3,474	△28,502	△29,507
부산	87,606	11,370	468	△76,236	△87,138
울산	390	0	0	△390	△390
경남	0	0	0	0	0
전북	2,362	2,362	1,547	0	815
광주	21,595	12,471	13,279	△9,124	△8,316
전남	24,378	11,041	5,000	△13,337	△19,378
제주	4,317	0	0	△4,317	△4,317

주: 1. 세종특별자치시는 사립유치원이 없음

2. 취학대상 아동(2018년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자료: 유치원알리미

9) 유치원알리미 누리집(<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 정보공시지표 - 원비 참조

10) 시도별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면, 교육비 경감액은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는 경우 2~3만 원,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는 경우 4~6만 원 수준이다.

이 사업 전에 이미 유치원 원비가 평균적으로 11만 원 미만이었던 시도 중 일부는, 이 사업으로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교부되자, 기존에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비를 감액하기도 하였다.¹¹⁾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북, 경남교육청에서 자체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감액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무상교육 지원 예산 감액 이력]

(단위: 원)

시도	감액 전			교육청 자체 무상교육비 감액(D)	감액 후 (C+D)
	교육부(A)	교육청(B)	계(C=A+B)		
인천	390,000	272,000	662,000	△103,000	559,000
광주		150,000	540,000	△50,000	490,000
울산		215,000	605,000	△75,000	530,000
강원		230,000	620,000	△60,000	560,000
전북		215,000	605,000	△70,000	535,000
경남		199,000	589,000	△67,000	522,000

주: 교육부 지원 예산(39만 원) = 유아학비(28만 원) + 무상교육비(11만 원) ※ 방과후과정비 제외
 자료: 교육부

따라서 이 사업은 애초에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이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시도에도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이 일반적으로 제고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구조는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명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실제 학부모 부담금은 기관별, 지역별로 발생하는 금액이 모두 달라, 평균적인 학부모 부담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단가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한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이 사업 지원 예산을 반영한 무상교육보육비보다 적은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부담 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항목 내에서 유아 직접 교육경비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체 무상교육비 감액분을 원상 복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인천, 울산, 경남교육청은 감액하였던 자체 무상교육비를 일부 복구하였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국가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11)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2025. 10. 30.) 문정복 의원 질의 참조

것은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도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비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시도별로 인당 예산 교부 단가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시도별 차등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경우 유아 무상교육은 시도의 과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학교별로 수업료, 입학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자율 학교	고등 공민 학교	고등 기술 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 교	각종 학교
					외국어 -국제	예술- 체육	기타						
서울	○	○	△	△	○	○	-	○	△	-	○	-	○
인천	○	○	△	△	○	○	○ ¹⁾	○	△	-	○	-	○
경기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충북	-	○	○	○ ²⁾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제주	○	○	△	△	○	○	○ ³⁾	○	△	-	○	-	○

주: 1) 산업수요 맞춤형

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3) 과학

1. △: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

자료: 각 시도 조례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¹⁾는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9,410억 5,000만 원²⁾ 중 99.6%인 1조 9,33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31억 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001,000	1,941,000	50	1,941,050	1,933,519	0	7,531	2,140,335	2,140,33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RISE지원전략(5개년)을 수립하여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설정하고, 시·도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RISE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며, 한국연구재단(NRF)이 중앙RISE센터로서 운영 지원, 성과관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17개 시·도별로 시도지사와 지역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업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20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2023, 2024)은 별도로 국고가 편성되지 않은 비예산 사업이었다. RIS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0% 이상 의무매칭하는 자치단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301-400

2) 「글로벌대학 성과관리 강화방안」(2025. 4.)이 연중 마련되면서 연차별 성과평가와 지원율이 확정, 조정됨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600억 원이 감액되었다.

체 경상 보조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84.5%)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은 추경예산 1조 6,396억 5,100만 원 중 1조 6,275억 8,400만 원을 교부하여 1조 6,24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원을 이월하였고, 실집행률은 99.1%이다.

[2025회계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부처		사업 시행 주체(피보조 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본예산	추경								
1,699,651	1,639,651	1,627,584	1,627,584	0	1,627,584	1,624,084	3,500	0	99.1

자료: 교육부

RISE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 수는 전국 총 327개교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외에 특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등도 포함된다.

[시도별 RISE 사업 지원대상 대학 수]

(단위: 개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RISE	36	21	11	13	15	15	4	5	65
전체	89	27	14	13	18	20	6	10	8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RISE	18	18	24	13	18	28	20	3	327
전체	23	19	28	21	22	38	22	5	461

주: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외에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등) 포함

2. 대학의 각 캠퍼스는 별개 대학으로 산정

3. 세종은 세종시 공동캠퍼스 포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같은 이름의 내역사업 외에 기존에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던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까지 총 8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2026년도 예산부터 RISE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나. 분석의견

RISE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반면, 글로벌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하므로 글로벌대학 사업을 교육부가 RISE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개편한 것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대학 사업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에 파격 투자하여 혁신 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며,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여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 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중에서 글로벌대학을 지정한다.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하거나 포괄적 연합의 형태로 공동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부터 글로벌대학 지정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27개교(공동 신청 포함)를 지정하여 글로벌대학 선정을 완료하였다.

[글로벌대학 지정 현황(27개교)]

2023년 지정(10개교)	2024년 지정(+10개교)	2025년 지정(+7개교)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성대
한림대	한동대	충남대+국립공주대
국립경국대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대구한의대	순천향대
포항공과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한서대
부산대+부산교대	동아대&동서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울산대	건양대	제주대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대전보건대&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	-
전북대	원광대(+원광보건대)	-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

주: 통합(+), 연합(&)

자료: 교육부

글로벌대학 중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2025년)로 출범하였고, 국립강릉원주대가 강원대로, 경남도립거창대와 남해대가 국립창원대로, 원광보건대가 원광대로 각각 통합(2026년)되었다. 연합대학은 대학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지원금을 배분한다.

글로벌대학 예산은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의 경우 RISE 사업의 전신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⁴⁾과 국립대학육성사업⁵⁾으로 분리하여 편성, 집행하였다. 위 2개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이었다.

그런데 이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이 폐지되고 2025년도 예산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서, 글로벌대학 예산이 RISE 사업 내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RISE 사업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는 “글로벌대학 지원액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글로벌대학에게 교부받은 지원액을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은 특정 대학을 칭한다기보다는 단일 또는 복수의 대학이 추진하는 혁신 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RISE 체계 내에서 지역과 대학 혁신을 선도하는 우수 모델로서 성과를 창출할 의무를 지니는바, 시도는 교육부의 RISE 지원전략에 따라 RISE 기본계획에 글로벌대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즉, RISE 체계 내에서 글로벌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은 글로벌대학 중 거점국립대에 대한 예산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다시 분리하였다. 거점국립대 외의 국립대(국가중심대)와 사립대, 전문대는 2025회계연도와 같이 RISE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즉, 글로벌대학 중 거점국립대에 대하여는 2023, 2024회계연도와 같이 시도를 통하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4) 따라서 RISE 사업과 사업 코드가 같다.

5)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04-301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 편성 구조(2023~2026)]

(단위: 억 원, 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예산	578.8	1,720.0	3,769	6,085	
	지원대학	14	31	39	35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420.8	1,027.5	-	2,362
		지원대학	10	13	-	1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	150	596.9	-	-
		지원대학	3	10	-	-
지역혁신(RIS) (~2024)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8.0	95.6	-	-
		지원대학	1	8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5~)		예산	-	-	3,769	3,723
		지원대학	-	-	39	23

- 주: 1. 지원대학 수는 통폐합 전 기준, 누적 본지정 수
 2. 2025년 누적 -1: 국립안동대 + 경북도립대 → 국립경국대
 3. 2026년 누적 -4: 국립강릉원주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원광보건대 통폐합
 4.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의 내역사업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도 글로벌대학 사업은 RISE 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방식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글로벌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지정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중앙주도형 사업이라는 것이다. 다만, RISE 사업 내 우수한 혁신 모델 확산을 위하여 글로벌대학을 RISE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대 RISE 체계에 글로벌대학을 포함하여 추진한 2025회계연도 사업의 수행 체계는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비교해보면, RISE 체계에서는 시도지사와 지역대학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지원대학을 선정하나, 글로벌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2023년부터 글로벌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회계연도만 전체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을 RISE 사업 내에 포함하였던 셈인데, 두 사업 간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도 글로벌대학 예산은 2025년도와 달리

거점국립대에 대한 예산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밖으로 분리하여 편성된 점, 교육부도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RISE 체계와 별개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예산 편성 방식이 1년 만에 일부 과거로 회귀한바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방식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글로벌대학 예산 지원 현황(2023~2025)]

(단위: 억 원)

연번	지정	대학명	유형	설립	2023	2024	2025	계
1	2023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국립	80	150	389.2	619.2
2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국립	79	150	321.4	550.4
3		국립경국대	통합	국립	40	150	272	462
4		충북대/한국교통대	통합	국립	80	150	268.8	498.8
5		경상국립대	-	국립	50	95	210	355
6		순천대	-	국립	50	100	200	350
7		울산대	-	사립	50	100	111.3	261.3
8		전북대	-	국립	50	95	200	345
9		포항공대	-	사립	50	100	200	350
10		한림대	-	사립	50	100	170	320
11	2024	창원대/ 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승강기대	통합 연합	국립 공립 사립	-	80	130	210
12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사립	-	50	156.25	206.25
13		진양대	-	사립	-	50	100	150
14		경북대	-	국립	-	50	70	120
15		목포대	-	국립	-	50	110	160
16		동아대/동서대	연합	사립	-	50	75	125
17		대구/광주/대전보건대	연합	사립	-	50	105	155
18		대구한의대	-	사립	-	50	85	135
19		인제대	-	사립	-	50	85	135
20		한동대	-	사립	-	50	105	155
21	2025	경성대	-	사립	-	-	50	50
22		순천향대	-	사립	-	-	50	50
23		전남대	-	국립	-	-	50	50
24		제주대	-	국립	-	-	50	50
25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사립	-	-	69	69
26		충남대/공주대	통합	국립	-	-	86	86
27		한서대	-	사립	-	-	50	50

자료: 교육부

가. 현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¹⁾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조 9,807억 4,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4,980,747	0	0	4,980,747	4,980,747	0	5,116,057	5,116,057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중소기업 취업연계, 선취업 후학습),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운영비(인건비)가 있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은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²⁾ 심의 시 당초에 정부 제출안에는 교육부 소관 증감 사업이 없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I 유형, 다자녀)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³⁾에는 1학기 실적과 2학기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I 유형, 다자녀, II유형, 대학생 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을 감액하였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645-300

2) 4. 21. 제출, 5. 1. 의결

3) 6. 23. 제출, 7. 4. 의결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본예산, 추경(제1회, 제2회)예산 증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5 본예산	2025 제1회 추경		2025 제2회 추경	
		증감	추경예산	증감	추경예산
국가장학금 I 유형	3,029,187	79,600	3,108,787	△141,400	2,967,387
국가장학금 다자녀	1,113,776	36,100	1,149,876	△58,600	1,091,276
국가장학금 II 유형	260,000	-	260,000	△130,000	130,000
대학생 근로장학금	627,442	-	627,442	△100,000	527,442
주거안정장학금	34,435	-	34,435	△10,000	24,4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처럼 이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부 증액하였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되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 4조 9,807억 4,700만 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였다. 이 중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이 4조 2,709억 9,900만 원으로 85.8%를 차지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은 4조 1,959억 8,200만 원이 집행되어 실효행률이 98.2%이다.

[2025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출연금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내역사업	부처			사업 시행 주체(출연 기관)						
	예산		집행 액	교부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실 집행률
	본예산	추경								
국가장학금 지원	4,485,299	4,270,999	4,270,999	4,270,999	0	4,270,999	4,195,982	0	75,017	98.2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627,442	527,442	527,442	527,442	0	527,442	527,407	0	35	10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27	57,827	57,827	57,827	0	57,827	57,733	0	94	99.4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97,963	97,963	97,963	97,963	0	97,963	97,515	0	448	99.5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34,435	24,435	24,435	24,435	0	24,435	19,910	0	4,525	81.5
운영비(인건비)	2,081	2,081	2,081	2,081	0	2,081	2,081	0	0	1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바, 각종 지원제도에서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의 대부분(81.5%)⁴⁾을 차지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⁵⁾ 지역인재 국가장학금⁶⁾으로 구성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가장 큰 비중(69.5%)을 차지하는 I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0구간(기준중위소득 300% 초과)을 제외한 가구의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상한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된다. I 유형과 같은 구조로 학자금 지원 구간 중 기준중위소득 300%를 초과하는 10구간을 제외한 가구의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상한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데, I 유형보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 상한액이 크다. 즉,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I 유형보다 우선 지원되고, 중복수혜는 불가하다.⁷⁾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 이하, 즉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300% 이하)의 경우 학기별 10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 자녀나 I 유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⁸⁾나 차상위계층⁹⁾만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 4) 교육부 집행액(한국장학재단 출연) 기준이다. 한국장학재단 실집행액 기준으로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의 높은 실집행률(98.2%)을 고려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5)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고 교내장학금 규모(총액 기준)를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 2025. 2. 참조).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지원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I 유형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6)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I, II 유형과 중복수혜할 수 없다.
- 7) I 유형 지급 후 다자녀 지원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지급 가능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장학금 명칭만 변경 처리된다.
- 8)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9)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2025년도 학기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상한

(단위: 원/월, 만 원)

학자금 지원 구간			지원금액 상한					
			I 유형		다자녀			
구간	기준 중위소득	경쟁값			첫째, 둘째		셋째 이상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수급 자격 확인		전액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30% 이하	1,829,332	285	300	285	305	전액	전액
2구간	50% 이하	3,048,887						
3구간	70% 이하	4,268,441						
4구간	90% 이하	5,487,996	210	220	240	252.5		
5구간	100% 이하	6,097,773						
6구간	130% 이하	7,927,105	175	180	225	232.5		
7구간	150% 이하	9,146,660						
8구간	200% 이하	12,195,546	50	50	67.5	67.5	100	100
9구간	300% 이하	18,293,319						
10구간	300% 초과	-	-	-	-	-	-	-

주: 2025학년도 2학기 지원금액 상한액 인상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 상한을 결정하는 학자금 지원 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구분된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¹⁰⁾을 사용하는데, 4인 가구(2025년 6,097,773원)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다음, 다자녀 가구는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한다.¹¹⁾

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10)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증위값이다.

11) 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교육부는 본인과 부모 외에 형제자매, 조부모 등은 학비 부담 주체로 보기 어렵고, 전체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제공 동의에 관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50조의3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를 보면 최근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²⁾ 예컨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¹³⁾은 과거에 다자녀가구를 세 명 이상의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각 2024. 12. 31.과 2024. 3. 25.에 개정되면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다자녀 정의 관련 법령 입법례]

법령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다자녀 양육자 ”라 한다) 중 … (이하 생략)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임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중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취득세 면제, 2자녀 양육자는 50% 경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현행 법령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 「주택법」이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 주택공급,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관한 것이다.

가. 현황

신재생에너지 설치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이다.²⁾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 원 중 98.9%인 8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00만 원을 불용³⁾하였다.

[2025회계연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115,224	3,362	1,118,586	1,103,437	240	14,909	910,898	922,898
신재생에너지 설치	9,000	9,000	0	9,000	8,902	0	98	9,000	21,00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이 사업은 교육부 직접 사업으로 국립대학이 설계, 공사 용역 계약을 직접 수행한다. 비목은 실시설계비(420-02),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및 시설부대비(420-05)로 구성된다.

태양광 외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 국립대학은 부지 여건과 설치 편리성 측면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0년에 충북대에서 지열(227kW)로 설치한 사례가 1건 있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40-300의 내역사업

2) 엄밀하게는 내역사업인 정책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3) 시설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준공정산

이 사업은 2018년에 3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 매년 90억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2027년까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26년도 본예산도 기존 계획에 따라 90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립대학 에너지자립률 10%를 2029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하고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즉,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210억 원이다.

[국립대학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30	60	90	90	90	90	90	90
구분	2026			2027	2028	2029	계	
	본예산	추경증액	소계	계획	계획	계획		
예산	90	120	210	120	120	120	1,2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⁴⁾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목에 국립대학 전기료 납부액이 편성되는데,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중 60~75%를 차지한다. 2025년도 전기료 예산은 628억 9,700만 원 규모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확충되면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납부액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학 전기료 납부액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요금 및 제세(A)	49,536	53,837	57,262	67,976	70,416	74,229	83,015	84,488
전기료(B)	31,841	33,641	39,277	45,069	46,856	49,080	58,130	62,897
전년 대비	-	5.7	16.8	14.7	4.0	4.7	18.4	8.2
비중(B/A)	64.3	62.5	68.6	66.3	66.5	66.1	70.0	74.4

자료: 교육부

4)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03-250

나. 분석의견

당초에 국립대학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현재 에너지자립률 7.1%로 목표를 일차적으로 달성한 상황인 반면, 일부 국립대학은 설치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대학 별로 설치 예산을 안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 실적을 보면 단가가 kW당 약 288만 원 수준이다. 예산 편성 시 단가인 kW당 333만 원보다 약 14% 낮다.⁵⁾

[연도별 국립대학 신재생 발전 설비설치 단가]

(단위: 백만 원/kW)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단가	2.92	3.05	2.97	2.81	2.82	2.91	2.93	2.68	2.88

주: 평균은 연도별 예산액에 따른 가중평균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면서 2027년까지 국립대학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당시 설정한 에너지 대체율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분모로 하였다.⁶⁾

그런데 2025년 말에 국립대학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에너지자립률은 7.1%이다. 국립대학의 연간(2025년) 전력사용량 808GWh 중 신재생 발전량은 58GWh이고, 발전설비는 발전량 기준으로 대부분(93.2%)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비하여 단가가 높은 데 대하여, 교육부는 기후부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민간업체 모듈 설치 단가만 반영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전기 배선 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6) 대체율 = $\frac{\text{신재생에너지생산량}}{\text{건물예상에너지사용량}} \times 100$

[국립대학 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단위: kWh, %)

구분	연간 전력사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옥상	주차장	기타	
전력량	807,716,934	57,597,851	53,683,408	2,734,024	1,180,419
비중	100	7.1	6.7	0.3	0.1

자료: 교육부

에너지자립률⁷⁾은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모로 하므로 당초에 목표로 설정하였던 에너지 대체율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즉, 당초에 대체율 5%를 2027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어도 2025년에는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국립대학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 배정 및 설비 설치용량을 보면, 37개⁸⁾ 국립대학 중 2개(부산교대, 공주교대) 대학은 예산 배정 및 설비 설치 실적이 전혀 없다.

물론 에너지 대체율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과 무관하게 2027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었을 수 있다. 나아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에너지자립률 목표를 상향하면서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한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국립대학 내에서도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0개 교육대학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예산 49억 2,500만 원 중 33%가 1개 대학(경인교대)에 배정된 것은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난 현시점에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이 대학별로 안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에너지자립률 = $\frac{\text{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text{전력사용량}} \times 100$

8) 2026년 현재 강릉원주대가 강원대에 통합되어 36개 국립대학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2025년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강릉원주대를 강원대와 별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대학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 배정액]

(단위: 백만 원)

번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계	3,000	6,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63,000
1	서울교대	-	-	-	-	-	125	-	-	125
2	부산교대	-	-	-	-	-	-	-	-	0
3	경인교대	-	210	280	210	210	240	240	240	1,630
4	춘천교대	-	250	200	-	-	-	-	-	450
5	청주교대	140	250	-	-	-	-	-	-	390
6	공주교대	-	-	-	-	-	-	-	-	0
7	전주교대	-	250	280	210	-	-	-	240	980
8	광주교대	-	-	-	210	210	-	-	-	420
9	대구교대	-	-	-	-	-	-	240	240	480
10	진주교대	-	-	-	210	-	-	240	-	450
11	충남대	130	200	280	300	480	610	690	690	3,380
12	전북대	-	310	465	360	480	610	600	690	3,515
13	전남대	613	310	558	360	480	610	-	-	2,931
14	경북대	-	310	837	720	700	690	690	690	4,637
15	부산대	-	310	465	720	700	690	690	690	4,265
16	강원대	-	310	310	480	480	540	690	690	3,500
17	충북대	300	310	310	-	-	-	400	-	1,320
18	경상국립대	135	228	470	240	360	360	-	-	1,793
19	제주대	200	200	-	-	250	-	600	690	1,940
20	부경대	-	310	310	720	700	690	690	690	4,110
21	목포대	-	310	280	-	300	300	320	320	1,830
22	공주대	-	310	930	480	480	480	480	690	3,850
23	경국대	-	280	310	360	300	300	420	420	2,390
24	군산대	200	-	-	300	300	300	-	-	1,100
25	강릉원주대	-	248	-	210	140	200	-	120	918
26	창원대	202	-	450	240	-	250	320	320	1,782
27	순천대	-	-	-	300	400	-	-	-	700
28	금오공대	180	-	-	-	-	-	-	-	180
29	한국교통대	300	310	310	390	360	360	320	320	2,670
30	한밭대	300	-	-	-	-	-	-	-	300
31	한경국립대	-	224	310	390	200	240	240	240	1,844
32	서울과기대	-	-	310	450	360	360	320	-	1,800
33	한국교원대	-	-	-	-	300	235	-	210	745
34	한국해양대	300	280	280	450	420	420	420	420	2,990
35	한국체육대	-	-	465	-	-	-	-	-	465
36	목포해양대	-	280	280	300	-	-	-	-	860
37	한국방송대	-	-	310	390	390	390	390	390	2,260

자료: 교육부

[대학별 연도별 신재생 발전 설비 설치용량]

(단위: kW)

번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계	1,026	1,964	3,034	3,203	3,197	3,094	3,069	3,364	21,951
1	서울교대	-	-	-	-	-	46	-	-	46
2	부산교대	-	-	-	-	-	-	-	-	0
3	경인교대	-	49	57	62	59	75	66	58	426
4	춘천교대	-	94	88	-	-	-	-	-	182
5	청주교대	44	84	-	-	-	-	-	-	128
6	공주교대	-	-	-	-	-	-	-	-	0
7	전주교대	-	83	95	71	-	-	-	132	381
8	광주교대	-	-	-	101	101	-	-	-	202
9	대구교대	-	-	-	-	-	-	66	87	153
10	진주교대	-	-	-	71	-	-	46	-	117
11	충남대	44	71	100	122	176	250	262	337	1,362
12	전북대	-	101	152	148	171	260	231	374	1,437
13	전남대	235	93	186	174	175	206	-	-	1,069
14	경북대	-	94	252	201	196	151	221	202	1,317
15	부산대	-	95	140	242	209	230	243	262	1,421
16	강원대	-	102	104	163	163	170	241	250	1,193
17	충북대	94	102	227	-	-	-	168	-	591
18	경상국립대	48	77	66	90	211	110	-	-	602
19	제주대	80	61	-	-	63	-	82	222	508
20	부경대	-	89	101	240	229	232	221	244	1,356
21	목포대	-	104	135	-	128	124	100	80	671
22	공주대	-	116	369	174	174	186	155	270	1,444
23	경국대	-	63	84	84	120	78	133	115	677
24	군산대	65	-	-	123	133	85	-	-	406
25	강릉원주대	-	94	-	70	48	78	-	48	338
26	창원대	65	-	114	95	-	89	258	90	711
27	순천대	-	-	-	111	140	-	-	-	251
28	금오공대	70	-	-	-	-	-	-	-	70
29	한국교통대	109	120	123	164	146	148	90	132	1,032
30	한밭대	91	-	-	-	-	-	-	-	91
31	한경국립대	-	96	106	140	74	104	91	101	712
32	서울과기대	-	-	120	192	163	142	124	-	741
33	한국교원대	-	-	-	-	50	69	-	100	219
34	한국해양대	81	88	95	129	141	147	144	123	948
35	한국체육대	-	-	125	-	-	-	-	-	125
36	목포해양대	-	88	94	110	-	-	-	-	292
37	한국방송대	-	-	101	126	127	114	127	137	732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사용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공단부담금 폐지 검토 필요

가.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퇴직수당 공단부담금¹⁾²⁾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담분이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에 각각 해당 과목과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 원을 각각 전액 수납, 지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공단부담금 과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주부담금	1,930,840	1,930,840	1,930,840	1,826,640	1,810,937	15,703	0	99.1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30	23,630	23,630	23,630	23,630	0	0	100.0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급여(공단)분담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계획	수정 계획
	당초	수정								
퇴직수당급여	814,315	807,829	0	0	807,829	737,689	0	70,140	752,582	752,582
퇴직수당급여 (공단)분담금	23,630	23,630	0	0	23,630	23,630	0	0	23,630	23,630

자료: 교육부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8-381의 세목

2)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133-402의 내역사업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236억 3,000만 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비용은 학교경영기관,³⁾ 국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분담한다.⁴⁾ 대학교는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이 40%를 부담하나,⁵⁾ 유·초·중등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경영기관 부담분이 없다. 한편, 국립대학병원에는 2016년 3월부터 사학연금이 적용되면서, 대학병원 법인이 퇴직수당 지급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비용 분담 구조]

구분		학교법인	공단	국가	
사립	유/초/중/고	교원/직원	0%	236억 3,000만 원	잔액
	대학		40%		
국립	대학병원	직원	100%	0%	

주: 사립 대학병원은 대학 법인 소속인 경우(별도 법인인 협력병원 제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현재 기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에 모두 계획되어 있는 구조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여유자금회수 수입 및 자체수입⁶⁾

- 3)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하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6호), 학교경영기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제1항).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참조
- 5)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제5항의 특례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서울대 부설 초중고(4개)에는 사학연금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10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과학영재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도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다.
- 6) 다만, 자체수입 중 연금 개인, 법인, 국가부담금, 군소급부담금, 합산반납금, 재해보상급여 법인부담금, 퇴직수당 법인, 국가부담금 등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재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부담률은 연금 개인부담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교원은 기준소득월액의 5.294%, 사무직원은 9%, 연금 국가부담금은 교원에 한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의 3.706%이다. 즉, 개인, 법인, 국가부담률의 합계는 18%(2020년~)이다. 한편, 재해보상급여 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합

재원에서 공단이 퇴직수당 비용으로 236억 3,000만 원을 부담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7)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재원의 흐름(2025회계연도 결산)]

수입	→	지출	→	수입	→	지출
사학연금 여유자금회수 등 ¹⁾²⁾³⁾		퇴직수당급여 (퇴직수당급여 (공단)분담금)		고용주부담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퇴직수당급여 (퇴직수당급여)
7,120,465백만 원	23,630 백만 원	737,689백만 원 (23,630백만 원)	23,630 백만 원	1,810,937백만 원 (23,630백만 원)	23,630 백만 원	737,689백만 원 (714,059백만 원)

- 주: 1) 여유자금회수 등 = 여유자금회수 + 자체수입
 2) 여유자금회수 = 유가증권매각대 + 정부예금회수
 3) 자체수입 = 재산수입 + 용자원금회수 + 기타(경상이전수입, 잡수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학연금 퇴직수당 재원의 흐름(2025회계연도 결산)]

법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국가부담금
고용주부담금 (퇴직수당법인부담금)		여유자금회수 등 ↓ 퇴직수당급여 ↓ 고용주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퇴직수당국가부담금)
173,323백만 원		23,630백만 원		613,689백만 원
↓ ↓ ↓				
퇴직수당급여(퇴직수당급여) 714,059백만 원(26,180건)				

- 주: 퇴직수당급여 = 법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국가부담금 + 환수금 등
 + 전년도 국가부담금 선수(미수)액 + 당해연도 국가부담금 미수(선수)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계액의 4.54%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44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의2,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3항 참조).

7)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각각 236억 3,000만 원을 더한 셈이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 자원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주부담금	1,930,840	1,930,840	1,930,840	1,826,640	1,810,937	15,703	0	99.1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191,985	191,985	191,985	173,323	173,323	0	0	100.0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23,630	23,630	23,630	23,630	23,630	0	0	100.0
일반회계전입금	969,306	969,306	969,306	969,358	969,306	52	0	100.0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613,689	613,689	613,689	613,689	613,689	0	0	10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퇴직수당은 법인, 공단, 국가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연금과 달리 피고용자분담금이 없으므로 공단부담금에 피고용자 연금분담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근본적으로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은 퇴직연금⁸⁾과 별개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이원화하여 수급받게 된 데 맞춰,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급여가산금⁹⁾을 폐지하면서 1991년 10월에 도입되었다.

8)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9) 퇴직(유족)급여가산금은 1985년 1월에 도입하였던 제도로,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에 일정 비율(20~30%)을 가산하였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이 도입되면서 지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¹⁰⁾ 사학연금공단도 236억 3,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공단부담금으로 명시(1993. 2. 24.)하였다.¹¹⁾ 236억 3,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퇴직수당 도입 전인 1990년도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 지급액이다.

2014년 3월부터는 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 비용 중 40%를 대학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3월부터 국립대학병원에 사학연금이 적용되었는데,¹²⁾ 국립대학병원 직원¹³⁾ 퇴직수당 지급 비용은 국립대학병원 법인이 100% 부담한다.

구체적인 비용부담 과정을 살펴보면,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에 해당 기관(사립대학, 대학병원)에 부담금을 고지 및 수납한다. 국가부담금은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공단이 국가에 요구하여 수납 처리하는데,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데 실제 든 금액에서 법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차감한 국가부담분보다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국가부담금이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제8항).¹⁴⁾

즉, 퇴직수당의 재원은 법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국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과 달리 피고용자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유·초·중고의 경우 현행 제도상 법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급여 사업 계획현액 8,078억 2,900만 원 중 91.3%인 7,37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1억 4,000만

10) 1992년에는 법인이 35/55, 국가가 20/55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학 법인 등 관련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특례 규정 제6항, 제7항 신설

13) 국립대학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다.

14) 즉,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계획액은 당해연도 소요액과 선수액(또는 미수액)으로 나뉘고, 2025회계연도 선수액은 2026년도 퇴직수당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실제로 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은 7,140억 5,900만 원이고, 236억 3,000만 원은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한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계획	수정 계획
	당초	수정								
퇴직수당급여	814,315	807,829	0	0	807,829	737,689	0	70,140	752,582	752,582
퇴직수당급여	790,685	784,199	0	0	784,199	714,059	0	70,140	728,952	728,952
퇴직수당급여 (공단)부담금	23,630	23,630	0	0	23,630	23,630	0	0	23,630	23,630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1992년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까지 35년간 236억 3,000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화폐가치 관련 거시경제지표의 변동 폭과 비교하면 실질 가치는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폐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이상 고정된 금액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화폐가치 관련 거시경제지표 변동(1992~2025)]

(기준연도 2020 = 100)

구분	1992년(A)	2025년(B)	B/A ¹⁾
GDP 디플레이터	49	115	2.3
소비자물가지수	45	117	2.6
생산자물가지수	58	120	2.1

주: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요컨대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달리 피고용자부담금이 없으므로 공단부담금에 피고용자 연금부담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근본적으로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초·중고가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상 국가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⁵⁾

15)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한

둘째, 2025회계연도에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고, 국가부담금 잔액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 원만큼 과소 계상한 잘못이 있는바,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 시 국가부담금에서 236억 3,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퇴직수당급여 실제 지급액은 7,140억 5,900만 원이다. 사학연금 기금의 퇴직수당급여 지출 세부사업의 결산 집행액은 7,376억 8,900만 원이지만, 이 세부사업 중 퇴직수당급여(공단)분담금 내역사업은 실제로 퇴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수정계획	집행(결산)
퇴직수당급여		807,829	737,689
	퇴직수당급여	784,199	714,059
	퇴직수당급여(공단)분담금	23,630	23,630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5회계연도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 통계를 보면 퇴직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퇴직수당의 합계가 7,140억 5,9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학연금공단의 「2024 사학연금 통계연보」(2025. 6.)의 2024년도 통계도 마찬가지다.

[2025회계연도 재직기간별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 통계]

(단위: 건, 천 원, 백만 원)

재직기간	지급 건수(A)	평균 지급액(B)	A × B	재직기간	지급 건수(A)	평균 지급액(B)	A × B
2년 미만 ¹⁾	4,541	271	1,230	19년 미만	215	37,011	7,957
3년 미만	3,364	544	1,831	20년 미만	206	42,232	8,700
4년 미만	2,578	830	2,140	21년 미만	188	53,486	10,055
5년 미만	2,049	1,117	2,289	22년 미만	213	55,961	11,920
6년 미만	1,295	5,036	6,521	23년 미만	207	61,718	12,776
7년 미만	966	6,338	6,123	24년 미만	207	62,677	12,974
8년 미만	689	7,957	5,483	25년 미만	203	64,344	13,062
9년 미만	825	11,357	9,369	26년 미만	231	71,881	16,605
10년 미만	567	14,192	8,047	27년 미만	213	76,434	16,280

증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단위: 건, 천 원, 백만 원)

재직기간	지급 건수(A)	평균 지급액(B)	A × B	재직기간	지급 건수(A)	평균 지급액(B)	A × B
11년 미만	375	14,026	5,260	28년 미만	327	82,239	26,892
12년 미만	309	17,032	5,263	29년 미만	334	86,185	28,786
13년 미만	251	19,207	4,821	30년 미만	377	90,062	33,953
14년 미만	251	21,659	5,436	31년 미만	549	95,815	52,602
15년 미만	216	23,669	5,113	32년 미만	428	97,552	41,752
16년 미만	205	30,399	6,232	33년 미만	525	98,669	51,801
17년 미만	191	31,671	6,049	33년 이상	2,899	96,688	280,298
18년 미만	186	34,620	6,439	계	26,180	27,275	714,058

주: 1) 1년 이상 2년 미만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중 2025회계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무제표를 보면, 2021~2024회계연도는 퇴직수당급여(공단)분담금 내역사업 236억 3000만 원은 제외하고 퇴직수당급여 내역사업 액수만 퇴직수당 지급 액수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만 공단분담금을 포함한 세부사업 액수로 지급액이 기록되어 있다.

[퇴직수당급여 내역]

(단위: 백만 원,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금운용 계획	퇴직수당급여	699,006	771,300	803,963	774,426	737,689
	퇴직수당급여	675,376	747,669	780,333	750,796	714,059
	퇴직수당급여(공단)분담금	23,630	23,630	23,630	23,630	23,630
재무제표	퇴직수당 지급액	6,754	7,477	7,803	7,508	7,377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III)」(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 및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회계연도 이후 퇴직수당 결산에 관하여 사학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수당급여, 전년도 미수액, 당년도 선수액 등 지출 소요를 좌변에 두고, 공단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전년도 선수액, 당년도 미수액 등 재원을 우변에 두면 등식이 성립한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결산(2018~2025회계연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결산	2019결산	2020결산	2021결산
퇴직수당급여(A)	608,033	642,691	690,043	675,376
협력병원 패소 반환금(B)	0	0	0	440
전년도 미수액($X_n=W_{n-1}$)	163,642	186,360	173,284	215,695
당년도 선수액($Y_n=Z_{n+1}$)	0	0	0	0
퇴직수당공단부담금(C)	23,630	23,630	23,630	23,630
퇴직수당대학법인부담금(D)	121,207	121,356	136,119	140,096
국무조정실법인부담금(E)	0	4	42	55
국립대법인퇴직수당기금(F)	8,260	7,140	9,187	7,866
국립대법인기금 소진 선수금(G)	0	0	0	0
환수금, 대손충당금 등(H)	△2,268	1,859	3,854	2,636
당년도 국가부담금(I)	434,486	501,778	474,801	565,596
전년도 선수액($Z_n=Y_{n-1}$)	0	0	0	0
당년도 미수액($W_n=X_{n+1}$)	186,360	173,284	215,695	151,631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2025결산
퇴직수당급여(A)	747,669	780,332	750,795	737,689
협력병원 패소 반환금(B)	0	0	0	0
전년도 미수액($X_n=W_{n-1}$)	151,631	95,798	14,026	0
당년도 선수액($Y_n=Z_{n+1}$)	0	0	68,306	146,733
퇴직수당공단부담금(C)	23,630	23,630	23,630	23,630
퇴직수당대학법인부담금(D)	160,195	172,224	175,469	173,295
국무조정실법인부담금(E)	39	41	68	28
국립대법인퇴직수당기금(F)	8,795	0	0	0
국립대법인기금 소진 선수금(G)	7,653	0	0	0
환수금, 대손충당금 등(H)	2,511	2,183	2,951	5,473
당년도 국가부담금(I)	600,677	664,028	631,009	613,689
전년도 선수액($Z_n=Y_{n-1}$)	0	0	0	68,306
당년도 미수액($W_n=X_{n+1}$)	95,798	14,026	0	0

주: 1. 산식: $A + B + X + Y = C + D + E + F + G + H + I + Z + W$

2. E: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법인부담금(국무조정실 부담)

3. H: 대손충당금, 잡손실은 좌변에 두어야 하나, 음수로 처리한 다음 환수금, 잡수입 등에 포함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등식에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은 재원으로서 우변에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에는 공단부담금이 퇴직수당급여에 더해져 있으므로, 좌변에도 사실상 기록된 셈이다. 그 결과 2027년도 국가부담금 예산 요구액에도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¹⁶⁾

16) 참고로 2021회계연도부터 퇴직수당급여 세부사업에 퇴직수당급여 공단부담금 내역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이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퇴직수당급여 국가부담금을 산정한 자료를 보면,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급여 총액을 실지급액(7,140억 5,900만 원)이 아니라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세부사업 집행액(7,376억 8,9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세부사업 집행액에서 공단부담, 법인부담금 등을 차감하여 국가부담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산정]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결산	2025결산	2026재추정	2027요구
퇴직수당급여(A)	750,795	737,689	751,941	781,097
퇴직수당 공단부담금(B)	23,630	23,630	23,630	23,630
퇴직수당 대학법인부담금(C)	175,469	173,295	181,387	188,422
퇴직수당 국무조정실 법인부담금(D)	68	28	48	49
환수금 등(E)	2,951	5,473	0	0
당년도 소요액(F=A-B-C-D-E)	548,678	535,262	546,876	568,996
전년도 선수액(G)	△14,026	68,306	146,733	43,852
국가부담금 총 소요액(H=F-G)	562,704	466,956	400,143	525,144
당년도 예산액(I)	631,009	613,689	443,995	525,144
당년도 선수액(I-H)	68,306	146,733	43,852	0

주: 1. 퇴직수당 국무조정실 법인부담금(D)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2. 전년도/당년도 선수액의 값이 음수인 경우, 전년도/당년도 미수액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와 같이 산정하면 실제 퇴직수당 지급액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퇴직수당 실지급액에서 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 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위 표에서 퇴직수당급여(A)는 실지급액인 7,140억 5,900만 원이어야 한다. 즉, 위 표와 같이 퇴직수당급여 세부사업 집행액(7,376억 8,900만 원)을 사용한다면 공단부담금을 2번 차감해야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위 2025회계연도 결산 당년도 선수액은 1,703억 6,200만 원이다. 따라서 2027년도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예산 요구액은 위 표보다 23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015억 1,400만 원이 된다.

2025회계연도 퇴직수당 국가부담금의 선수액이 실제보다 236억 3,0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는바, 2025회계연도 사학연금 재무결산의 부채가 236억 3,0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즉, 2025회계연도에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고, 국가부담금 잔액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공단부담금 236억 3,000만 원만큼 과소 계상한 잘못이 있는바,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 시 국

가부담금에서 23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별도의 사업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기관으로 모든 공단의 사업은 기금사업임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기금과 공단의 회계를 구분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재정 현실에 맞추어 법 문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모든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가재정 사업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등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즉, 공단은 기금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연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은 공단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17)의 공단의 업무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기금 회계는 분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단의 운영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영비에서 전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경우 공단과 기금의 재정이 분리된 것을 전제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재정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 예로 공단의 수입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고,¹⁸⁾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 가. 부담금
 -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 다. 그 밖의 수입금

정하고 있다.19) 이는 공단의 특정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적립금 등으로 마련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공단과 기금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퇴직수당공단부담금20)의 경우에도 공단의 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마치 공단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착시를 주고 있다. 해당 법 문언의 연혁을 살펴보면 공단은 1974년부터 설립되어 연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연금제도가 2000년부터 국가 기금화되면서 공단과 기금의 분리를 전제로 공단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공단과 기금의 분리 관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사항」

법률 제5068호 1995. 12. 29. 일부개정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23조 (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공단의 수입·지출) ①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제24조 (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 동〉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기금은 연금회계-기금회계-위탁회계로 구분되고, 법 제23조에 따른 공단의 수입-지출은 '연금회계'에 한정되어 기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설명은 회계 실체에는 부합하나 법 문언상 '공단'이 연금회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단 기금구조: 회계(특계)별 구분]

연금회계	기금회계	위탁회계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퇴직수당, 국립대법인	자금운용사업, 대여사업, 나주회관, 서울회관, 대전오류, 대전둔산, 부산회관	국고위탁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공단의 수입-지출을 매 회계연도 별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법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나, 공단과 기금의 회계가 분리된 것과 같은 오인을 주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정 현실과 법문언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¹⁾

21)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기금, 근로복지기금 등 유사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관련 법령에서도 분리 기술하는 법문언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부처 단독의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

1

현황

가.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82.1%인 9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7,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342	10,342	11,191	9,184	1,032	976	82.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자산은 31억 5,800만 원, 부채는 0 원으로 순자산은 31억 5,800만 원이다.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성된다. 일반유형자산은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신규 취득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증가하고, 감가상각으로 인해 2억 200만 원 감소하였다. 무형자산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 등

으로 전년 대비 3억 4,200만 원 증가하였다. 기타자산은 선급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158	3,063	95	3.1
Ⅰ. 유·무형자산	1,440	1,171	269	23.0
Ⅱ. 기타자산	1,718	1,892	△174	△9.2
부 채	0	0	0	0.0
순 자 산	3,158	3,063	95	3.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 96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재정수입(수익)은 없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8억 6,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운영비 증가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은 교육행정지원 1개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604	8,741	863	9.9
가. 프로그램 총원가	9,604	8,741	863	9.9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Ⅱ. 관리운영비	0	0	0	0.0
Ⅲ. 비배분비용	0	0	0	0.0
Ⅳ. 비배분수익	0	0	0	0.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604	8,741	863	9.9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9,604	8,741	863	9.9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0억 6,300만 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31억 5,800만 원으로 기초 대비 9,500만 원(3.1%)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3,063	1,969	1,094	55.6
II. 재정운영결과	9,604	8,741	863	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699	9,835	△136	△1.4
IV. 조항목	0	0	0	0.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158	3,063	95	3.1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3억 원이 감액(49억 1,700만 원→46억 1,700만 원)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98억 1,500만원이며, 3,400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7.2%인 2,965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435억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7,390	107,390	107,390	158,923	133,302	25,621	0	83.9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21,079	121,079	121,079	143,564	137,147	6,417	0	95.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346	21,346	21,346	37,604	26,062	11,542	0	69.3
합계	249,815	249,815	249,815	340,091	296,511	43,580	0	87.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552억 1,500만원이며, 이 중 95.8%인 3조 9,81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537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99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28,191	3,417,400	3,511,314	3,409,253	42,678	59,383	97.1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20,079	121,079	136,290	116,334	9,186	10,770	8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6,106	506,106	507,611	456,008	1,846	49,758	89.8
합계	3,913,376	4,044,675	4,155,215	3,981,595	53,710	119,910	95.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5조 5,131억 8,200만원이며, 5조 9,497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2%인 5조 9,048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 449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77,659	581,159	581,159	530,040	529,336	703	0	99.9
영화발전기금	93,692	118,861	118,861	102,521	102,198	323	0	99.7
지역신문발전기금	10,018	10,018	10,018	17,789	17,697	91	0	99.5
언론진흥기금	50,757	50,757	50,757	64,074	63,712	362	0	99.4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181	1,714,181	1,714,181	2,267,171	2,263,546	3,626	0	99.8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194	3,038,206	3,038,206	2,968,185	2,928,370	39,815	0	98.7
합계	5,483,501	5,513,182	5,513,182	5,949,780	5,904,859	44,920	0	9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5조 5,131억 8,200만원으로, 계획현액 5조 5,258억 1,700만원 중 90.5%인 4조 9,981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9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77,659	581,159	590,740	529,336	4,770	12,858	89.6
영화발전기금	93,692	118,861	119,905	102,198	857	4,163	85.2
지역신문발전기금	10,018	10,018	10,018	13,026	0	110	130.0
언론진흥기금	50,757	50,757	50,757	82,459	0	366	162.5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181	1,714,181	1,714,543	1,342,722	493	2,530	78.3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194	3,038,206	3,039,855	2,928,370	348	60,910	96.3
합계	5,483,501	5,513,182	5,525,817	4,998,112	6,468	80,937	9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405억 1,800만원(6.0%)이 감소한 3조 7,73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477억원 6,200만원(6.2%)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00,193	132,307	132,307	161,879	29,572	△38,314
기금	3,821,265	3,853,238	3,881,907	3,611,817	△270,090	△209,448
합계	4,021,458	3,985,545	4,014,214	3,773,696	△240,518	△247,76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195억 800만원 (1.7%)이 감소한 7조 1,22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741억원 1,800만원(5.5%)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563,105	3,771,853	3,896,152	3,838,386	△57,766	275,281
기금	3,185,216	3,295,363	3,345,795	3,284,053	△61,742	98,837
합계	6,748,321	7,067,216	7,241,947	7,122,439	△119,508	374,11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산은 20조 1,950억 4500만원, 부채는 2조 3,379억 7,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조 8,570억 7,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2조 8,781억 5,800만원, 유무형자산 7조 2,921억 7,000만원, 기타자산 247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3,562억 원 (7.2%)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증권 및 정부출자금 등이 증가하여 금융자산이 1조 2,273억 원 증가(10.5%)하였고,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증가하여 유·무형자산이 1,302억 원 증가(1.8%)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조 3,261억 3,100만원, 총당부채 87억 600만원, 기타부채 31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523억 원(-6.1%) 감소하였다. 이는 차입금의 감소 등으로 차입부채가 1,529억 원 감소(-6.2%)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0,195,045	18,838,798	1,356,248	7.2
Ⅰ. 금융자산	12,878,158	11,650,771	1,227,387	10.5
Ⅱ. 유무형자산	7,292,170	7,161,907	130,264	1.8
Ⅲ. 기타자산	24,717	26,120	△1,403	△5.4
부 채	2,337,972	2,490,349	△152,377	△6.1
Ⅰ. 차입부채	2,326,131	2,479,080	△152,949	△6.2
Ⅱ. 총당부채	8,706	9,269	△563	△6.1
Ⅲ. 기타부채	3,135	2,000	1,135	56.7
순 자 산	17,857,073	16,348,449	1,508,624	9.2
Ⅰ. 기본순자산	9,153,685	8,367,469	786,217	9.4
Ⅱ. 적립금 및 잉여금	4,922,862	4,558,879	363,983	8.0
Ⅲ. 순자산 조정	3,780,526	3,442,102	338,425	1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6,263억 8,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5조 2,236억 5,600만원, 관리운영비 4,263억 100만원, 비배분비용 858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716억 9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8,378억 4,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4,759억 원(9.5%) 증가한 5조 4,642억 2,9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중 국제문화홍보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 대비 1,269억 원 증가(121.5%)하는 등 4,678억 원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리운영비가 2,251억 원 증가(5.6%)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3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6,563억 원)과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프로그램(4,78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171억 원, 경비 1,55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843억 원, 기타국가운영수익 1,14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5,223,656	4,755,867	467,789	9.8
II. 관리운영비	426,301	403,795	22,507	5.6
III. 비배분비용	85,880	107,188	△21,307	△19.9
IV. 비배분수익	271,609	278,497	△6,888	△2.5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5,464,229	4,988,353	475,876	9.5
VI. 비교환수익 등	2,837,845	2,917,805	△79,961	△2.7
VII. 재정운영결과(V-VI)	2,626,384	2,070,547	555,837	2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6조 3,484억 4,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조 8,570억 7,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5,086억 원(9.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3조 7,766억 원, 조정항목이 3,584억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2조 6,264억 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조 436억 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조 6,702억 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584억, 자산재평가이익 189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6,348,449	14,689,855	1,658,594	11.3
II. 재정운영결과	2,626,384	2,070,547	555,837	26.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776,584	3,476,275	300,309	8.6
IV. 조정항목	358,425	252,866	105,619	41.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7,857,073	16,348,449	1,508,624	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050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75억원 각각 전출되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7억원 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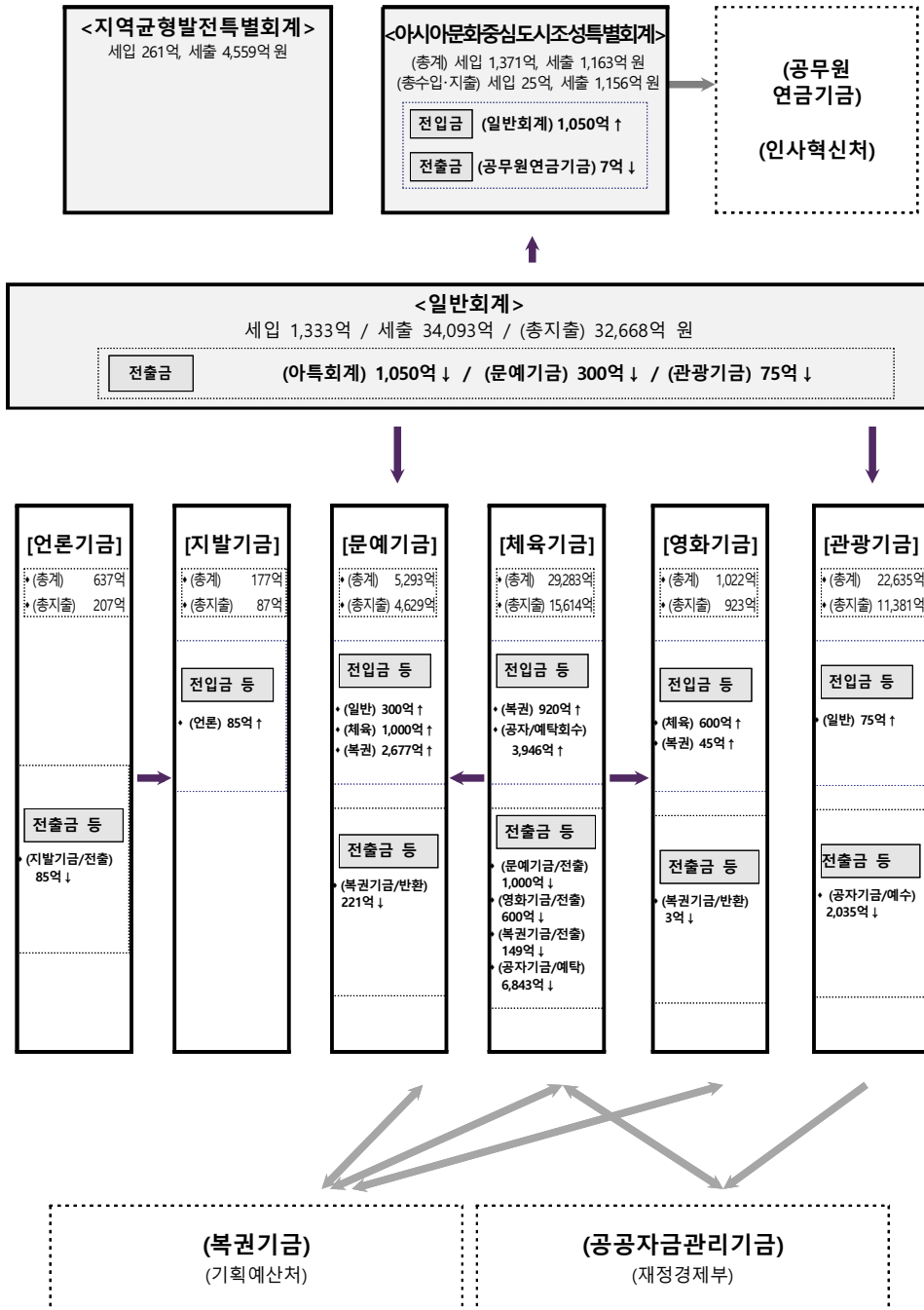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원금 1,500억원과 예수금이자 535억원을 상환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2,677억원을 각각 전입받고 복권기금으로 221억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20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 사업 잔액 149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3,6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346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843억원을 예탁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6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45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 사업 잔액 3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85억원을 전입받았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KTV 운영 사업, ②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 ③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등이 있다.

KTV 운영 사업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74억원이 감액(293억원→219억원)되었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01억원이 감액(701억원→600억원)되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투자여력 등을 감안하여 250억원이 감액(3,200억원→2,950억원)되었다.¹⁾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관련 국제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경기장의 사업 대상지를 사업부지가 우선 확보된 자체단체에 선정하도록 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²⁾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2)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예술 분야 육성, 인문·전통문화·독서·출판 진흥, 국제문화교류 확대 등 **K-컬처의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 확보**, ② K-콘텐츠의 파급효과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 관광콘텐츠 다변화,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③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 균형발전 지원,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 향유 지원 확대 등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과 대규모 이월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집중 교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수원국의 정치·행정적 특성 및 기후 등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승인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이 3개월 가까이 소요되면서 예술인들이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활동증명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연단체의 소재지 및 공연 개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원단체 및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이용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 예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다각화 및 밀착형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2025년 불용액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예산 과소 편성

가. 현황³⁾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총 2,965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33억 200만원, 아시아문화중심 도시특별회계 1,371억 4,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억 6,2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대비 수납률 (B/A)
일반회계	107,390	107,390	158,923	133,302	25,621	-	124.1
아시아문화중심 도시특별회계	121,079	121,079	143,564	137,147	6,417	-	113.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346	21,346	37,604	26,062	11,542	-	122.1
합 계	249,815	249,815	340,091	296,511	43,580	-	11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고 2025년에도 수납액이 2,965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2,498억 1,500만원을 466억 9,600만원 상회(18.7%)하고 있다. 2026년 예산은 세입 예산을 증액하여 연례적인 과소 편성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일부 추가적인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경우 2022년 및 2023년에는 과소수납되었으나, 2024년 수납액이 25억 3,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86.8%였고, 2025년에도 수납액이 25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76.1%를 기록하였다.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발급 수수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사업 수익금 등으로, 2024년에 수납액이 급증한 것은 이전까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하였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등 관련 수수료(2024년 24억 8,500만원)를 2024년부터 동 세목으로 수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¹⁾

그런데 면허료 및 수수료의 2026년 예산도 체육지도자 관련 수수료 수납액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 5월 기준으로 수납된 12억 8,4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납된 체육지도자 수수료만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에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 수수료가 상반기 수납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수납될 예정으로, 올해에도 초과수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체육지도자 관련 수수료를 고려하여 동 세목 예산을 적정 규모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까지는 해당 수수료를 면허료 및 수수료로 수납하다가 2021~2023회계연도에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문체위 검토보고서 지적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다시 면허료 및 수수료로 수납하였다.

[2022~2026년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2	843	843	51	51	-	-	6.0
2023	857	857	49	49	-	-	5.7
2024	883	883	2,533	2,533	-	-	286.8
2025	909	909	2,510	2,510	-	-	276.1
2026.5.	937	937	1,284	1,284	-	-	13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산출 근거
2024	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3,000원 × 1,650회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5,000원 × 600회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수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8,000원 × 40,800명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30,000원 × 1,077명 - 계수조정: 85.8백만원
2025	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3,000원 × 1,650회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5,000원 × 600회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수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8,000원 × 46,940명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30,000원 × 1,110명
2026	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3,000원 × 1,750회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5,000원 × 600회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수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18,000원 × 48,350명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30,000원 × 1,145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의 경우 전년도세계잉여금이 매년 초과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5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407.8%였다.

[2022~202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2	10,845	10,845	31,327	31,327	-	-	288.9
2023	21,070	21,070	39,735	39,735	-	-	188.6
2024	15,102	15,102	27,332	27,332	-	-	180.9
2025	7,266	7,266	29,632	29,632	-	-	407.8
2026.5. ¹⁾	11,563	11,563	-	-	-	-	-

주: 1)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매년 하반기 징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상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결산상 잉여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특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고 있다.²⁾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아특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은 “순잉여(전전년도 세계잉여금 결산-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초과수입 전망+지출불용 전망”와 같은 산출식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데, 전망 대비 실제 초과수입 및 지출불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특회계는 매년 세입이 초과수납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결산상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고, 이에 다시 전년도세계잉여금이 초과수납되어 세입이 연례적으로 초과수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입 예산의 과소 계상은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비용 측면에서도 세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확대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특회계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는바 2025년에도 1,050억원을 전입받은 점을 감안하면, 당초에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였다면 그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채조달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이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세입 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가. 현황³⁾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¹⁾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과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334억 4,300만원 중 32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종교문화시설 건립	38,914	-	△5,471	33,443	32,744	-	699	40,704	40,704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질행실적이 저조한바 향후 사업계획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정액)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 30% 이내)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지 매입, 시설 설계 및 공사 등으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연도별 예산 실적행률을 보면 2021년 69.0%, 2022년 61.8%, 2023년 52.5%, 2024년 47.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5년에도 50.6%에 그쳐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2025년의 경우 10.27 법난기념관 건립 등 38개 내역사업에 38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처의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9억 2,900만원 중 실적행액은 272억 7,90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액 증가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이월액 규모가 2023년 113억 8,900만원, 2024년 207억 9,300만원, 2025년에는 245억 5,000만원으로 미집행액 대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어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1	12,411	12,411	10,967	10,967	10,619	21,586	14,866	6,667	53	69.0
2022	9,160	9,160	6,968	6,968	6,667	13,635	8,432	5,040	163	61.8
2023	26,026	26,026	19,440	19,440	5,040	24,480	12,853	11,389	238	52.5
2024	33,487	33,487	29,777	29,777	11,389	41,166	20,084	20,793	289	47.8
2025	38,914	38,914	32,744	32,744	21,185	53,929	27,279	24,550	2,100	5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실적행내역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38개 내역사업 중 28개 내역사업의 실적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였다.

집행 부진 원인은 대부분 ① 사전행정절차 지연(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건축 인·허가 등), ② 설계 변경 및 설계 지연, ③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폐지 등으로 유형화되며, 특히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시행주체			2026 예산	실집행 부진/ 사업추진 지연 사유	2025년 신규사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2,301	656	28.5	546	BF ¹⁾ 심사, 국유 재산 매각절차 등으로 지연	
익산 나바위성당 천주교문화체험관	2,820	1,641	58.2	1,140	건축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체험관	2,087	1,336	64.0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자원화	441	289	65.5	-	토지매입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	
울릉도 회당 명상문화 체험관	1,200	-	-	-	사업폐지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700	-	-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제주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1,500	-	-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120	-	-	700	건축 인·허가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포항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1,102	496	45.0	1,02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영광 불갑사 전통문화체험관	1,120	584	52.1	-	설계 지연	
청주 능인정사 MZ복합문화센터	237	24	10.1	213	건축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 지연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1,448	23	1.6	-	용도변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경북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883	-	-	600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3,000	96	3.2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담양 보리암 국제명상센터	1,515	300	19.8	3,900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경남 창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255	-	-	-	사업폐지	
경남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750	311	41.5	-	설계 지연	
천도교 문화역사관	-	-	-	-	사업주체 간 협의 지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시행주체			2026 예산	실집행 부진/ 사업추진 지연 사유	2025년 신규사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경북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483	19	3.9	11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 지연	
경기 평택 수도사 종교문화체험관	431	260	60.3	-	시공업체 재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	
해미국제성지순례 방문자센터	1,559	752	48.2	-	설계공모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2,147	1,497	69.7	2,658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645	-	-	900	사업 폐지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1,269	153	12.0	1,855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재정투자 심사 재심사로 사업 지연	
대구 달서구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900	494	54.9	-	설계 지연	
용인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2,400	925	38.5	425	설계 지연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500	-	-	3,244	설계 지연	○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600	58	9.7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으로 지연	○

주: 1) BF(Barrier Free) 심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신규 내역사업의 경우, 3개 내역사업 중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등 2개 내역사업이 설계 지연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최근 3년간 일부 내역 사업은 지방비·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이 사업주체 내부 이견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울릉 회당 명상문화체험관 및 창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역시 자부담 확보 곤란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유사한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종교문화시설건립 보조사업 포기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사업명	지원금액	포기사유
2023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건립	300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2,850	사업주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중단
2024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	2,500	사업주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중단
	신안 불교문화유산순례길 조성	600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불가
	광주 원효사 명상치유센터 건립	1,000	명상센터 건립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
2025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855	사업주체 내부이건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울릉 회당 명상문화체험관 건립	1,400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주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중단
	창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255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주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중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상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충족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결과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재원 미확보, 사업포기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원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지원을 위한 중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 선정 시 부지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지방비 및 민간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건축 인·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부지 및 자부담 확보 미흡, 사업주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기준상 요구되는 사전 준비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건과 재원 조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수준, 사업 주체의 추진 역량 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여 실질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보조사업 운용지침]

- 지원 대상
 -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 국민 정신문화 함양과 국제 교류에 기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주요 종단이 중점 추진하는 대표시설 우선 고려(종단 추천)
 -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종교별(7대 종교 기준)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1개 지원 원칙*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부지 확보 등)**
 -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원 범위
 -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30%범위 내(최대 60억원)까지 지원
 - * 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
 - 부지매입비 제외, 설계 이전의 타당성 조사비용, 기본계획 수립비 등은 지원 불가
 - 민간 자부담률 10% 이상
- 지원 제외
 - 종교의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 특정 종교인* 성역화 사업
 - * 사후 100년 이상 역사적 인물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은 지원 가능
 - 템플스테이(신축, 개보수) 등 타 지원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 **지방비 및 자부담비 미확보 사업**
 - 종교편향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종교 위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 * 단, 부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별도 검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동 사업은 2025년도 실질행률이 70% 미만인 28개 내역사업 중 22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 중 21개 내역사업이 4분기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실집행률 70% 미만 내역사업 중 예산현액을 전액 교부한 사업의 분기별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률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1,600	1,600	-	1,120	-	480	28.5
익산 나바위성당 천주교문화체험관	1,410	1,410	-	987	-	423	58.2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체험관	1,500	1,500	1,050	-	450	-	64.0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300	300	-	-	-	300	0.0
제주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1,200	1,200	-	-	-	1,200	0.0
포항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1,026	1,026	-	718.2	-	307.8	45.0
영광 불갑사 전통문화체험관	1,120	1,120	-	-	-	1,120	52.1
청주 능인정사 MZ복합문화센터	213	213	-	-	149.1	63.9	10.1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1,425	1,425	-	-	997.5	427.5	1.6
경북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300	300	-	210	-	90	0.0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2,350	2,350	-	-	1,200	1,150	3.2
담양 보리암 국제명상센터	1,515	1,515	-	-	-	1,515	19.8
경남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550	550	385	-	-	165	41.5
경북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463	463	-	324.1	-	138.9	3.9
경기 평택 수도사 종교문화체험관	420	420	-	294	-	126	60.3
해미국제성지순례방문자센터	810	810	567	-	-	243	48.2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2,147	2,147	-	1,503	-	644	69.7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1,230	1,230	-	-	861	369	12.0
대구 달서구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750	750	525	-	-	225	54.9
용인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1,475	1,475	-	-	1,032.5	442.5	38.5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500	500	-	350	-	150	0.0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600	600	-	420	-	180	9.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²⁾하고 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 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³⁾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 체의 비용 부담 확보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노력하고,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 진 독려 등 예산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95~9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 료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아울 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실제 공정에 맞춘 보조금 적기 분할 교부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가. 현황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¹⁾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해당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0억 5,100만원 중 2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51	-	-	2,051	2,017	-	34	1,263	1,263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과 대규모 이월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집중 교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공정에 맞추어 보조금을 적기에 분할 교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131-303

동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²⁾ 「도서관법」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³⁾ 등의 법령에 따라 한국도서관문화재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의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집행률(교부 기준)은 매년 90%를 상회하여 지표상으로는 양호해 보이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대규모 이월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 17억 9,6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9.6%에 불과하다. 이후 2023년 68.7%, 2024년 57.8%, 2025년 63.8%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집행 부진에 따라 2022년에는 17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4년 12억 4,200만원, 2025년 11억 7,300만원 등 매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회계연도는 전년도 이월액(12억 4,200만 원)이 당해 연도 본예산(20억 5,100만 원)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월금이 누적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서관법」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2	1,796	1,796	1,764	1,754	183	1,937	187	1,749	1	9.6
2023	825	825	799	780	1,749	2,529	1,738	748	43	68.7
2024	2,279	2,279	2,244	2,234	748	2,982	1,725	1,242	15	57.8
2025	2,051	2,051	2,017	2,006	1,242	3,248	2,073	1,173	2	6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이와 같이 실적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연말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교부하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2022년에는 전체 교부금 17억 5,400만원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2월 8일에 일시 교부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차~3차 교부가 전부 4분기에 이루어졌고, 2024년과 2025년도에도 4분기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최근 4년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차 교부		2차 교부		3차 교부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2022	1,796	1,754	2022.12.8	1,754	-	-	-	-
2023	825	780	2023.10.6	158	2023.11.8	210	2023.12.6	412
2024	2,279	2,234	2024.8.20	493	2024.9.27	702	2024.11.25	1,039
2025	2,051	2,006	2025.8.8	1,003	2025.11.6	1,003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해야 하며, 자금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기까지 교부를 완료하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

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95~96.

그러나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예산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형식적인 집행률만 높이고 보조사업자 차원에서는 대규모 이월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연말에 집중되는 보조금 교부 방식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게 하거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한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침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공정 단계에 맞추어 보조금을 적기에 분할 교부하고, 4분기 이후에 교부되는 예산이 이월금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수원국의 정치·행정적 특성 및 기후 등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2023년 홍수 피해로 인해 신축 부지 결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신축 부지 사용허가 등 행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축 부지 확보(2023년 10월), 설계 공모(당초 2023년 6월 → 12월로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순연되었다.

2024년에는 몽골 총선(후탈선거)에 따른 관계 부처 기관장 및 담당자 전원 변경 등 수원국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5년에는 몽골 특유의 혹한기 기후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시공 불가 및 차기 수원국 조사 추가 시행 등으로 인해 시공공사 일정이 지연되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몽골 울란바토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당초 추진일정 대비 실제 추진경과]

당초 추진일정	실제 추진일정	추진경과
2019. 4.	2019. 4.	몽골 사업 제안
2019. 6. ~ 12.	2019. 6. ~ 12.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2020. 1.	2020. 1.	몽골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제출
2021.10.	2023. 5.	몽골 현지 조사 및 사업 추진 협의
	2023. 10.	도서관 신축 부지 확보
2023.6.	2023. 12.	신축설계 공모
	2024. 6.	몽골 건축인허가 완료
2023.11.	2024. 9. 24.	협의를사록(RD) 체결
	2024. 10.	실시설계 완료
2023.10.	2024. 12.	몽골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25. 3. 26.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 별관 착공식
2023.11.	2025. 6. ~ 10.	신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사 선정
	2025. 12.	별관 건축 공사 완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로 인해 당초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은 2026년 11월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 또한 63억 2,800만원에서 64억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몽골 울란바토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당초계획 및 변경계획]

구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사업 종료일	2025. 12.	2026. 11.
총사업비	6,328백만원	6,418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연례적인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실집행 부진은 수원국의 특수한 현지 사정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리스크 관리가 다소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정치적 일정 및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 특성과 기후 특성에 따른 실제 공사 가능 기간 등 물리적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고려한 적정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 편성 시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조성지원 도서관 건립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으로, 이는 문체부의 단순 집행액(사업시행기관 교부액)이므로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 현황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를 2024년 변경하여 조성지원 도서관 건립 공정률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외 공공(작은) 도서관 조성수(개)	목표	135	136	신규 성과지표로 대체			-	n+L (전년도 누적 도서관 수 n + 현년도 도서관 수 L)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34	135						
	달성도	-	-						
조성지원 도서관 건립 공정률(%)	목표	신규	신규	49	81	100	총 사업비 및 사업 종료 시점 감안한 목표 설정	총 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집행액) 비율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49	81	-			
	달성도	-	-	100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해당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을 공정률 실적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지표의 누적투자액 값은 문체부에서 집행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기관의 실제 공정률이 아닌 문체부의 단순 집행액(교부액)을 성과지표 실적으로 측정한 상황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실집행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실적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기준으로는 성과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 보조금 교부액을 성과지표 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과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연과 상관 없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하게 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 단계에서의 집행기준이 아닌 사업시행기관 단계에서의 실적행 현황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¹⁾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직업·창작역량 강화, 권리보장 환경 조성 및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827억 5,000만원 중 826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051	-	-	2,051	2,017	-	34	1,263	1,263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3-302

4-1. 예술활동증명 사업: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예술활동증명 사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예술활동증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8,507	-	△20	78,487	78,487	-	72	89,022	89,722
창작역량강화	66,503	-	-	66,503	66,503	-	-	66,479	67,179
예술활동증명	1,400	-	-	1,400	1,400	-	-	2,776	3,47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²⁾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이다.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예술활동증명 시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 및 혜택]

(단위: 백만원)

사업	2025 예산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60,000	1인당 창작 준비금 300만원 지원(격년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8,000	생활안정자금(최대700만원) 및 전세자금(최대 1억원) 지원
예술로(路)	5,930	기업-기관 간 협업 기회 제공 및 예술인 활동비, 운영비 지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3,600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 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 만큼 정부지원금 지원(1인 최대 240만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1,450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600	국민연금 보험료 50%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500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납부 보험료의 50% 환급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581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 센터 2개소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예술 분야³⁾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등으로 본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예술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행정심의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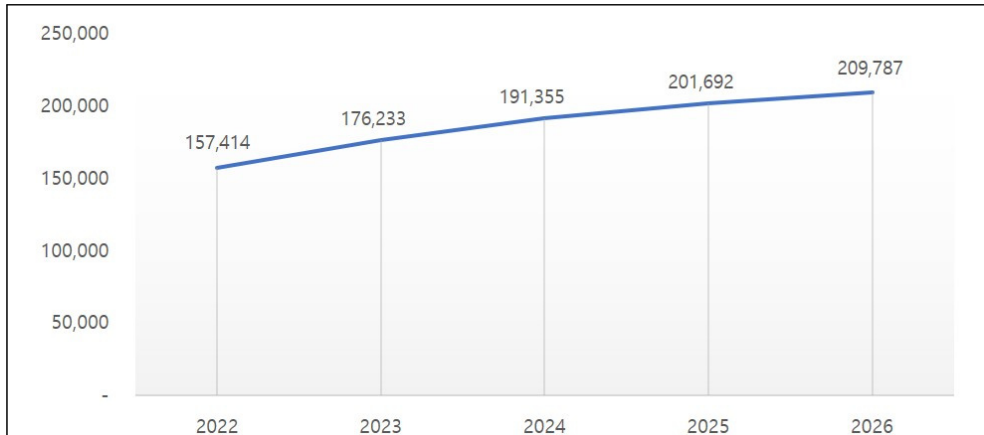
행정심의회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회에 부합한 자료에 한해 신청내용을 검토, 결정하는 과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증명할 수 있는 신청방법과 분야별로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상이하게 설정되고,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예술활동준비금의 경우 공고일) 기준 유효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3)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만여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6년 4월 현재 누적 인원 209,787명에 이르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누적)]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통계(2026. 4. 7.)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나. 분석의견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승인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이 3개월 가까이 소요되면서 예술인들이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활동증명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최근 7년간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승인건수,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신청건수의 급증에 비해 승인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26,866건이던 신청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66,598건)과 2021년(69,194건)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2025년에도 66,456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승인률은 2022년 70.4%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여 2024년 31.6%, 2025년 31.0%로 지속적인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심의 적체로 인하여 평균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주에 불과했던 평균 처리기간은 코로나 19 기간을 거치며 누적된 신청 건수로 인해 2022년 19주까지 늘어났으며, 2025년 현재에도 3개월에 가까운 12주가 소요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수 및 처리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평균 처리기간
2019	26,866	18,053	67.2	3주
2020	66,598	45,229	67.9	7주
2021	69,194	42,611	61.6	13주
2022	60,703	42,754	70.4	19주
2023	41,032	19,112	46.6	15주
2024	50,322	15,926	31.6	11주
2025	66,456	20,609	31.0	12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나 창작준비금 지원 등 생계 및 창작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⁴⁾하여 한국예술인복지

4)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던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역문화재단 등 협력 협·단체와 협약을 통해 인천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을 1차 행정심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광역문화재단에서 1차 심의를 분담하고 난 최근 3년간도 평균 처리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승인률은 30~40%로 도리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6년의 경우,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의 신청건수만 43,419건으로, 최근 들어 예술활동증명의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하여 '예술활동증명 심사가 지체되어 불편함이 있으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정 요구한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6)에 따르면, 광역문화재단 등 협·단체는 예술활동증명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 등을 사전 검증한 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고 있으나, 심의기능을 포함한 실질적인 예술활동증명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이 수행하고 있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이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청 폭증을 우려하여 인건비 및 심의비 등 예술활동증명 예산 7억원이 증액됨

6)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지 않고 관련 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현재 심의위원은 15개 분야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일반음악	대중음악
인원	12	14	12	5	4	4	8	10
구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방송	공연		
인원	6	10	13	7	7	3	6	
합계	1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광역문화재단 등은 1차 행정심의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최종 심의위원회 운영은 여전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을 광역문화재단 등으로 넓혀 지역에서 접수된 건은 지역문화재단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간 6만 건이 넘는 신청을 감당하기에 현재의 15개 분야 121명의 심의위원 수가 부족해 보이므로, 지역별 심의위원회 신설과 연계하여 심의위원 인력 풀(Pool)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만성적인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술인들이 적시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2.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의 단계적 확충 필요

가. 현황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8,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8,507	-	△20	78,487	78,487	-	72	89,022	89,722
직업역량강화	6,511	-	-	6,511	6,511	-	-	7,570	7,570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581	-	-	581	581	-	-	872	872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예술인 자녀돌봄센터가 서울에만 편중되어 전체 예술인의 64%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의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서울 종로구(대학로)와 마포구(망원동) 두 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무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운영하며, 일상생활 돌봄과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요]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봄센터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15-4
시설규모	92.5㎡ (방2, 주방1, 화장실1)	178.5㎡ (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인력	위탁단체 센터장 및 담당자 1명, 돌봄교사 2인, 주말돌봄교사 1인	위탁단체 센터장 및 담당자 1명, 돌봄교사 2인, 주말돌봄교사 1인
운영시간	· 화요일~금요일 13시~22(23)시 · 토요일 (9)11시~22(23)시 · 일요일 (9)11시~20시 ※사전예약시 토요일~일요일 9시~11시, 화요일~토요일 22시~23시 이용 가능 ※월요일 휴무	· 화요일~일요일 (9)11시~20(22)시 ※사전예약시 9시~11시, 20시~22시 이용 가능 ※월요일 휴무
프로그램	· 일상생활 돌봄, 식사 및 간식 제공 · 주 1회 이상 예술놀이 프로그램 진행	
이용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자녀 24개월 이상~10세 - 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3세까지 이용 가능	
정원	· 1일 이용 정원: 최대 25명 - 48개월 미만 유아의 당일 이용 인원에 따라 20명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1일 최대 이용 인원수를 20명~25명으로 조정하여 운영	
위탁단체	서울아가야 사회적협동조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초 이용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전화상담 및 사전 방문 예약 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회원 등록이 완료된다.

이후 운영시간 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돌봄 서비스 이용은 운영시간 내 시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시간제 일시 돌봄이다.

최근 5년간 이용현황은 연간 1,300여건에서 3,000여건 사이로, 이용일수로 나누어보면 평균적으로는 1일 정원 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반디돌봄센터	1,361	2,416	2,033	1,791	1,902
예봄센터	1,979	3,009	2,286	2,734	2,68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의 요일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일에 비해 주말 이용 건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디돌봄센터의 경우 토요일(882건)과 일요일(514건)의 이용 건수가 한 해 전체 이용 건수(1,902건)의 약 73.4%를 차지하며, 예봄센터 역시 토요일(974건)과 일요일(748건)의 이용 건수가 전체(2,688건)의 약 64.1%에 달해 주말에 수요가 편중되어 있다. 특히 두 센터 모두 토요일의 이용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주말에 공연, 전시, 행사 등의 활동이 집중되는 예술계의 직업적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가 일반적인 평일 주간 중심의 기존 보육 시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주말 및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요일별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화	수	목	금	토	일
반디돌봄센터	71	116	153	166	882	514
예봄센터	236	223	239	268	974	7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09,934명 중 서울 지역 거주자가 75,469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경기 지역이 25.0%(52,477명)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 예술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64.0%에 달하는 134,465명의 예술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에서도 부산(5.2%), 대구(3.0), 경남(4.5%)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단위: 명, %)

지역	인원	비중	지역	인원	비중
서울	75,469	36.0	강원	4,605	2.2
부산	10,912	5.2	충북	3,885	1.9
대구	6,251	3.0	충남	4,277	2.0
인천	9,678	4.6	전북	6,649	3.2
광주	4,902	2.3	전남	4,847	2.3
대전	5,327	2.5	경북	4,038	1.9
울산	2,657	1.3	경남	9,531	4.5
세종	1,217	0.6	제주	3,212	1.5
경기	52,477	25.0	합계	209,934	100.0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통계(2026. 4. 8.)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가 모두 서울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에 예술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할 이상을 차지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들이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해당 정책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⁷⁾에 따르면,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에도 엄연히 예술 창작 현장이 존재하고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예술인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울에만 자녀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예술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당장 전국적인 확대가 어렵더라도, 주요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자녀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모든 예술인이 공평하게 돌봄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및 자율계정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지역자율)¹⁾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 문화향유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07억 2,100만원 중 16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20,721	-	-	20,721	16,374	-	4,347	13,605	13,605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본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준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을 부진 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자율계정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추진 되며, 2025년에는 신규 사업 5개 포함 총 16개 사업에 207억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51-302

최근 4년간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실적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실적집행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 2025년 실적집행률은 41.2%로 전년 대비 5.4%p 상승하며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158억 8,700만원)보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216억 3,300만원)이 더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2025년의 전년도 이월액(221억 4,200만원)이 당해연도 본예산(207억 2,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연례적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실적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2	12,023	12,023	8,623	8,623	14,618	23,241	7,863	13,342	2,036	33.8
2023	23,531	23,531	18,211	18,211	13,342	31,553	10,121	21,198	235	32.1
2024	31,315	31,315	16,423	16,423	21,198	37,621	13,456	20,585	3,580	35.8
2025	20,721	20,721	16,374	16,374	22,142	38,516	15,887	21,633	996	4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예산이 편성된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실적집행률 50% 미만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첫째,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국비가 전혀 투입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강원 속초시는 사업 타당성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최종 포기하였으며, 광주 본청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는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교부조차 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재정적 준비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 절차상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집행이 극히 부진한 지자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전남 여수시(1.1%) 영암군(1.0%)은 지방비 매칭 및 확보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늦어졌으며, 경기 안성시(3.7%)는 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으로 계획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 실적이 미미하다. 전남 신안군(23.6%)과 경기 본청(23.9%~24.5%) 역시 인가 승인이나 세부 내역 변경에 따른 행정 소요가 발생하며 집행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B)	실집행 부진 사유	2025년 신규사업
(광주, 본청) 상무소장 문화재청	2700	-	-	-	-	-	-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기간 소요	
(전남, 여수시) (구)미평역 문화예술시설	800	800	-	800	9	791	-	1.1	지방비 매칭 지연으로 공사 발주 지연	○
(전남, 신안군) (옛)동아시아 인권 평화 문화 창조촌 조성	500	500	-	500	118	382	-	23.6	행정절차 지연(군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
(전남, 영암군) (구)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700	700	-	700	7	693	-	1.0	지방비 확보 지연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기획심의 순연	○
(전남, 나주시) 옛 화남산업부지 아트스페이스	1000	-	-	-	-	-	-	-	매칭 지방비 미확보	
(경기, 본청)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650	650	238	298	713	225	-	23.9	사업세부내역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	
(경기, 본청) 경기창작캠퍼스 창작 기획공간 조성	810	810	799	169	394	1215	-	24.5	사업량 증가 및 행정절차 이행 필요	
(경기, 안성시) 안성라이프 스테이션	233	233	89	232	89	233	-	3.7	2026년 2월 공사 착공에 따른 집행부진	
(강원, 동해시) 무릉별유천치씨사당 유류공간문화재생	1500	1500	978	2478	324	2154	-	13.1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각종인허가 절차 필요	
(강원, 삼척시) 폐산업시설유류공간 문화재생	1750	1750	3487	5237	2495	2742	-	47.6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강원, 속초시) (옛)대포정수장 복합 문화기차공간 조성사업	647	-	-	-	-	-	-	-	사업포기	
(충남, 보령시) 거미·로봇·민화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3600	3600	1000	4600	282	4318	-	6.1	구조안전진단 결과, 전반적인 보수 보강 필요 (설계변경 필요)	
(충남, 공주시) 유구읍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1000	1000	-	1000	231	769	-	23.1	주민의견 수립 과정 지연	○
(경남, 밀양시) 문화예술플랫폼 미리미동국	1500	1500	-	1500	485	1015	-	32.3	석면물량 재조사, 철거 물량 증가, 철거에 따른 구조검토 필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각 사업들이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정 차질,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연 사유들은 사업 선정 시점에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준비 정도를 엄격히 검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지자체 보조사업 포기 내역을 보면,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타당성 검토 부실이 연례적인 사업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의 경우처럼 기본적 요건인 부지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하거나, 전남 여수시(정밀안전진단 E 등급 판정) 및 강원 원주시(대상 시설 철거 결정)와 같이 시설의 물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된다.

경기 부천시의 중앙투자심사 이행 한계나 강원 속초시의 재정 부담에 따른 포기 사례 등은 지자체의 행정절차 이행 한계, 재정 부담 등 지자체의 사전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처럼 준비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었다가 결국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 보조사업 포기 현황]

지자체	사업명	최초 편성연도	사업 중단연도	포기사유
경기 화성시	화성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누림터 조성	2020	2021	부지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
전북 전주시	문화공간, 완산병커 1973 조성	2021	2021	부지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
전남 여수시	폐철도역사 문화공간 조성	2022	2022	건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등급'으로, 리모델링 불가에 따라 사업포기
경기 부천시	부천 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	2022	2024	지자체의 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 이행 한계 등으로 사업 포기
강원 원주시	원주 아카데미극장 리모델링	2023	2023	지자체 사업 대상(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정에 따른 사업 포기
강원 속초시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2023	2025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 증액 재정부담으로 사업 포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속하는 사업이다. 지역지원 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각 부처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부처에서 그 집행 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자율계정 사업은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메뉴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편성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의견만을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며, 사업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제시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요구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이때 기획예산처는 미반영된 사업에 따른 사업내역 조정시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기본한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지자체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가 직접 적정성을 심사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지역 내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제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률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지방비 매칭 등 필수적인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예산에 무분별하게 반영됨에 따라 연례적인 불용과 대규모 이월, 나아가 사업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舊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하며,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실적 등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 시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대규모 이월, 불용 및 사업 포기와 같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예산 편성 및 심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실효성 있는 통제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재정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단위의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자율계정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¹⁾은 기존 광역관광자원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63억 9,800만원중 14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²⁾은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53억 7,900만원 중 14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³⁾은 남부권(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관광자원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관광개발 추진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88억 2,400만원 중 67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16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08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09

3)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15

[2025회계연도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²⁾	추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6,398	-	-	16,398	14,574	-	1,824	179,468	179,46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5,181	198	-	15,379	14,904	-	475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78,824	-	-	78,824	67,144	-	11,680		

주: 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6년부터 3개 세부사업(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특회계 지역자
율계정으로 이관 편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개요]

구분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사업기간	2017~2027년(11년간)	2019~2028년(10년간)	2024~2033년(10년간)
총사업비	4,624억원 (국비 1,951, 지방비 2,672)	5,125억원 (국비 2,096, 지방비 3,029)	3조 64억원 (국비 1조 3,265,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간 2,776)
대상지역	세종·충남·전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세부내역 사업	총 36개 (개발사업 25개, 진흥사업 11개)	총 39개 (개발사업 29개, 진흥사업 10개)	총 142개 (개발사업 109개, 진흥사업 33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세 사업 모두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최근 4년간 실적행 현황에 따르면, 세 사업 모두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2년 30.2%, 2023년 21.3%, 2024년 35.3% 등 30% 안팎의 저조한 실적행률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 이르러 50.0%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의 절반인 124억여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2022년(23.6%), 2023년(37.5%), 2024년(42.1%)로 실적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2025년에 57.0%로 실적행률이 상승했으나, 매년 200억 원에서 360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2023년도 예산에 선도사업으로 5개 사업이 반영되면서 신규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4년 38.2%의 실적행률을 기록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2025년에는 예산현액이 803억여 원으로 급증했음에도 실적행률은 오히려 27.2%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에만 전체 예산현액의 70%가 넘는 579억여 원의 막대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4년간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추경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B)
								예산 현액	집행액			
서부 내륙권	2022	27,633	25,733	25,733	23,778	49,511	14,964	25,733	7,558	24,826	9,721	30.2
	2023	21,307	18,807	18,807	24,826	43,633	9,285	18,807	1,540	28,434	5,914	21.3
	2024	19,653	18,857	18,857	28,434	47,291	16,690	18,857	5,606	24,474	6,127	35.3
	2025	16,398	14,574	14,574	24,474	39,048	22,591	14,574	9,860	12,417	4,041	57.8
충청 유교 문화권	2022	20,427	16,427	16,427	22,444	38,871	9,158	16,427	1,680	29,183	530	23.6
	2023	34,031	29,006	29,006	29,183	58,189	21,815	29,006	4,446	36,374	-	37.5
	2024	22,783	21,933	21,933	36,374	58,307	24,544	21,933	6,579	32,913	850	42.1
	2025	15,181	14,706	14,706	32,913	47,619	27,165	14,706	7,611	20,454	-	57.0
남부권	2023	5,500	-	-	-	-	-	-	-	-	-	-
	2024	27,778	21,414	21,414	-	21,414	8,181	21,414	8,181	13,233	-	38.2
	2025	78,824	67,144	67,144	13,233	80,377	21,854	67,144	14,329	57,864	659	2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실집행율이 70% 미만을 기록한 각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서부내륙권 5개, 충청유교문화권 12개, 남부권 42개의 내역사업이 심각한 집행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내역사업의 주요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의 구조적 지연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사전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지연: 대다수의 사업이 토지 수용재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착공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② 설계 및 사업계획의 빈번한 변경: 지자체 등 사업 추진 주체의 내부 검토 지연, 부지 위치 조정, 지역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다수 발생하여 공정이 순연되고 있다.

③ 부지 및 예산 확보 난항 등 물리적 한계: 국유지 매수 및 공유재산 협의 지연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는 사례가 잦으며, 일부

의 경우 하절기 호우로 인한 사업장 침수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변수도 전반적인 집행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집행부진 사유
서부 내륙 권 (5개)	충청남도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4,846	2,919	60.2	'25년 2월 공사실착공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공 정 조정으로 인한 지연
	충청남도	덕산온천휴양마을	6,847	4,431	64.7	'25년 7월 호우에 따른 사업장 침수로 공정 지연
	전라북도	음식관광창조타운	5,126	23	0.5	실시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중
	충청남도	호국문화체험단지	796	-	-	사업포기
	충청남도	성지혜움길	4,695	2,683	57.1	'25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 여 모객 및 여행프로그램 운영 시간 부족
충청 유교 문화 권 (12개)	충북 단양군	명승문화마을	3,626	1,573	43.4	실시설계 중
	충북 제천시	의병 창의마을	1,040	372	35.8	사전행정절차 지연 (토지 수용재결)
	충북 옥천군	옥야동천 유토피아	1,000	1	1.5	사전행정절차 지연 (토지 수용재결)
	충북 진천군	초평 책마을	2,649	1,600	60.4	건축공사 진행중
	충북 보은군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1,310	331	25.3	건축공사 중
	충북 보령시	토정비결 체험관	3,075	1,743	56.7	건축공사 진행중
	충남 아산시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950	150	15.8	실시설계 중
	충남 서산시	밤하늘산책원	1,286	3	0.2	사전행정절차 지연 (토지 수용재결)
	충남 계룡시	사계문화 체험관	500	322	64.4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충남 당진시	여민동락 역사누리	2,828	1,300	46.0	사업변경 및 공사 진행중
	충남 태안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3,835	1,773	46.2	실시설계 중
	충남 부여군	금강누정 선유(船遊)길	702	-	-	사업변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예정(중투심사)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집행부진 사유
남부 권 (42 개)	부산 사하구	아미산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1,030	220	21.4	사업대상지 위치 조정 협의 지 연, 건설용역 발주 위한 심의과 정 지연 등
	부산 기장군	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	881	-	-	지방비 확보 지연, 실시설계 용 역 추진을 위한 사전심의과정 지연 등
	부산 북구	낙동선셋 화명에코파 크 조성	780	83	10.6	인허가 협의 지연, 실시설계 용 역 추진을 위한 사전심의과정 지연 등
	광주 동구	예술점목 야행관광공 간 조성	3,991	586	14.7	부지확보 협의 지연, 토목·조경 등 공종별 순차 공사 추진 중
	울산 울주군	울주 산악관광베이스 캠프 조성	145	79	54.5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주체의 내 부 검토 지연, 실시설계 중
	울산 울주군	울주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1,566	139	8.7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주체의 내 부 검토 지연, 실시설계 중
	울산 본청	강동해변 도심문화놀 이터 명소화	1,899	455	24.0	토목·조경 등 공종별 공사 추진중
	울산 동구	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2,252	783	34.8	토목·조경 등 공종별 공사 추진중
	전남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812	-	-	사업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심의 단계 지연, 실시설계 추진중
	전남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 이 확충	1,295	130	10.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준공 지연, 실시설계 중
	전남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 광거점화	791	-	-	국유지 매수 협의 및 공공건축 심의 단계 지연, 실시설계 중
	전남 순천	갯벌치유관광 플랫폼 조성	657	-	-	기본설계 및 건축설계 공모 추 진 과정 지연, 전실시설계 중 (‘26.6. 완료 예정)으로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
	전남 무안	도리포 관광경관 명 소화	2,000	-	-	실시설계 중 인허가(BF인증, 제 로에너지, 건설기술심의 등) 과 정 이행으로 지연, 실시설계 중
	전남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2,492	202	8.1	공종별 실시설계 추진
	전남 강진	달(月) 관광스테이 확 충	676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지연, 실시설계 중
	전남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광 갤러리 조성	2,317	747	32.2	실시설계 중(‘26.9. 완료 예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집행부진 사유
	전남 나주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1,977	10	0.5	공연장 위치 변경 관련 추진주 체 내부 검토 및 정밀음향평가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시기 순연, 실시설계 기성금 지급시 기 미도래
	전남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1,686	11	0.7	실시설계 중 각종 검토 및 심의 과정으로 인한 지연
	전남 담양	문화접목 야행관광공 간 조성	1,371	312	22.8	실시설계 및 일부 구간 공사 추 진중
	전남 합평	공연접목 야행관광공 간 조성	1,273	176	13.8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변경 검토 진행으로 지연
	전남 화순	화순적벽 실감형 관 광명소 조성	1,659	-	-	공유재산 점사용 협의 지연,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지연, 실시설계 추진 중
	전남 장흥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2,860	1,970	68.9	실시설계 중
	전남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1,476	212	14.4	공사 중
	전남 광양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170	27	15.9	철도 유휴부지 확보 지연에 따 라 실시설계 순연
	전남 해남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303	20	6.6	투자심사 이행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연, 군관리계획 및 건축 기획 용역 순연에 따른 실시설 계 추진 순연
	전남 영광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423	-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실 시설계 착수 순연
	경남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772	50	1.8	실시설계 재공모 추진으로 지 연, 실시설계 중
	경남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 광경관 명소화	280	172	61.4	공사 중
	경남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 소화	4,502	796	17.7	공사 중
	경남 고성	자란관광만 구축 (T-UAM)	3,179	1,626	51.1	구간별 공사 중
	경남 고성	상족암 디지털 놀이 터 명소화	2,182	361	16.5	실시설계 단계에서 투자심사, 공 원관리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으로 집행 지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역명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집행부진 사유
	경남 통영	통영관광만 구축 (T-UAM)	7,259	2,176	30.0	구간별 공사 중
	경남 통영	사랑도 관광기반 구 축	222	-	-	사업계획 변경(부지 변경) 검토 중으로 실시설계 미착수
	경남 창원	진해 벚꽃로드 관광 경관 명소화	340	82	24.1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 착 수 지연
	경남 창원	K-예술마실섬 네트 워크 구축	1,240	781	6.3	구간별 실시설계 추진 중 사업 계획 변경 사유 발생하여 내부 검토 진행에 따라 집행 지연
	경남 김해	진영 봉하마을 관광 경관 명소화	1,447	167	11.5	실시설계 중
	경남 함양	한방웰니스 관광거점 화	2,538	392	15.4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 변경, 지 역개발계획 변경, 군관리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집행 지연
	경남 남해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1,732	15	0.9	건축기획용역 추진 과정 지연되 어 실시설계 순연
	경남 사천	선상지테마 관광명소 조성	2,615	679	26.0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인조성계 획 수립, 투자심사,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집행 지연
	경남 합천	합천호 수상관광 플 랫폼 구축	375	89	23.7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지연에 따라 지방비 확보 순연, 건축기 획 용역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 정 용역 추진에 따라 집행 지연
	경남 거제	지심도 산마루 문화 놀이터 명소화	315	177	56.2	실시설계 추진 중
	경남 양산	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320	56	17.5	실시설계 추진(25.11. 착수) 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동 사업들의 추진이 사전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부지 및 예산 확보 난항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공정 지연은 대규모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적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광역관광개발 사업 목적 달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 사업들은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재정당국에 검토 의견만을 제출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부처가 직접 예산 교부와 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지자체의 집행 부진이 현장에 방치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특성을 존중하되, 권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을 겪는 내역사업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역자율계정 신규 사업 검토 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정 관리와 자발적인 실집행률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에 편중되어 집행 지연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발사업'과 '연계·협력형 진흥사업' 간의 적정 비중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은 사업 성격과 지원하는 예산 비목에 따라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공원, 산책로, 데크, 조경 등 건축 및 시설을 조성한다.

관광진흥사업은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안내 체계 구축, 관광 품질인증, 홍보 및 이벤트 등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지원하는 경상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3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및 내역사업 수를 비교해 보면, 연계·협력형 진흥사업보다는 시설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개 사업에서 관광개발 사업비 비중은 90%에 이르고, 사업명 및 사업대상지를 검토하면 대부분 마을, 공원, 센터, 단지처럼 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개발/진흥 사업 비교]

(단위: 개, %, 억원)

구분	사업 수					사업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서부내륙권 ¹⁾ 광역관광개발	24	68.6	11	31.4	35	4,055	88.5	312	11.5	4,367
충청유교문화권 ²⁾ 광역관광개발	29	74.4	10	25.6	39	4,696	91.6	428	8.4	5,124
남부권 ³⁾ 광역관광개발	108	76.6	33	23.4	141	27,984	93.1	2,087	6.9	30,071
합계 및 평균	53	82.2	21	17.8	74	39,974	90.5	4,204	9.5	44,178

주: 1) 개발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반영(당초: 총 36개 4,624억원 → 변경: 총 35개 4,367억원)

2) 중간평가를 통한 개발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당초: 개발 42개, 진흥 13개, 7,947억원 → 변경: 개발 29개, 진흥 10개, 5,124억원)

3) 개발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당초: 총 142개 3조 64억원 → 변경: 총 141개 3조 71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시설 조성 위주의 자본사업은 초기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건립 이후에도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완공 이후 수요 예측 실패나 운영 부실로 이용객이 저조할 경우 언론 등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3개 권역의 사업 유형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중심인 '개발사업'의 실질행률이 소프트웨어 중심인 '진흥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이 드러난다.

서부내륙권의 경우 개발사업의 실질행률은 54.3%에 그친 반면 진흥사업은 74.7%를 기록했으며, 충청유교문화권 역시 개발사업(55.7%)보다 진흥사업(80.0%)의 집행 성과가 우수하였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남부권의 경우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의 실질행률은 26.9%와 38.2%로 모두 저조하긴 하나, 진흥사업이 다소 높은 실질행률을 달성하고 있다.

[3개 사업의 개발/진흥 사업별 2025년 집행내역]

(단위: 개, 백만원, %)

세부사업	개발/진흥 (내역사업 수)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서부내륙권	개발(12)	32,183	17,460	54.3
	진흥(10)	6,865	5,131	74.7
충청유교문화권	개발(26)	47,844	26,665	55.7
	진흥(2)	625	500	80.0
남부권	개발(55)	78,326	21,070	26.9
	진흥(26)	2,050	784	3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수치는 자본 보조 위주의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적기에 소화하는 데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홍보, 특화 콘텐츠 개발 중심의 진흥사업은 비교적 유연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반면,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은 특성상 부지 매입,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사전행정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만성적인 공정 지연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행정절차 미완료 및 부지 확보 난항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 표류가 전체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되, 하드웨어 중심 개발 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부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정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흥사업의 비중을 단순 확대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진흥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자칫 단발성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소모되어 장기적인 관광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개발사업과 기초성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진흥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두 사업 간의 적정 비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황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¹⁾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48억 5,200만원 중 10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관광자원 기반조성	35,318	723	-	36,041	30,761	1,067	4,213	10,597	10,597
지역관광자원개발	14,852	-	-	14,852	10,852	-	4,000	-	-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2025년에도 실집행률이 54.8%에 그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내역사업인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 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 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61-301의 내역사업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 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 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2014년~)
집행기관	지자체(대전, 강원, 대구, 전북, 서울('25년 기준))
사업추진형태	자치단체보조, 국비 50%
2025년 예산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자원개발 연차 사업비 14,852백만원 - 국제온천 관광거점지구 조성(대전 유성): 1,562백만원 -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삼척): 2,400백만원 -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대구): 5,600백만원 -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임실): 1,290백만원 - 2025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서울 마포): 4,0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적행률이 34.5%, 35.4%, 39.9%로 낮게 나타나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이월된 사업비도 일부만 집행되어 불용되거나 재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의 경우에도 실적행률이 54.8%에 그치고 있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최근 4년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2	9,086	9,086	8,616	8,616	22,233	30,849	10,639	9,708	10,502	34.5
2023	13,848	13,848	10,886	10,886	9,708	20,594	7,285	11,578	1,731	35.4
2024	14,630	14,630	14,630	14,630	11,578	26,208	10,448	14,011	1,749	39.9
2025	14,852	14,852	10,852	10,852	14,011	24,863	13,614	10,110	1,139	5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2025년의 지자체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56억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한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실적행률 50% 미만의 부진한 실적행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부진 원인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설계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요 변화 및 지방 재정 증양투자심사 반려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받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지역관광자원개발 2025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C/B)	실집행 부진 사유
(대전 유성) 국제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1,562	1,562	2180	3,742	1,259	2,483	-	33.6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지연
(강원 삼척)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2,400	2,400	2110	4,510	1,512	2,998	-	33.5	추가부지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대구) 디아크 문화관광활성화	5,600	5,600	-	5,600	5,600	-	-	1000	-
(전북 임실) 세계명건 테마랜드 조성	1,290	1,290	576	1,866	527	1,339	-	28.2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일시적 집행 부진
(서울)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4,000	-	-	-	-	-	-	-	사업포기로 인한 미교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집행 부진은 단지 2025년도 한 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지자체 별 내역사업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사업을 포기한 서울을 포함한 모든 내역사업에서 예외 없이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 국제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2021~2025년), 강원 삼척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사업(2022~2025년), 전북 임실 세계 명건 테마랜드 조성(2023~2025년)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매년 반복적인 이월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초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이월이 수년째 고착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각 지자체의 당초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별 이월 사유]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지자체)	사업 기간	이월 연도	교부 현액	이월액 (재이월 포함)	이월 사유	비고
국제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대전광역시)	20~27	'21	200	170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7 사업완 료 예정
		'22	1,170	1,000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3	1,336	1,055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4	3,175	2,180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및 경상사업 실행 용역 과업 기간 미종료	
		'25	3,742	2,483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및 경상사업 실행 용역 과업기간 미종료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강원특별 자치도)	22~27	'22	200	57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 완료시기 미도래	'26년부터 지자체 자 체 사업으 로 전환
		'23	1,057	3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4	3,260	2,110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5	4,510	2,998	자금 사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대구광역시)	22~26	'23	800	1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6 사업 완 료
세계 명건 테마랜드 조성 (전북특별 자치도)	23~28	'23	500	450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26년부터 지자체 자 체 사업으 로 전환
		'24	950	576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5	1,866	1,339	사업부지 인근 주민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한류 공연관광 컴플렉스 조성 (서울특별시)	20~26	'21	7,910	7,686	사업계획 변경 검토에 따른 설계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25년 사업포 기
		'22	12,332	1,535	설계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사업을 포기한 서울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년 이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문체부는 사업 구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확보, 지자체 매칭 예산 편성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개발 사업 특성상 공사 착공 전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개정된 「관광진흥법」³⁾ 시행 시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관광진흥법」(2026. 4. 28. 개정) 주요 내용: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지방이양된 사업('20~)으로 1개 사업(~'27)을 제외하고 '26년 국고지원이 종료되어 추가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293억 3,600만원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21억 9,800만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30억 2,600만원이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824억 5,900만원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조 3,427억 2,200만원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 육성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이 2조 8,669억 3,800만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614억 3,200만원이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자체 수입	정부내부 수입 및 기타	여유자금 회수	계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계
문화예술진흥기금	82,729	397,707	48,900	529,336	439,593	23,313	22,133	44,297	529,336
영화발전기금	24,522	64,497	13,179	102,198	79,785	12,495	256	9,663	102,198
지역신문발전기금	502	8,500	4,024	13,026	8,179	517	-	4,330	13,026
언론진흥기금	34,484	-	47,975	82,459	20,600	119	8,500	53,240	82,459
관광진흥개발기금	1,208,885	7,467	126,420	1,342,772	1,137,476	579	203,523	1,144	1,342,77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2,232,250	486,688	148,000	2,866,938	1,506,798	31,110	859,200	469,830	2,866,93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 예방치유계정)	28,494	-	32,938	61,432	23,486	-	-	37,946	61,432
계	3,611,816	964,859	421,436	4,998,111	3,215,917	68,133	1,093,612	620,450	4,998,1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1.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¹⁾

2025회계연도 총계 기준 계획액은 5,811억 5,900만원이었고 5,29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집행률 (B/A)	2026 계획
			계획		결산 (B)		
			당초	수정(A)			
지출	575,596	493,331	577,659	581,159	529,336	91.1	632,549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입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 복권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수입의 비중이 과소하고, 여유자금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증장기적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규모는 연도별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내부수입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규모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과소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결산 기준 전체 수입(여유자금회수 제외)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은 75.1%에 달하여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내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0~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 ¹⁾	348,070	322,010	379,937	448,652	477,305	480,436	566,809
자체수입	54,746	40,486	79,069	82,978	98,519	82,729	93,623
경륜경정전입	8,670	-	-	-	8,971	10,999	11,061
용자원금회수	-	1,405	13,917	12,635	17,669	17,810	15,344
재산수입	4,556	5,102	2,860	5,932	3,749	3,839	5,694
기타경상이전수입	35,074	29,100	57,701	58,007	58,909	43,004	52,526
기타	6,446	4,879	4,591	6,404	9,221	7,077	8,998
정부내부수입	293,324	281,524	300,868	365,674	378,786	397,707	473,186
일반회계	21,000	20,37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복권기금	122,324	164,154	173,868	235,674	248,786	267,707	280,871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00	97,000	97,000	100,000	100,000	100,000	162,315
관광기금	50,000	-	-	-	-	-	-
지출(B) ²⁾	332,164	352,356	410,605	407,809	470,975	485,039	634,239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당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에 따라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 및 사적지의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2)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 1972. 8. 14. 제정, 1972. 8. 14. 시행)

제7조 (기금의 모금)

① 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릉·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금 모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반 국민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³⁾에 따라 2004년부터 부담금이 폐지되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금 소진으로 인한 고갈이 우려되어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기금을 운영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최근 연도별 기금 지출 및 여유자금 적립액 추이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폐지된 2004년 당시 5,273억 원에 달했던 연말 여유자금은 이후 구조적인 수입 부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672억 5,300만 원이었던 여유자금 적립액은 2025년 결산 기준 411억 6,200만 원까지 급감하였다.

반면, 동 기간 기금의 순지출 규모는 2020년 3,321억 6,400만 원에서 2025년 4,850억 3,9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 지출 대비 여유자금 적립액의 비중 역시 2020년 5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체수입 확보 대책 없이 지출 규모만 확대되는 현행 구조가 방치될 경우 단기간 내에 여유자금의 완전한 고갈이 우려된다.

[2020~2026년 연도별 기금 지출 및 여유자금 적립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금 지출(순지출: A)	332,164	352,356	410,605	407,809	470,975	485,039
연말 여유자금 적립액(B)	167,253	115,340	75,332	62,596	55,152	41,162
여유자금 적립액의 순지출 대비 비중(B/A)	50.4	32.7	18.3	15.3	11.7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⁴⁾에 따른

3) 2002헌가2, 2003년 12월 18일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문화·예술 진흥 공익사업 추진으로 복권기금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공익 배분 방식을 법정 배분 방식⁵⁾으로 변경하기 위한 복권법 개정안⁶⁾과 공연 압포 범죄수익 몰수·추징분의 기금 전입⁷⁾, 10년이 경과한 저작권미분 배보상금 기금 전입 방안⁸⁾에 대한 개별 법률 개정안⁹⁾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 골프장 운영 개선을 통한 입장료 수입 규모 확대, 문화예술 분야 후원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출연금 확대, 저성과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재원 마련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6122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16121

8)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6124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과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여유자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은 결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축소나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안의 조속한 입법 및 실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자체수입 발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8-2. 영화발전기금: 자체 재원 확보 노력 필요 등

가. 현황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¹⁰⁾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총계 기준 계획액은 1,188억 6,100만원이었고 1,02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집행률 (B/A)	2026 계획
			계획		결산 (B)		
			당초	수정(A)			
지출	167,057	68,858	93,692	118,861	102,198	86.0	169,556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한 극장 관람 비율 하락, OTT 등 대안 시청방식의 대두 등 영화산업 부진으로 핵심 수입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모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타 기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법정부담금(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45억 8,200만원에 달했으나, 2020년 105억 2,200만원으로 급락한 이후 2024년 262억 5,500만원, 2025년 224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영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4,582	10,522	17,086	17,948	26,255	26,223	22,4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닌, 코로나19 타격 이후 극장 관람 비율이 하락하고 OTT 등 대안 시청 방식이 대두하면서 영화 관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존 극장 중심의 부과금 징수 구조로는 과거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에 비해 외부 재원, 특히 타 기금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체수입은 2024년 290억원, 2025년 245억 원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계획상으로도 36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2024년 354억 원, 2025년 645억 원의 타 기금 전입금이 수혈되었다. 2026년 계획에는 무려 1,419억 원의 타 기금 전입이 예정되어 있어, 기금의 자체수입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2020~2026년 영화발전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 ¹⁾	17,919	21,902	102,434	109,716	64,455	89,019	178,617
자체수입	14,934	20,724	22,434	29,716	29,055	24,522	36,727
법정부담금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10,522	17,086	17,948	26,255	26,223	22,450	33,735
기타	4,411	3,638	4,487	3,461	2,833	2,073	2,992
정부내부수입	2,985	1,178	80,000	80,000	35,400	64,497	141,890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2,985	1,178	-	-	-	-	-
공자기금 예수금	-	-	80,000	-	-	-	-
일반회계 전입금	-	-	-	80,000	-	-	-
타기금 전입금	-	-	-	-	35,400	64,497	141,890
지출(B) ²⁾	121,850	141,410	104,607	162,555	55,836	92,536	167,106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1,059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2021년 602억원, 2022년 568억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43억원, 2024년 129억원까지 감소했으며, 2025년 결산 기준 97억 원에 불과하다.

순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 또한 2020년 87.0%에서 2024년 18.8%, 2025년 10.5%로 급감하여,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0~2026년 연도별 기금 지출 및 여유자금 적립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금 지출(순지출; A)	121,850	141,410	104,607	162,555	68,765	92,536
연말 여유자금 적립액(B)	105,960	60,281	56,800	4,302	12,921	9,700
여유자금 적립액의 순지출 대비 비중(B/A)	87.0	42.6	54.3	2.6	18.8	1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의 감소 추세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를 대비하여 일반회계 등 타 기금 전입 등 재원 다각화를 위해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한 극장 관람 비율 하락, OTT 등 대안 시청방식의 대두 등 영화산업 부진으로 핵심 수입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모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타 기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체육기금이나 복권기금 등 타 기금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연명하는 방식은 영화발전기금 본연의 독립성과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와 주무부처는 기금의 자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전 약 3개월간 기금운용계획 상 수입 근거 없이 부과금을 징수하였는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입·지출 구조 변동 시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2024년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의 일환으로 폐지가 발표¹¹⁾되었고, 2025. 1. 1.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가 삭제¹²⁾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폐지가 한국 영화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영화단체 약 20여개가 연대하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 연대’를 결성하여 반대 운동을 벌였고,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영화비디오법이 2025. 3. 25. 재개정되면서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과금 징수가 재개되었다.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 수납현황(2019~2025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19	50,398	50,398	50,398	54,630	54,582	108.3	99.9	49	-
2020	54,446	54,446	54,446	18,690	10,522	19.3	56.3	8,167	-
2021	55,522	55,522	55,522	17,087	17,086	30.8	100.0	1.6	-
2022	46,605	46,605	46,605	17,961	17,948	38.5	99.9	14	-
2023	52,431	52,431	52,431	26,367	26,255	50.1	99.6	113	-
2024	29,442	29,442	29,442	26,501	26,223	89.1	98.9	278	-
2025	- ¹⁾	25,169	25,169	22,761	22,450	89.2	98.6	312	-

주: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2025.1.1.부터 폐지되었다가, 2025년 3월 국회에서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통해 다시 징수 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11)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24. 3. 27.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2호, 2024. 12. 31. 일부 개정]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재징수의 근거가 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5년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상영관에 안내를 마치고 3월 27일부터 부과금 징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징수된 부과금을 기금의 수입 항목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4일(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에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2회 변경 시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법률 공포 이후인 2025년 4월 21일에 제안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해당 수입 계획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7월 제2회 변경안으로 미룬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약 3개월(2025. 3. 27. ~ 7. 3.)의 기간 동안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절차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당연 징수 절차"이자 "선례가 없어 행정절차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체법(영화비디오법)상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징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국가의 수납 행위 및 기금의 운용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별도의 재정 계획인 '예산(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실체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징수 절차가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수입계획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시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을 우선 징수한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체법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긴밀하게 연동하여 이와 같은 절차적 지연 및 미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8-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강화 노력 필요

가. 현황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¹³⁾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총계 기준 계획액은 100억 1,800만원이었고 13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집행률 (B/A)	2026 계획
			계획		결산 (B)		
			당초	수정(A)			
지출	11,978	12,526	10,018	10,018	13,026	130.0	14,96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이 언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신문'의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정보화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신문이라는 대상만 다르고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과 거의 유사하다.

1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¹⁴⁾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잡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진흥, 인력 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 독자권익 및 언론 공익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2025. 5.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2025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대상을 지역신문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과 유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언론진흥기금 내 세부사업으로 수행해도 되는 것으로 평가한바 있다.

또한 동 기금은 2022년까지 기금 수입원을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 받은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회계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 뿐만 아니라 기금 재원도 모두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용자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0~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 ¹⁾	8,284	8,888	8,768	9,088	8,953	9,002	11,594
자체수입	284	188	468	588	453	502	387
재산수입	73	93	125	315	188	290	187
기타경상이전수입	211	95	343	273	265	212	200
정부내부수입	8,000	8,700	8,300	8,500	8,500	8,500	11,207
일반회계	8,000	8,700	8,300	2,500	-	-	-
언론진흥기금	-	-	-	6,000	8,500	8,500	11,207
지출(B) ²⁾	8,482	8,837	8,511	8,405	8,502	8,696	12,305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따라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동 기금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기금의 근거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¹⁵⁾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차기 평가시까지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유예한다고 평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각각 지역신문법과 신문법에 따른 목적 및 대상, 용도 등이 다르며 역할 중복이 아닌 상호보완적 체계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12개 내내역 사업 중 지역민 참여보도 지원, 지역인재인턴 프로그램 지원,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등 9개 사업은 지역신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취재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학교 미디어 교육 등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용도)에서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신문 현장에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 3월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3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 시행하다가 2021. 12월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함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언론진흥기금 유사사업
지역신문역량강화	· 기획취재 지원 * 지역사회 현안 취재 지원	·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 특정주제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취재지원
	· 지역신문 제안사업 · 지역민 참여보도 지원 · 지역인재인턴 프로그램 지원 · 지역신문 교류지원 · 지역신문 모니터링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지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누리집 · 공동주제 심층보도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
지역공헌활동지원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소외계층 대상 지역사회 뉴스 전달,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소외계층 대상 정보접근성 보장 목적
	·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 * 초중고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e-NIE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등	· 학교미디어 교육 * 미디어 강좌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적 규정과 현장의 높은 수요로 인해 일부 사업이 언론진흥기금과 궤를 같이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긴 하나, 기금존치 평가에서 언론진흥기금과의 사업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신문'의 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8-4.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 참여율 개선을 위한 기금 여유재원의 체육진흥 사업 활용 필요

가. 현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16)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 육성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2025회계연도 총계 기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계획액은 2조 9,784억 4,200만원이었고 2조 8,669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의 계획액은 597억 6,400만원이었고 614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집행률 (B/A)	2026 계획
			계획		결산 (B)		
			당초	수정(A)			
국민체육 진흥계정	3,324,417	3,220,756	2,977,430	2,978,442	2,866,938	96.2	3,394,878
사행산업중독 예방치유계정	51,983	57,364	59,764	59,764	61,432	102.8	64,162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분석의견

정부는 2028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참여율이 오히려 정체 및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을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 12. 20.에 발표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에서 2028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을 70% 대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¹⁷⁾ 이때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 기준이다.

그러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4년에 오히려 감소했으며, 2025년에도 62.9%에 그치고 있다. 2019년 66.6%로 정점을 기록했던 참여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하여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2015~2025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참여율 ¹⁾	56.0	59.5	59.2	62.2	66.6	60.1	60.8	61.2	62.4	60.7	62.9
미참여율 ²⁾	34.4	29.5	28.9	28.0	25.9	29.5	28.7	29.5	32.2	29.2	29.2

주: 1)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 참여한 비율

2)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

1. 참여율과 미참여율을 제외한 기타 비율은 월 3회 이하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 참여한 비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생활체육조사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는 2023년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 산업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80.7조원(2019년)에서 2020년 52.9조원으로 급감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3년 81.0조원, 2024년 기준 84.7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전문 체

17) 산업 측면에서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을 2028년까지 10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스포츠산업조사)

육지도자 배치 등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관련 정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연도별 수입(여유자금 회수 제외) 현황을 보면, 재산수입, 경륜·경정·체육투표권 수입 등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연도별 결산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수정)
수입(A) ¹⁾	1,891,583	2,772,809	2,863,986	2,884,417	2,990,756	2,718,938	3,244,878
자체수입	1,532,824	2,164,936	2,134,289	2,147,626	2,267,413	2,232,250	2,428,078
법정부담금 (골프장부가금)	2,300	7	-	-	354	517	23
용자원금회수	19,313	31,394	43,969	79,828	148,350	83,168	133,087
재산수입	26,909	29,884	40,324	72,283	61,450	28,040	46,501
기타경상이전수입	44,368	176,853	259,057	87,093	192,465	111,254	170,905
기타수입	1,439,934	1,926,798	1,790,939	1,908,422	1,864,794	2,009,271	2,077,562
정부내부수입	358,759	607,873	729,697	736,791	723,343	486,688	816,800
복권기금전입금	77,901	88,565	93,814	91,450	91,954	92,044	94,808
공자기금	280,858	519,308	635,883	645,341	631,389	394,644	721,992
지출(B) ²⁾	2,205,641	2,374,136	2,461,038	2,439,671	2,262,486	2,397,108	2,731,759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기금의 여유재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0년 1조 220억원에서 2025년 3조 9,181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사업지출 및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유자금 ¹⁾ (B)	1,021,980	1,439,885	1,810,847	2,364,795	3,241,016	3,918,067

주: 1) 여유자금은 기말잔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금의 여유자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지출의 비중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은 체육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 본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라는 당면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일상적인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등 물적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과 같은 인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된다.

가. 현황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¹⁾은 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 민간 분야의 창·제작 역량 향상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86억 3,800만원중 86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술창작지원	64,677	71	-	64,748	64,064	11	673	69,118	69,118
공연예술 창작육성	37,125	71	-	37,196	36,771	11	414	39,825	39,825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8,638	-	-	8,638	8,602	-	36	9,038	9,038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제작 및 발표에 소요되는 제작비, 인건비, 대관료, 홍보비, 경상비 등의 비용에 대해 매해 5천만원에서 3억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하여 예술단체가 공연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인 작품 제작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0의 내내역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의 창·제작 역량 향상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 마련
사업예산	(2025년) 8,638백만원(민간경상보조 8,028백만원 / 운영비 610백만원)
사업추진방향	-민간 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다년간 연속지원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작품 제작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수준 높은 작품 제작 역량 축적과 자율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다년간(3개년) 지원에 따른 평가 제도 시행(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등)
지원규모	단체별 年 5천만원~3억 원 내외 / 2025년 총 60개 단체 선정 (2025년~2027년 3년간 다년 지원)
지원장르	연극/무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4개 장르)
수행조건	-중규모(1억원~2억원) 지원단체의 경우, 사업전담 인력 고용 및 비수도권 공연 개최 시 해당 지역공연 진행 예산 유지 고려 -대규모(2억원 이상) 지원단체의 경우, 비수도권 공연 2회 이상 개최 필수
선발방식	사업계획 공모 → 신청단체 접수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단체 선발
사업수행방식	민간경상보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연단체의 소재지 및 공연 개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원단체 및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동 사업의 지역별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14개(23.3%)가 선정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세종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 선정 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5년 신청단체 및 선정단체 현황]

(단위: 개, %)

지역	공연예술단체 수 ¹⁾	신청단체 수	선정단체 수	선정단체 비율
서울	1,829	149	37	61.7
경기	718	32	8	13.3
인천	148	2	1	1.7
부산	249	9	5	8.3
대구	184	8	1	1.7
광주	122	2	1	1.7
대전	154	4	-	-
울산	59	2	-	-
강원	136	6	1	1.7
충북	85	2	-	-
충남	99	4	1	1.7
전북	136	6	3	5.0
전남	92	2	-	-
경북	112	4	-	-
경남	152	6	2	3.3
제주	41	2	-	-
세종	33	2	-	-
합계	4,350	242	60	100.0

주: 1) 출처: 2025 공연예술조사보고서, <표2-10> 공연단체 지역 및 특성별 단체수,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단계부터 수도권(183개, 75.6%)과 비수도권(59개, 24.4%)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비 지원 혜택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 효과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전국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연 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균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공연 단체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비수도권 단체는 일정 비율을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심의위원회에 권고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단체의 7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색할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단체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실제 대중에게 선보이는 공연의 개최 지역 또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025년 선정단체의 지역별 공연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9회의 전체 공연 중 서울 지역에서만 무려 474회(63.3%)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21회, 2.8%)와 인천(7회, 0.9%) 실적을 합산할 경우 수도권 내 공연 개최 비율은 67.0%(502회)에 달한다. 반면, 해외 공연(41회, 5.5%)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공연 횟수는 206회(27.5%)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공연 실적이 전무하며, 경북(1회, 0.1%), 대구(2회, 0.3%), 충북(2회, 0.3%), 충남(3회, 0.4%) 등 다수 지자체에서 개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025년 선정단체의 지역별 공연 개최 현황]

(단위: 회, %)

지역	공연 개최 횟수	비율
서울	474	63.3
경기	21	2.8
인천	7	0.9
부산	74	9.9
대구	2	0.3
광주	43	5.7
대전	38	5.1
울산	-	-
강원	9	1.2
충북	2	0.3
충남	3	0.4
전북	13	1.7
전남	7	0.9
경북	1	0.1
경남	6	0.8
제주	4	0.5
세종	4	0.5
해외	41	5.5
합계	708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증장기창작지원 사업은 연간 2억원 이상 대규모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비수도권 공연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증규모(1~2억원) 지원 단체의 경우 비수도권 공연 개최 시 해당 지역공연 진행 예산 유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공연의 대다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선정된 민간 공연단체들이 비수도권보다 서울 공연을 선호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단순히 관객 수요나 시장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연을 올리기 위한 필수 기반인 '공연시설 인프라'의 명백한 지역 간 격차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조사」에 나타난 '지역별·규모별 공연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인프라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 산재한 총 1,641개의 공연장 중 서울에만 446개(27.2%)가 밀집해 있으며, 경기·인천(280개)을 합산할 경우 수도권에 전체 공연장의 44.2%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초연이나 실험적인 무대에 주로 활용되는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의 경우, 전국 1,014개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476개가 위치하고 있어 전체 지역 내 공연장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원권(총 46개), 제주권(총 21개) 등을 비롯한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은 종합공연장이나 소공연장 등 규모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시설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여, 지원단체들이 의무 조건을 이행하려 해도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할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별·객석 규모별 공연장 현황]

(단위: 개, %)

구분	공연장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1,000석 이상		300석~1,000석 미만		300석 미만	
	사례수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전체	1,641	150	100.0	476	100.0	1,014	100.0
서울	446	24	16.0	108	22.7	314	31.0
경기/인천	280	26	17.3	92	19.3	162	16.0
강원권	46	5	3.3	25	5.3	15	1.5
충청권	196	23	15.3	60	12.6	113	11.1
전라권	195	19	12.7	68	14.3	108	10.7
경상권	458	48	32.0	116	24.4	293	28.9
제주권	21	4	2.7	8	1.7	9	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조사」

결과적으로 사업 지원단체 및 공연 개최 지역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대한 단순한 의무 부과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 편차 완화와 전국적인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중소규모 창작 공간 확충 및 기존 문예회관의 시설 개선 등 공연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2)3) 나아가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공연 시 지역 공공 공연장과의 기획 대관 매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체재비 및 물류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연장 규모가 불충분하므로 기존의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을 전용하거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서 인프라를 확보할 것’, ‘대형 공연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 공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등 공연장 부족에 대해 지적된바 있다.

3)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문예회관 건립이나 예술창작공간 조성과 같은 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2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 예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¹⁾은 일반 금융 및 서민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용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8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18,000	-	-	18,000	18,000	-	-	28,000	60,000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며, 해당 예술인이 용자 신청을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접수 후 예술인 확인절차(예술활동증명 완료여부)를 진행한 후 용자관리위원회에서 용자심사 및 용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취급은행(KEB하나은행) 통장으로 용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술인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경제적 안정망을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대출한도 700만원 이내이며 이율 2.5%로 상환기간은 3년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5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 최고 1억원이며 이율 1.95%,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비교하면 이율이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개요]

구분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완료자	
'25년 예산	90억원	90억원
대출내용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이율	2.5% (연체시 5.5%)	1.95% (연체시 4.95%)
상환기간	3년	2년 (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
시행시기	매월	상·중·하반기 총 5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용자 이용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 예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다각화 및 밀착형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용자계약자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의 비율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73.0%, 전세자금의 경우 86.8%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계약자의 지역별 통계 현황]

(단위: 명, %)

시도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신청인원	신청비중	선정인원	선정비중	신청인원	신청비중	선정인원	선정비중
서울	824	38.0	718	37.8	60	52.2	59	51.8
인천	144	6.6	125	6.6	7	6.1	7	6.1
경기	617	28.5	544	28.6	33	28.7	33	28.9
부산	99	4.6	90	4.7	4	3.3	4	3.5
대구	66	3.0	54	2.8	0	0.0	0	0.0
광주	37	1.7	31	1.6	0	0.0	0	0.0
대전	49	2.3	44	2.3	1	0.9	1	0.9
울산	31	1.4	25	1.3	0	0.0	0	0.0
세종	15	0.7	10	0.5	1	0.9	1	0.9
강원	42	1.9	39	2.1	1	0.9	1	0.9
충북	21	1.0	21	1.1	2	1.7	2	1.8
충남	33	1.5	29	1.5	2	1.7	2	1.8
전북	45	2.1	39	2.1	1	0.9	1	0.9
전남	26	1.2	25	1.3	1	0.9	1	0.9
경북	26	1.2	23	1.2	0	0.0	0	0.0
경남	47	2.2	41	2.2	1	0.9	1	0.9
제주	46	2.1	43	2.3	1	0.9	1	0.9
합계	2,168	100.0	1,901	100.0	115	100.0	114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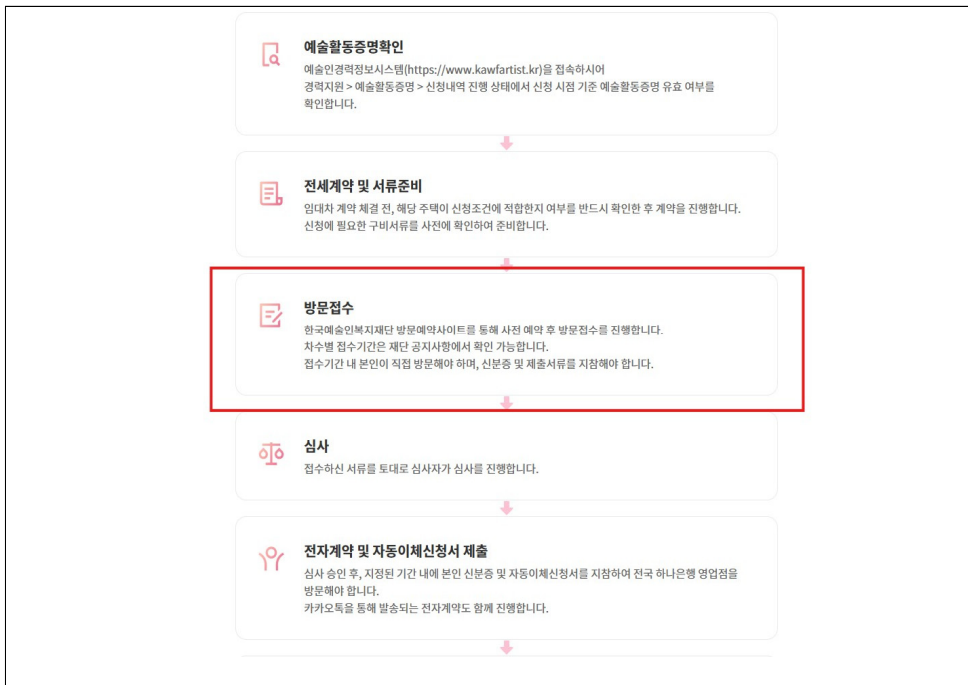
이처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계약자 중 수도권 비율이 70~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도권의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 데 기인하나,²⁾ 사업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용자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세한 대면 상담을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지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시중 대출 상품과 달리, 동 사업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체결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요구

2)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통계를 보면 서울 거주 예술인이 36.0%, 인천 4.6%, 경기 25.0%로 65.6%의 예술인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의 수도권 비율은 86.8%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총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절차]



자료: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안내 웹사이트
(<https://www.artloan.kr/notice/rentProcess.do>)

(단위: 명, %)

지역	인원	비중	지역	인원	비중
서울	75,469	36.0	강원	4,605	2.2
부산	10,912	5.2	충북	3,885	1.9
대구	6,251	3.0	충남	4,277	2.0
인천	9,678	4.6	전북	6,649	3.2
광주	4,902	2.3	전남	4,847	2.3
대전	5,327	2.5	경북	4,038	1.9
울산	2,657	1.3	경남	9,531	4.5
세종	1,217	0.6	제주	3,212	1.5
경기	52,477	25.0	합계	209,934	100.0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통계(2026. 4. 8.)
(https://www.kawfartist.kr/kawf_dash/dash/html/p01.html)

이러한 지역 간 금융 지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예술인의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프라인 접수 창구의 전국적 다각화이다. 비수도권 예술인들이 서울까지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권역별 광역 거점에 전담 접수 창구를 신설하거나 동 사업의 취급은행인 KEB하나은행의 전국 지방 영업점망을 활용하여 대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면적인 비대면(온라인) 대출 심사 및 서류 제출 시스템 도입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과 약정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 역시 전세 계약서 및 필수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하고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거점 중심의 밀착형 홍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접근성 한계와 더불어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도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 예술인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세자금 신청 시기(상·중·하반기 등 총 5회)에 맞추어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찾아가는 용자 상담·접수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실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사업: 지역별 사용자 확대 및 지역 업체 참여 독려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가. 현황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사업¹⁾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객 방문 활성화 및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민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인구감소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 숙박·식음·관광 등 지역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내관광 역량 강화	106,879	-	-	106,879	106,851	-	28	64,193	83,653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3,000	-	-	3,000	3,000	-	-	3,000	3,000

주: 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²⁾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에 강원 평창 및 충북 옥천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15개 지역, 2024년에는 34개 지역, 2025년에는 44개 지역으로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의 내역사업

2)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을 통해 관광 생활인구 지속 유입, 관광 소비 확대 등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2025년 사업예산	3,000백만원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숙박·식음·체험·쇼핑·관람 등 여행 혜택 제공('25년 기준 44개 지역 대상 1,100여 개 업체에서 여행 혜택 제공)
사업수행방식	민간경상보조

[연도별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 현황]

2022	2023	2024	2025
2개 지역 (평창, 옥천)	15개 지역 (기존 2개 지역 + 강화, 고령, 고창, 태안, 부산 영도구, 정선, 신안, 단양, 거창, 하동, 남원, 제천, 연천)	34개 지역 (기존 15개 지역 + 가평,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괴산, 영동, 예산, 무주, 임실, 영광, 장흥, 해남, 합천, 안동, 영덕, 영주, 부산 서구)	44개 지역 (기존 34개 지역 + 철원, 김제, 구례, 곡성, 함평, 청도, 의성, 밀양, 부산 동구, 보령)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발급자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지역별 할인 혜택 제공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발급 실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발급건수는 3,382,538건으로, 이는 대상 지역 인구 대비 136.6%에 달하여 발급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³⁾ 그러나 발급건수 대비 실제 이용 건수의 비율은 시범 사업 연도인 2022

3) 그러나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2025년 말 기준 한 사람이 최대 44개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년 13.9%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 이용률 역시 6.0%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의 전체 누적 발급건수 대비 누적 이용률 또한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규모의 발급 성과가 실제 지역 내 체류 및 관광 소비 등 실질적인 이용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

연도	발급		이용	
	발급건수	대상지역 인구 대비	이용건수	발급건수 대비
2022	41,457	46.1	5,750	13.9
2023	399,071	15.8	24,117	6.0
2024	3,669,679	147.4	114,723	3.1
2025	3,382,538	136.6	201,703	6.0
누적	7,492,745	302.6 ¹⁾	346,293	4.6

주: 1) 2025년말 인구수(2,476,186명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로 누적 발급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44개 참여 지역 중 21개 지역에서 발급건수 대비 이용률이 0~1%로 나타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

지자체	발급		이용	
	발급건수	인구 대비	이용건수	발급건수 대비
강원 정선군	272,074	782.5	54,474	20.0
강원 영동군	184,423	429.7	28,404	15.5
충북 단양군	288,370	1077.8	41,978	14.6
충북 제천시	245,624	192.4	27,878	11.4
강원 평창군	302,977	763.2	31,697	10.5
충북 옥천군	263,140	531.8	23,036	8.6
전북 무주군	186,129	818.0	11,725	6.3
경북 안동시	193,253	126.9	12,168	6.3
강원 삼척시	203,226	336.8	10,436	5.1

있어, 발급받은 후 방문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단위: 명, 건, %)

지자체	발급		이용	
	발급건수	인구 대비	이용건수	발급건수 대비
경북 영주시	179,288	184.9	7,754	4.3
경기 연천군	201,531	478.2	8,600	4.3
강원 영월군	193,849	539.8	7,342	3.8
충남 보령시	18,667	20.3	699	3.7
전북 남원시	206,170	278.2	6,845	3.3
경남 밀양시	56,925	57.6	1,886	3.3
강원 태백시	193,344	522.7	5,691	2.9
강원 홍천군	187,434	284.4	5,017	2.7
충북 괴산군	175,320	458.8	4,614	2.6
충남 예산군	180,136	229.2	4,041	2.2
부산 영도구	231,498	229.0	5,046	2.2
경남 거창군	214,743	365.1	4,535	2.1
경기 가평군	195,195	315.6	3,862	2.0
충남 태안군	231,272	390.3	4,546	2.0
인천 강화군	232,218	334.5	4,514	1.9
경남 하동군	201,568	506.0	3,895	1.9
부산 동구	54,864	65.8	1,045	1.9
경북 의성군	53,467	111.9	994	1.9
전남 곡성군	52,881	194.2	916	1.7
강원 철원군	56,535	141.7	963	1.7
전남 구례군	55,080	232.0	908	1.7
경북 청도군	55,883	139.6	837	1.5
부산 서구	180,480	178.0	2,310	1.3
경북 영덕군	179,332	549.7	2,211	1.2
전북 임실군	170,802	677.3	1,999	1.2
경북 고령군	209,572	707.9	2,370	1.1
전남 함평군	52,187	177.6	546	1.1
전남 신안군	213,601	511.3	2,084	1.0
전남 해남군	174,566	281.2	1,676	1.0
전북 고창군	213,102	424.1	1,928	0.9
강원 양양군	194,355	713.8	1,744	0.9
전북 김제시	52,266	64.1	431	0.8
경남 합천군	170,378	437.6	1,120	0.7
전남 장흥군	166,878	489.2	907	0.5
전남 영광군	148,142	277.3	531	0.4
합 계	7,492,745	302.6	346,293	4.6

주: 인구 대비 비율은 해당 지역의 2025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할인 혜택 제공 사용처 현황을 살펴보면, 44개 지자체의 할인 혜택 제공 사용처는 1,120곳으로 지자체당 평균 사용처 개수는 25.5개이나,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사용처가 5곳에 불과하고 단양군은 69곳에 달하는 등 지자체별 편차가 상당한 편이다.

또한 식음료·관람·체험·쇼핑·숙박 등 특정 분야의 사용처가 0개인 지역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혜택 제공 사용처 현황]

(단위: 개)

지자체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숙박	기타	합계
강원 평창군	2	9	12	0	1	0	24
충북 옥천군	12	2	5	0	2	1	22
인천 강화군	10	3	5	1	3	0	22
강원 정선군	9	4	4	0	1	1	19
충북 단양군	37	7	18	2	4	1	69
충남 태안군	6	7	4	1	2	0	20
전북 고창군	6	3	6	0	3	0	18
전남 신안군	4	2	2	0	3	0	11
부산 영도구	14	0	6	3	5	0	28
경남 거창군	3	3	11	1	9	0	27
경남 고령군	5	2	5	0	3	0	15
경기 연천군	6	1	4	0	5	0	16
충북 제천시	25	2	18	7	8	1	61
전북 남원시	20	3	4	4	3	1	35
경남 하동군	13	3	7	0	2	0	25
경기 가평군	2	4	8	0	13	0	27
강원 삼척시	1	8	3	0	0	1	13
강원 양양군	3	0	8	2	2	0	15
강원 영월군	0	4	0	0	0	1	5
강원 태백시	9	3	2	2	3	1	20
강원 홍천군	5	0	11	0	2	0	18
충북 괴산군	15	2	9	7	6	1	40
충북 영동군	18	3	4	2	2	1	30
충남 예산군	12	3	1	1	3	1	21
전북 무주군	0	4	3	0	0	1	8
전북 임실군	10	2	2	6	1	1	22
전남 영광군	0	2	3	15	6	0	26
전남 장흥군	10	3	1	2	2	1	19

(단위: 개)

지자체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숙박	기타	합계
전남 해남군	10	3	5	0	4	1	23
부산 서구	15	1	2	2	3	0	23
경남 합천군	3	1	4	0	11	0	19
경북 안동시	7	6	7	0	6	1	27
경북 영덕군	19	1	9	0	7	1	37
경북 영주시	11	3	8	6	7	1	36
강원 철원군	10	4	3	0	2	0	19
전북 김제시	18	8	8	3	5	1	43
전남 구례군	9	9	4	0	5	1	28
전남 곡성군	20	2	3	0	1	1	27
전남 함평군	6	1	6	0	8	1	22
경북 청도군	9	2	4	2	6	1	24
경북 의성군	6	2	4	1	4	1	18
경남 밀양시	29	5	12	1	15	1	63
부산 동구	5	3	3	0	1	0	12
충남 보령시	7	4	4	3	4	1	23
합 계	441	144	252	74	183	26	1,1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참여 업체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보조가 없어 업체 측에서 할인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만한 매력적인 혜택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의 한계는 지역 관광업계의 소극적인 참여와 관광주민증 이용 실적 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5년부터 '혜택업체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30여 개 지자체 70여 개 업체에 약 6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체 1,120개 사용처 대비 수혜 업체의 비율은 약 7.2%에 불과하며, 업체당 단순 환산 시 75만원에 그치는 예산 규모이다. 이는 실질적인 비용 보전은 물론, 신규 업체의 유입이나 사용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⁴⁾

4) 문체부는 2026년의 경우 혜택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업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집행내역]

○ 포상금 지급기준
- (상반기) 추정혜택제공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업체에게 100만원(정액) 지급
- (하반기) 추정혜택제공금액*이 50만원, 100만원 이상인 업체에게 50만원, 100만원(정액) 지급
* 추정혜택제공금액 = 이용건수(시스템 추출) × 할인추정단가
○ 집행내역
- 상반기: 30개 업체* × 100만원 = 3,000만원
- 하반기: 17개 업체 × 50만원 = 850만원 23개 업체 × 100만원 = 2,3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업체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개)

지자체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숙박	기타	합계
강원 평창군	-	5	2	-	-	-	7
충북 옥천군	-	2	-	-	-	-	2
인천 강화군	-	-	-	-	-	-	-
강원 정선군	1	2	3	-	-	-	6
충북 단양군	-	3	8	-	-	-	11
충남 태안군	-	5	-	-	-	-	5
전북 고창군	-	-	-	-	-	-	-
전남 신안군	-	-	1	-	-	-	1
부산 영도구	-	-	1	-	-	-	1
경남 거창군	1	-	-	-	-	-	1
경남 고령군	-	-	-	-	-	-	-
경기 연천군	1	-	-	-	-	-	1
충북 제천시	1	-	6	-	-	-	7
전북 남원시	2	-	-	-	1	-	3
경남 하동군	-	-	2	-	-	-	2
경기 가평군	-	-	4	-	-	-	4
강원 삼척시	-	1	-	-	-	-	1
강원 양양군	-	-	1	-	1	-	2
강원 영월군	-	1	-	-	-	-	1
강원 태백시	-	-	-	-	-	-	-
강원 홍천군	-	-	7	-	-	-	7
충북 괴산군	-	-	-	-	-	-	-
충북 영동군	-	1	-	-	1	-	2
충남 예산군	-	1	1	-	-	-	2
전북 무주군	-	1	-	-	-	-	1

(단위: 개)

지자체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숙박	기타	합계
전북 임실군	-	-	1	-	-	-	1
전남 영광군	-	-	-	-	-	-	-
전남 장흥군	-	-	-	-	-	-	-
전남 해남군	-	-	2	-	-	-	2
부산 서구	-	-	-	-	-	-	-
경남 합천군	1	-	-	-	-	-	1
경북 안동시	-	-	-	-	-	-	-
경북 영덕군	-	-	1	-	-	-	1
경북 영주시	1	1	-	-	1	-	3
강원 철원군	-	-	-	-	-	-	-
전북 김제시	-	-	-	-	-	-	-
전남 구례군	-	-	-	-	-	-	-
전남 곡성군	-	-	-	-	-	-	-
전남 함평군	-	-	-	-	-	-	-
경북 청도군	-	-	-	-	-	-	-
경북 의성군	-	-	-	1	-	-	1
경남 밀양시	-	1	-	-	-	-	1
부산 동구	3	-	1	-	-	-	4
충남 보령시	-	-	-	-	-	-	-
합 계	11	24	41	1	4	0	81

주: 1. 혜택 분류 기준 업체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혜택업체에 대한 현금성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 참여 지자체가 2022년 2개에서 2025년 44개로 급증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의 할인 부담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를 야기하여 무한정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혜택업체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관광주민증 사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단기적 미봉책에서 벗어나, 업체들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채널을 활용한 참여 업체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인근 관광명소 및 타 관광 상품과의 패키지 연계, 그리고 관광주민증 이용자의 소비 패턴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 정보 제공 등 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자생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을 참여 업체들의 할인에만 의존하기보다 ‘돈 주고도 못 사는 특별한 경험’을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정지역의 숨겨진 명소를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만 개방하거나 지역축제시 주민전용 라운지 및 우선 입장권을 제공하는 등 “더 싼 가격”이 아니라 “더 특별한 대우”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어 별도 홈페이지⁵⁾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잦다는 의견도 있어,⁶⁾ 이에 대한 개선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⁷⁾

종합하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양적 발급 성과 대비 실제 이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관광 유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 완화 유인 등을 통해 지역 내 혜택 제공 참여 업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 부족 및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의 발급 및 본인 인증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편하게 개편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구석구석’ 웹(<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이나 앱에서 한국관광공사 투어원패스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

6) KBS뉴스, (2025. 10. 23.) “100명 중 고작 1명”...디지털 관광주민증 ‘외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9392&ref=A>)

7)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T-map과 기업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국민은행과 정부24 앱으로 서비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 현황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¹⁾은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26억 2,400만원 중 720억원을 집행하고 6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2,624	-	-	72,624	72,000	-	624	72,700	72,70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2,074	-	-	72,074	71,450	-	624	72,150	72,150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지원)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체육센터의 유형에 따라 지자체에 일정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2025년 계획액에는 생활밀착형 26개소,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30개소, 시니어친화형 29개소, 유아친화형 12개소 등 총 97개소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액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0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연례적 실적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에도 실적행이 저조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적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사업의 최근 4년간 실적행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계획된 예산액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실적행률은 38.2%에 불과하며 매년 당해연도 교부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25년에는 계획액의 99.1%에 해당하는 7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 교부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1,806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당해연도 실적행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내역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C/B)
	당초	수정 (A)								
2022	202,568	202,568	202,368	202,368	406,484	608,852	223,380	375,359	10,113	36.7
2023	165,473	165,473	160,083	160,083	375,359	535,442	221,420	304,552	9,470	41.4
2024	84,787	84,787	78,700	78,700	304,552	383,252	150,832	221,743	10,676	39.4
2025	72,074	72,074	71,450	71,450	221,744	293,194	102,768	180,676	9,750	3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2025년 지자체별 실적행률을 살펴보면, 실적행률이 70%를 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당초	수정								
서울특별시	2,000	2,000	2,000	2,000	14,818	16,818	2,960	12,385	1,472	17.6
부산광역시	1,900	1,900	1,900	1,900	7,486	9,386	2,653	6,732	-	28.3
대구광역시	1,500	1,500	1,500	1,500	1,928	3,428	2,001	1,427	-	58.4
인천광역시	1,600	1,600	1,600	1,600	4,142	5,742	3,644	2,097	-	63.5
광주광역시	1,000	1,000	1,000	1,000	2,245	3,245	1,243	2,000	2	38.3
대전광역시	600	600	600	600	3,200	3,800	1,242	2,558	-	32.7
울산광역시	2,500	2,500	2,500	2,500	5,551	8,051	1,981	5,497	573	24.6
세종특별자치시	200	200	200	200	-	200	82	118	-	41.0
경기도	10,000	10,000	10,000	10,000	76,127	86,127	35,565	49,617	945	41.3
강원특별자치도	5,600	5,600	5,600	5,600	9,714	15,314	2,197	9,230	3,887	14.3
충청북도	5,600	5,600	5,600	5,600	10,972	16,572	11,017	5,547	8	66.5
충청남도	9,700	9,700	9,700	9,700	34,797	44,497	7,855	34,050	2,591	17.7
전북특별자치도	6,400	6,400	6,400	6,400	12,347	18,747	5,465	13,282	-	29.2
전라남도	6,000	6,000	6,000	6,000	12,370	18,370	10,081	8,218	71	54.9
경상북도	7,500	7,500	7,500	7,500	9,575	17,075	6,978	10,097	-	40.9
경상남도	5,750	5,750	5,750	5,750	15,218	20,968	6,677	14,291	-	31.8
제주특별자치도	3,600	3,600	3,600	3,600	1,256	4,856	1,127	3,529	200	23.2
합 계	71,450	71,450	71,450	71,450	221,746	293,196	102,768	180,675	9,749	3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센터별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센터가 절반이 넘는 27개이고,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도 17개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2)

2) 2025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한 센터별 실집행내역의 경우, 122개소의 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센터가 83개,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가 31개이며, 전체 실집행률은 33.3%로, 계속사업 또한 실집행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2025년 신규 사업 시행한 센터별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생활 밀착 형 (생활 권형) (10 개소)	부산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	198	-	1.1
	인천	연수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1,400	1,400	-	-	100.0
	울산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경기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25~'28)	200	-	200	-	0.0
	경기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25~'28)	200	200	-	-	100.0
	충남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전북	월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19	180	-	9.7
	경북	경북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경북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3	196	-	1.8
	경북	경산시 학교복합시설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00	-	-	100.0
생활 밀착 형 (장애 인형) (3 개소)	경기	화성 동부 반다비 체육센터('25~'28)	200	-	200	-	0.0
	충북	보은 반다비 체육센터('25~'28)	200	-	200	-	0.0
	경북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25~'28)	200	-	200	-	0.0
시니 어친 화형 (19 개소)	서울	진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25~'28)	200	-	200	-	0.0
	부산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파크 조성('25~'28)	200	-	200	-	0.0
	인천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	197	-	1.2
	세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82	118	-	40.9
	경기	전곡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	200	-	0.0
	경기	어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14	186	-	7.0
	충북	영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10	190	-	5.0
	충북	청원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충북	제천시 고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130	70	-	65.2
	충북	괴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	200	-	0.0
	충북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1,500	824	676	-	54.9
	충남	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25~'28)	200	-	200	-	0.0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	지역	센터명(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충남	근흥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충남	청양군 남양면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2	178	-	11.0
	전북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150	50	-	75.1
	전북	임실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 건립('25~'28)	200	-	200	-	0.0
	전남	무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132	68	-	65.9
	경북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108	92	-	53.8
	경남	거창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역활력타운 선정)('25~'28)	200	200	-	-	100.0
유아 친화 형 (8 개소)	충남	송산 국민체육센터(문화스포츠클럽) 건립사업('25~'28)	200	200	-	-	100.0
	전북	창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20	180	-	10.1
	전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0	180	-	10.1
	전남	영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	200	-	0.0
	경북	울빛유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25~'28)	200	200	-	-	100.0
	경북	울릉 저동국민체육센터(다행복지) 건립('25~'28)	200	-	200	-	0.0
	경북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역활력타운 선정)('25~'28)	200	200	-	-	100.0
	경남	김해 모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5~'28)	200	107	93	-	53.7
합계			10,500	4,245	6,252	0	4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부지 확보 협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설계 공모,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건축기획용역 진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때문이다. 문체부는 공모 사업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사업기간 준수여부 등)를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3)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7조4)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년 이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실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대규모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¹⁾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시설설치,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571억 8,000만원 중 1,068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503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63,730	-	-	163,730	112,330		51,400	248,057	248,057
스포츠산업 융자	157,180	-	-	157,180	106,807	-	50,373	241,647	241,647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25년 불용액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체육 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 등 국내 스포츠 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공자금 융자계정 금리(2026년 1/4분기 기준 2.96%,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0의 내역사업

지원 분야는 시설 설치, 개보수 및 설비 확충을 중심으로 하며, 업체당 신청 한도는 10억 원에서 최대 85억 원, 용자 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년에서 10년이다. 상환은 분기별 원금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용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체육시설, 체육용구,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지원대상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지원방식	용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용자분야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기성고)
용자금리	공공자금 용자계정 금리(분기별 변동) *26. 1/4분기 2.96%
용자기간	5~10년(거치기간 포함)
신청한도액	10~85억원
상환방식	분기별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 처리
사업시행방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계획 수립</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계획 공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신청, 접수</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심의회 개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대상통보 (공단→은행→사업자)</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신청 (사업자→은행)</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용자시행 (은행→사업자)</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13개 협약은행(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은행 취급수수료 1%)</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2,415억 700만원의 사업비 계획안이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사업 연기·포기 증가, 은행 중소기업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843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다.

[2025년도 스포츠산업 용자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내역]

당초 계획안	계획 변경안
○ 기타 민간용자금(450-04) : 241,507백만원 - 신청건수 415.7건 × 건당 581백만원* *’21~’23년 기성고 용자 건당 평균 금액	○ 기타 민간용자금(450-04) : 157,180백만원 - 신청건수 250.7건 × 건당 627백만원* *’21~’24년 기성고 용자 건당 평균 금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계획현액 전액을 집행하여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계획현액 1,578억 8,000만원 중 1,123억 5,1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1.2%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을 대폭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계획현액 1,571억 8,000만원 대비 실제 집행액은 1,068억 7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68.0%까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2024년 455억 2,900만원, 2025년 503억 7,300만원의 용자 예산을 적기에 대출하지 못하는 등 최근 2년간 발생한 불용액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5회계연도 스포츠산업 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2	184,000	228,900	228,900	228,900	-	-	100.0
2023	76,100	76,100	76,100	76,100	-	-	100.0
2024	157,880	157,880	157,880	112,351	-	45,529	71.2
2025	241,507	157,180	157,180	106,807	-	50,373	6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대내외 금융 여건 악화와 스포츠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용자 수요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에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 및 제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시기 특수를 누

렸던 골프 산업 등이 하강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전반적인 용자 수요가 둔화되어 집행률이 71.2%로 하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2025년에는 전체 매출의 97.5%를 내수에 의존하는 스포츠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 연기 및 대출 포기가 증가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68.0%까지 하락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경제 지표와 금융 시장의 규제 강화 기조는 계획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변수라는 점에서, 계획액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확했다고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타 용자 사업 집행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외부 경제 여건을 실적 부진의 핵심 사유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 기간 동안 자금 규모가 훨씬 큰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 사업은 2023년 99.2%, 2024년 99.3%에 이어 2025년에는 99.8%라는 집행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일한 내수 부진과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기조 속에서도 타 산업 분야는 실수요에 기반한 정교한 예산 편성으로 계획된 자금을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하였음을 방증한다. 유독 스포츠 산업 용자 사업만이 6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것은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4년간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2	649,000	549,000	549,000	493,108	3,108	52,784	89.8
2023	449,100	449,100	452,208	448,730	-	3,478	99.2
2024	541,733	541,733	541,733	538,086	-	3,647	99.3
2025	591,863	593,500	593,500	592,352	-	1,148	9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더욱이, 이처럼 최근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계획액은 2,416억 4,700만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되었다. 용자 수요 둔화 및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 등 집행 부진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약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대규모

계획액의 증액은 내년도에도 심각한 집행률 부진과 대규모 불용 사태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액 규모의 양적 확대에 앞서, 실수요와 시장 상황을 엄밀히 반영한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와 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조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한 대출 의향 조사를 넘어, 실제 용자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효 수요의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세 스포츠 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심사 강화로 인해 용자 수요가 차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스포츠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집행 가능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용자 예산의 상당액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대규모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

I 결산 개요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54억 5,100만원이며, 684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0.9%인 485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197억 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9,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54,534	54,534	67,626	47,725	19,708	194	7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7	917	790	790	0	0	100.0
합계	55,451	55,451	68,417	48,515	19,708	194	70.9

자료: 국가유산청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06억 3,900만원이며, 이 중 97.3%인 1조 2,358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57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9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1,214,364	1,241,031	1,206,352	15,775	18,904	9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608	29,608	29,529	0	79	99.7
합계	1,243,972	1,270,639	1,235,881	15,775	18,983	97.3

자료: 국가유산청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689억 6,900만원이며, 1,941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2%인 1,926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8,3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가유산보호기금	168,969	168,969	168,969	194,105	192,622	1,483	0	99.2

자료: 국가유산청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1,690억 1,800만원이며, 이 중 114.0%인 1,92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4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가유산보호기금	168,969	168,969	169,018	192,622 ¹⁾	0	1,484	114.0

주: 1) 여유자금 규모 증가로 인해 지출액이 계획현액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유산청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1억 6,100만원(6.3%)이 감소한 62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49억 8,000만원(7.4%)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50,068	55,451	48,515	△6,936	△1,553
기금	17,068	10,866	13,641	2,775	△3,427
합계	67,136	66,317	62,156	△4,161	△4,980

자료: 국가유산청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7억 2,700만원(0.8%)이 감소한 1조 3,78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38억 5,500만원(2.5%)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1,187,158	1,245,172	1,235,881	△9,291	48,723
기금	157,482	144,050	142,614	△1,436	△14,868
합계	1,344,640	1,389,222	1,378,495	△10,727	33,855

자료: 국가유산청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유산청 자산은 1조 1,888억 7,100만원, 부채는 956억 6,6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932억 5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612억 6,900만원, 유·무형자산 1조 972억 4,400만원, 기타자산 303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286억 2,000만원(2.5%) 증가하였다. 이는 여유자금운용 규모의 증가 등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9,239백만원 증가, 충주시와의 토지교환 및 흥유릉 토지 매입 등으로 2,737백만원 증가, 수도권문화유산 연구센터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으로 35,457백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933억 6,200만원, 충당부채 1,300만원, 기타부채 22억9,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5억 1,300만원(0.5%)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금 상환으로 122백만원 감소, 예수금 187백만원 증가, 선수수익 532백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188,871	1,160,251	28,620	2.5
Ⅰ. 금융자산	61,269	51,858	9,411	18.1
Ⅱ. 유·무형자산	1,097,244	1,083,245	13,999	1.3
Ⅲ. 기타자산	30,358	25,148	5,210	20.7
부 채	95,666	95,153	513	0.5
Ⅰ. 차입부채	93,362	93,394	△32	0.0
Ⅱ. 총당부채	13	-	13	-
Ⅲ. 기타부채	2,291	1,759	532	30.2
순 자 산	1,093,205	1,065,098	28,107	2.6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1,294억 6,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2,398억 2,900만원, 관리운영비 1,489억 4,100만원, 비배분비용 25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53억 6,300만원, 비배분수익 971억 9,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393억 2,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88억 2,200만원 감소한 1조 2,687억 9,600만원이며, 이는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기타 국가운영비용 등 프로그램 총원가가 343억 5,700만원 감소하고, 유산자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종류 변경 등으로 인한 잡이익 등 비배분수익이 498억 6,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프로그램(6,496억 4,800만원)이며, 다음으로 유산정책 프로그램(2,745억 5,000만원), 궁능원관리 프로그램(1,141억 1,400만원), 교육연구전시 프로그램(871억 3,800만원), 무형유산 프로그램(521억 5,400만원), 문화자원개발 프로그램(288억 7,100만원), 자연유산 프로그램(111억 8,100만원), 문화재보호 프로그램(△31억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60억 8,100만원과 경비 628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9억 6,000만원과 이자비용 16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14,467	1,246,530	△32,063	△2.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39,829	1,274,186	△34,357	△2.7
나. 프로그램 수익	25,363	27,657	△2,294	△8.3
II. 관리운영비	148,941	114,228	34,713	30.4
III. 비배분비용	2,578	4,184	△1,606	△38.4
IV. 비배분수익	97,190	47,324	49,866	105.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268,796	1,317,618	△48,822	△3.7
VI. 비교환수익 등	139,328	148,665	△9,337	△6.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29,468	1,168,953	△39,485	△3.4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650억 9,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932억 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81억 700만원(2.6%) 증가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기말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전년대비 394억 8,500만원 감소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년대비 800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유형자산재평가 이익 감소로 조정항목이 전년대비 16억 1,100만원 감소하였지만,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조 2,635억 9,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054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065,098	994,791	70,307	7.1
II. 재정운영결과	1,129,468	1,168,953	△39,485	△3.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63,155	1,243,230	△80,075	△6.4
IV. 조정항목	-5,580	-3,969	△1,611	△40.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93,205	1,065,098	28,10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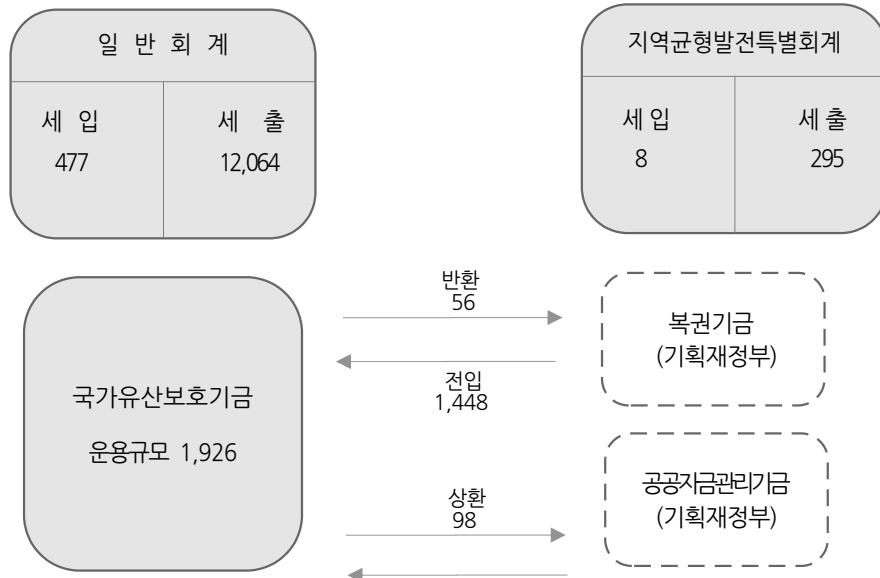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보호기금이 복권기금으로부터 1,448억원을 전입 받고 56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2억원을 예수하였고 원리금 98억원을 상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예수
82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유산정책대변 사업**, ②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 등이 있다.

국가유산정책대변 사업은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관리 사업의 영상 송출 관련 지자체 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2억원이 감액(25억원→23억원)되었고,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5천만원이 감액(163억 4천만원 →162억 9천만원)되었다.¹⁾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국가유산청은 ① 국민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인 **국가유산 미래가치 확대**, ③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한 국격 강화**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수중유산 보존처리 사업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일반용역비(210-14)로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 중 4건의 용역은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용역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였으므로, 향후 일반연구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예산 지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한 보조금 교부와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지연, 대체부지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편성 첫 해부터 사업 지연이 지속되어 2025년에도 편성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수중유산 보존처리 사업: 용도에 맞는 일반용역비 집행 필요

가. 현황

수중유산 보존처리 사업¹⁾은 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유물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수중유산발굴및보존처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현액 17억 7,800만원 중 17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수중유산 보존처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중유산발굴 및 보존처리	11,682	1,734	△30	13,386	13,140	-	246	16,021	16,021
수중유산 보존처리	1,783	-	△5	1,778	1,701	-	77	1,494	1,494

주: 1)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나. 분석의견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동 내역사업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 중 4건의 용역은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용역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였으므로, 향후 일반연구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예산 지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531-302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에서 총 7건의 용역 계약을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였다.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 금액	계약 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해양 출수 도자기의 제작특성 및 상관성 분석	22	2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5.3.~ '25.10.	수의
해양출수 고선박의 미생물 군집 및 열화상태 분석 용역	20.8	20.8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5.3.~ '25.11.	"
해양 출수 닻들의 정밀 상태조사 및 재질특성 분석을 통한 산지 해석 연구 용역(3차)	22	22	주식회사 더솔루션문화유산	'25.4.~ '25.10.	"
수중유산 보존연구시설 영상 및 음성 설비 설치	21.2	21.2	디유씨앤아이티(유)	'25.5.~ '25.7.	"
해남 송호리선 산소동위원소 연대 분석 연구용역	8.8	8.8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5.6.~ '25.12.	"
2025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환경 관리	8.2	8.2	한국종합방재(주)	'25.7.~ '25.11.	"
해남 송호리선 과학적분석 보고서 발간	7.7	7.7	미래디자인	'25.8.~ '25.9.	"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일반용역비로 연구용역을 집행한 ①'해양 출수 도자기의 제작특성 및 상관성 분석' 용역 보고서를 보면, 동 과업은 해남 및 군산 해역 등에서 수습된 100점의 도편을 대상으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활용한 단면

미세조직 관찰, X선 회절 분석(XRD)을 통한 결정구조 분석, 미량원소 함량 분석 등 고도의 보존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연구기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 대행이 아니라, 출수 유물의 원료 특성 및 제작 환경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적인 학술 지식과 장비를 동원하여 기초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지식기반의 학술 및 기술 조사·연구'에 해당한다.

또한 ② '해양출수 고선박의 미생물 균집 및 열화상태 분석 용역' 보고서는, 송호리 1호선 및 마도 4호선 목부재의 열화 깊이 진단을 위해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FT-IR),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한 세포벽 미세구조 관찰, 유전자 앰플리콘 시퀀싱(16S rRNA 및 ITS)을 통한 세균 및 진균 균집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역시 단순 실무 위탁이 아니라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처리 방안 설계를 위한 기초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의 임상·기술적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선박의 미생물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고도의 학술적 연구 활동으로 판단된다.

또한 ③ '해양 출수 닻돌의 정밀 상태조사 및 재질특성 분석을 통한 산지 해석 연구 용역(3차)' 보고서 역시, 진도 및 군산 등 해역에서 출수된 총 84점의 닻돌을 대상으로 훼손지도 작성, 초음파 분석, 표면 경도 분석, 적외선 열화상 분석 등 고도의 전문적인 과학 진단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이나 일상적인 실무 대행이 아니라, 유물의 물리적·화학적 보존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향후 보존 관리 및 학술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원천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지식기반의 학술·기술 조사 용역이다.

마지막으로, ④ '해남 송호리선 산소동위원소 연대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또한 송호리선 목부재의 정확한 제작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 나이트 연료폭 측정, α -셀룰로오스 추출, 동위원소질량분석기(IRMS)를 이용한 산소동위원소비 측정 등 고도의 정밀 과학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고선박의 절대연대를 파악하고 산소동위원소 연료연대기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분석 장비와 고도의 학술적 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기관의 단순 행정 지원이나 일상적인 실무 대행이 아니라, 향후 고목재 문화유산의 제작 시기 규명에 핵심 기준 자료로 활용될 과학적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지식기반의 학술 조사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네 건의 용역 모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의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그 중에서도 '과

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인 기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연구용역보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출수 도자기의 제작특성 및 상관성 분석 연구 DB구축 (3차)</p> <p style="text-align: center;">- 최종보고서 -</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0.</p> <p style="text-align: center;">   문화유산과학분석연구소 <small>SCIENTIFIC ANALYSIS LABORATORY OF CULTURAL HERITAGE</small> </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출수 고선박의 미생물 군집 및 열화 상태 분석</p> <p style="text-align: center;">완 료 보 고 서</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1.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대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 출수 닻들의 정밀 상태조사 및 재질특성 분석을 통한 산지해석 연구용역(3차) 결과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 최종보고서 -</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0. 31.</p> <p style="text-align: center;">주식회사 미술무선문화유산</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매남 송호리선 산소동위원소 연대분석 연구용역</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12.</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나 이 테 연 구 센 터</p>

자료: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지식기반의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수증발굴 고선박 보존처리 연구, 그 중에서도 수

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조사연구를 일반연구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 일반용역비(210-14) 예산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210-14) : 156,000천원

가. 수중발굴 고선박 보존처리 연구(100,000천원)

· 전시실 및 수장고 유해생물 관리 : 1식×50,000천원=50,000천원

· **수중발굴 유물 과학적 조사연구** : 1식×50,000천원=50,000천원

나.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국내외 교류(56,000천원)

·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등 : 1식×56,000천원=56,000천원

자료: 국가유산청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일반용역비(210-14)는 행사 운영, 단순 보고서 발간 및 영상자료 제작 등 기관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실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물의 재질 분석, 미생물 열화 진단, 산소동위원소 연대 측정 등 고도의 보존과학적 전문성과 정밀 장비가 요구되는 '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조사연구' 과업을 단순 업무 대행 경비인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예산 비목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향후 수중유산 보존처리와 관련된 지식기반의 과학적·학술적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일반연구비(260-01)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향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¹⁾은 국가유산 거주민에 대한 이주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존을 위해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적관리	3,417	-	△27	3,390	3,347	-	43	8,195	8,195
국가유산 경관개선	2,000	-	-	2,000	2,000	-	-	6,950	6,950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나. 분석의견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한 보조금 교부와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십 년간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역 주민 생활기반 낙후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유산 경관 가치의 훼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국가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231-301의 내역사업

지원대상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및 국가유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36개소²⁾로, 골목·담장·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 유산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개소당 50억원을 지자체 자본보조(보조율 50%)로 지원한다.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가유산 지정구역 및 국가유산으로 둘러싸인 마을(36개소*)
 - * ('26년 1월 현재) 태안 안흥진성, 나주 읍성 등 36개소, 추후 신규 사적 지정에 따라 추가 가능
 - (사업기간) 2024년~2039년(개소별 사업기간 3년 / 2년마다 5개소씩 신규 착수)
 - (총사업비) 50억원(개소당 / 국비 50%)
 - (추진방식 / 시행주체)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생활기반 정비<골목·담장·간판, 전선 지중화 등>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확충(탐방로, 녹지, 쉼터, 야간조명 등) 등 유산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
- 추진경과 및 계획
 - ('24.5월) '24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 태안 안흥진성, 나주읍성, 남원읍성, 완도 청해진, 예천 회룡포 마을 등 5개소
 - ('24~'27년) 1차 경관개선사업 시행(5개소), 잔여사업 신규선정('26년)

자료: 국가유산청

2) 사업대상: 사적·명승·천연기념물(면단위 국가유산) 1,166건('26.1월 현재) 중 36개소(3%)

구분		유형	국가유산명
면단위 국가유산(36)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마을이 있는 경우(21)	사적(13)	서울 한양도성, 서울 풍납동 토성,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포항 장기읍성,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예안리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가야리 유적, 청주 상당산성, 신봉동고분군, 논산 노강서원, 순천 낙안읍성, 완도 청해진 유적
		명승(6)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울주 반구천 일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담양 명옥헌 원림, 담양 소쇄원,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천연기념물(2)	담양 관방제림, 홍도 천연보호구역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는 경우(15)	사적(12)	사천 녹도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남한산성, 수원화성, 금정산성, 홍성 홍주읍성, 보령 충청수영성, 태안 안흥진성, 울주 언양읍성, 강화산성, 나주 나주읍성, 남원 남원읍성
		명승(2)	예천 회룡포,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천연기념물(1)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최근 2년간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첫 해 시행 당시 5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억 4,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9.0%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4,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2억 4,400만원에 불과하였다.

[최근 2년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			
2024	500	500	500	500	-	500	245	500	245	249	6	49.0
2025	2,000	2,000	2,000	2,000	249	2,249	1,244	2,000	1,021	979	26	55.3

자료: 국가유산청

구체적으로 1차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한 5개 지자체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천군이 실집행률 100.0%를 달성하고 완도군이 88.8%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태안군, 남원시, 나주시의 실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교부현액 2억 1,800만원 중 실집행액이 6,200만원에 불과하여 28.4%라는 가장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태안군(41.5%)과 남원시(70.7%) 역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태안군 7억 2,100만원, 나주시 1억 4,800만원, 남원시 7,800만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C/B)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태안군	1,234	1,234	1,234	1,234	-	1,234	513	1,234	513	721	-	41.5
남원시	176	176	176	176	100	276	195	176	98	78	3	70.7
나주시	210	210	210	210	8	218	62	210	62	148	8	28.4
완도군	380	380	380	380	41	421	374	380	348	32	15	88.8
예천군	-	-	-	-	100	100	100	-	-	-	-	100.0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사업 선정·선정 이후 사업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과업 수행 절대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에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공정 계획이 순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 집행여력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5년 예산액 20억원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한 결과,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이 발생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3)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의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속적 집행 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¹⁾은 고도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현액 11억 4,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도 보존 및 육성	25,108	-	±71	25,108	25,029	-	79	31,819	31,819
고도 탐방거점 조성	1,145	-	-	1,145	1,145	-	-	1,565	1,565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 예산에는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와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이 편성되었다.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사업기간 2023~2028년으로 총사업비 197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로 추진된다.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2024년에 시작하여 2029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85억원으로, 지자체 자본보조(보조율 70%)로 추진된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37-309의 내역사업(지역지원계정)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8년(6년)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77번지 일원(고도 지정지구)
- 총사업비 : 197억원(국비 138억, 지방비 59억)
- 사업내용 : 부지 5,226㎡, 건축연면적 약 2,053㎡(지상 1층, 한식목구조)
 - 세계유산 등 고도역사 통합정보관, 탐방객 편의시설, 교육체험관, 어린이역사도서관 등 조성
- 사업수행주체/방식 : 부여군/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
- 연도별 사업계획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27년	'28년
사업내용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발굴조사	발굴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모 및 설계, 건립공사	세계유산거점센터 건립 준공

자료: 국가유산청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9년(6년)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1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85억원(국비 199.5억, 지방비 85.5억)
- 사업내용 : 부지 8,453㎡, 건축 연면적 6,000㎡(지상 2층)
 - 세계유산 홍보관, 뮤지엄샵, 인포메이션 센터, 교육실(강당), 영상·디지털 체험관 등 조성
- 사업수행주체/방식 : 경주시/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
- 연도별 사업계획

연도	'24년	'25년	'26년	'27년~'28년	'29년
사업내용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립 공사	세계유산거점센터 건립 준공

자료: 국가유산청

나. 분석의견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지연, 대체부지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실적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집행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2024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도의 실적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지자체 교부현액 11억 9,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6,100만원에 그쳐 실적집행률이 13.5%로 급감하였다. 이는 당해 연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및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원활하게 실적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 최근 4년간 실적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2022	7,088	7,088	7,088	7,088	502	7,590	4,074	7,088	3,572	3,516	-	50.4
2023	3,227	3,227	3,227	3,227	3,516	6,743	4,119	3,227	2,349	2,624	-	72.8
2024	686	686	686	686	2,624	3,310	3,265	686	641	45	-	98.6
2025	1,145	1,145	1,145	1,145	45	1,190	161	1,145	161	984	-	13.5

자료: 국가유산청

지자체별로 2025년의 실적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부여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5억 6,300만원 중 1억 6,100만원만을 집행하여 28.6%의 저조한 실적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미집행 잔액 3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경주시는 당해 연도에 6억 2,7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집행액이 전무하여 실적집행률 0.0%를 기록하였으며, 교부액 전액을 그대로 이월하였다.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처			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C/B)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부여군	518	518	518	518	45	563	161	518	161	357	45	28.6
경주시	627	627	627	627	-	627	-	627	-	627	-	0.0

자료: 국가유산청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부여군은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와 발굴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보류(2회) 및 충남 공공건축심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2025년 예산 5억 1,800만원 중 1억 6,100만원만이 건축계획 용역으로 집행되고 3억 5,7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된 상황이며, 2026년 4월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이다.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당초 2025년까지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6년 5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에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러한 각종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건립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경과	지연 사유
기본계획 수립	'23. 5.~12.	'23. 5.~12.	
타당성 조사	'24. 12.	'24. 12.	
발굴조사	'24. 4.~'25. 12.	'24. 4.~25. 12.	
지방재정투자심사	'24. 7.~12.	'25. 1.~ 4.	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공공건축심의,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25. 7.~8.	'25. 7.~12.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보류(2회)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25. 7.~'25. 12.	'25. 7.~'26. 4.	충남 공공건축심의 지연
실시설계	'26. 5.~12.	'26. 5.~12.	-
국가유산 현상변경	'26. 5.~12.	'26. 5. 13.	-
착공	'27. 3.	-	-
준공	'28. 12.	-	-

자료: 국가유산청

다음으로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경우,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당초 사업부지인 인왕동 고분군의 시굴조사 결과 대형 목곽묘 및 적석목곽묘 등 중요 유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 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체 부지 안 검토 및 지역 전문가 자문, 대체 부지 물리탐사 등 사전 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면서 2025년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다.

이에 따라 25년 중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절차도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경과	지연 사유
기본계획	'24. 1. ~ 12.	'24. 1. ~ 12.	정상추진
토지보상	'25. 3. ~ 6.	당초 사업부지 토지보상('25.6.) ¹⁾	당초 부지의 중요유구 발굴로 인한 대체부지 선정 중으로 사업지연
시·발굴조사	'25. 6. ~ '26. 5.	당초 사업부지 시굴조사 실시('25.3.~5.) ²⁾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25. 8. ~ 12.	-	
실시설계	'26. 1. ~ 12.	-	
공사 입찰 및 착공	'27. 1. ~ 12.	-	-
준공	'28. 12.	-	-

주: 1) 2) 당초 사업부지 토지보상 및 시굴조사는 별도 사업비(신라왕경복원(대릉원 지구) 사업비)로 실시,
2025년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됨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들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일정
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체 부지 확
정, 설계 공모 및 후속 인허가 절차 등 직면한 현안들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예정된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¹⁾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의 관광 자원화 및 양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현액 4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¹⁾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4,500	-	-	4,500	4,500	-	-	3,000	3,000

주: 1)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은 통도사 부지 내 도서관, 전시실, 북카페 등 문화시설 2개동과 사찰 음식점, 카페, 불교용품점 등 편의시설 2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2~2027년 동안 총사업비 316억 30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로 추진된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37-307(지역지원계정)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사업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통도사)					
사업 규모	- 문화시설: 2개동/지상2층/건축면적 2,795㎡/도서관, 전시실, 북카페 등 - 편의시설: 2개동/지상2층/건축면적 893㎡/사찰음식점, 카페, 불교용품점 등					
사업시행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경상남도(양산시), (참여기관) 양산 통도사					
재원 조달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토지매입, 10억원) 별도					
사업 기간	2022~2027년(6년)					
총사업비	316.03억원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여부: 대상(O)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190	-	-	9,000	21,413	31,603	

자료: 국가유산청

나. 분석의견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편성 첫 해부터 사업 지연이 지속되어 2025년에도 편성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23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건립 위치 및 내부 평면 조정 등이 발생하며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었다. 또한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조정 시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1차례 연장(2024년→2026년)되었다.

이후에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2026년 3월에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완료되었다. 즉, 문화유산 심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속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실제 공사 착공 일정이 2026년 4월로 순연되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예산 국회 증액 제기 및 반영('21. 12.)
 - * 설계비 12억 반영(국비 6억, 지방비 6억)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총사업비 관리대상 등록(기재부, '22. 2.)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안) 마련(양산시, '23. 2.~12.)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3. 8. ~ 12.)
 - * 총 3회 심의(위원회 1회, 소위원회 2회), 건립위치, 외부공간, 내부평면 등 조정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총사업비 협의조정(기재부, '23. 12.)
 - * 절대공기 부족 및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요 등의 사유로 기간연장(2024년→2026년)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실시설계(양산시, '24. 1. ~ '24.12.)
- 설계적정성 검토(기본, 중간, 실시설계) 완료(조달청, '24. 7. ~ '25.10.)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기획예산처, '26. 3.)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공사 및 완공('26. 4. ~ '27. 12.)

자료: 국가유산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일정 상으로는 2022년 1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월 공사 입찰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와 10~11월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거치며 기본설계 착수가 우선 지연되었다. 이후 관람객 압력 완화 조치라는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2023. 7.) 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2023. 8.~12.)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기본설계는 2023년 12월에야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실시설계 역시 순차적으로 밀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 지연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이 당초 대비 2차례 연장되었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도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2024. 7.~2025. 10.) 및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협의조정(2025. 11.~2026. 3.)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실제 공사는 2026년 5월에야 착공되었다. 결과적으로 준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이 지연된 2027년 12월이 될 전망이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당초 계획일정 및 실제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기본설계	2022. 1.~	2023. 2~12	아래 사유에 따른 기본설계 착수 및 추진 지연 (1)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22.6월) (2)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심의('22.10월~'22.11월) (3) 사업부지 변경(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관람객 압력 완화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 지연('23.7월) (4)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23.8월~'23.12월) ※ 총사업비 기간 1차 연장('23.12) : 총사업비 신규 등록 시 사업기간 오기제 사항 정정 - (당초) '20~'24년 → (변경) '22~'26년
실시설계	~ 2023. 12.	2024. 1.~12.	기본설계 지연에 따라 순차 지연 ※ 총사업비 기간 2차 연장('24.7) : 기본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시, 설계지연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2~'26년 → (변경) '22~'27년
공사 입찰 및 계약	2024. 1.	2026. 4.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 후속 이행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 (1)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4.7월~'25.10월) (2) 총사업비 협의조정(기획예산처, '25.11월~'26.3월) (3) '26.4.24. 착공
착공	2024. 1.	2026. 5.	
준공	2025. 12.	2027.12. (예정)	

자료: 국가유산청

이로 인하여,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6억원은 당해 연도에 전혀 집행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신규 본예산 편성 없이 이월된 설계비만이 집행되었다. 또한, 2025년에도 앞서 살펴본 공사 발주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에 편성된 공사비 45억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최근 4년간 실적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2022	600	600	600	600	-	600	-	600	-	0.0
2023	-	-	-	-	600	600	417	183	-	69.5
2024	-	-	-	-	183	183	178	-	5	97.3
2025	4,500	4,500	4,500	4,500	-	4,500	-	4,500	-	0.0

자료: 국가유산청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고, 전통산사 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양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공사 일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예산 미집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